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 환경노동위원회 】

2018. 8.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8. 8.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30.6조원, 총지출 406.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0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7년 추정 전망보다 각각 11.0조원, 10.4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무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 총 2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 재정건전성 등 14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일자리정책,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7건의 주요 재정 정책 사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집행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결산서를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효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 차 례

# CONTENTS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 I. 결산 개요 / 1

- 1. 현 황 ..... 1
-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9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1

#### II. 주요 현안 분석 / 13

- 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 13
- 2. 법정민간대행사업의 회계연도 준수 필요 ..... 24

#### III. 개별 사업 분석 / 27

- 1.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추경예산 실집행 저조 등 ..... 27
- 2.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인력양성 목표 재검토 등 ..... 32
- 3.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입주기업 확보 등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36
- 4.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40
- 5.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추진 시 관련부처 연계 필요 등 ..... 43
- 6. 자원관 입장료 산정기준 마련 등 ..... 49
- 7.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및 수익률 저조 ..... 54
- 8.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 58



# CONTENTS

9. 자원순환기반구축 사업의 목적 외 집행 부적절 .....	61
10. 환경감시대 운영 사업의 연례적인 국내여비 조정을 통한 국외여비 집행 .....	63
11.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R&D)의 사업 지연 개선 필요 .....	66
12.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신규)의 최종 사업수행기관 실집행실적 저조 .....	68
13.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필요 .....	71
14.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추진실적 저조 등 .....	74
15.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사업지연 최소화 등 .....	78
16.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의 적극적인 경영개선 필요 .....	81
17. 국가항인 경인항 미활성화에 따른 경인아라뱃길 잔여투자비 1.5조원의 낮은 회수가능성 .....	86
18.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유지 필요 .....	94
19.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분양지연 등에 따른 친수사업권 1조원 회수가능성 재검토 필요 .....	101
20. (주)워터웨이플러스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한 직원 대상 국외연수휴직 급여 지급 규정 부적절 .....	108

## [고용노동부]

### I. 결산 개요 / 115

1. 현 황 .....	115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22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24



# CONTENTS

## II. 주요 현안 분석 / 125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모색 필요 등 ..... 125
  - 1-1. 장애인고용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126
  - 1-2.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의 고용유지율 제고 필요 ..... 129
2. 고용안정장려금 집행 실적 검토 등 ..... 132
  - 2-1. 고용안정장려금의 집행 실적 제고 필요 ..... 133
  - 2-2. 대체인력뱅크 실적 제고 필요 등 ..... 137
  - 2-3.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사업의 개선 검토 필요 ..... 141
3.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 사업 추진 분석 ..... 145
  - 3-1. 신규 정보화 사업의 집행 부진 ..... 146
  - 3-2. 정보화 사업을 통한 기관 홍보 사업 추진 부적절 ..... 150
  - 3-3. 지침을 위반한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의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 153

## III. 개별 사업 분석 / 156

1. 고용영향평가사업 위탁사업 관리 부적절 ..... 156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162
3.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단계 참여율 제고 필요 등 ..... 165
4.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성과 제고 필요 ..... 170
5. 직업·진로 정보 제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부처간 연계강화 필요 ..... 174
6. 신직업 발굴 및 확산지원 사업의 성과 미흡 ..... 177
7.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 효과 검토 필요 ..... 180
8. 권리구제지원팀 조정해결 실적 저조 ..... 183
9. 건설업 부문의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위탁사업 성과 강화 필요 ..... 186



# CONTENTS

10. 일자리위원회 예비비 집행 실적 저조 등 .....	190
11.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집행 실적 개선 필요 .....	197
12.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의 성과 개선 필요 .....	199
13.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등 .....	204
14.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수요예측 미흡 등 .....	208
1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등 .....	212
16. 새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연례적 불용 과다 및 신규 지원법인 확대 필요 ..	220
17.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업의 사전계획 수립 강화 필요 .....	227
18. 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사업의 연례적 불용 발생 개선 필요 ..	234
19. 사전계획 미흡으로 인한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의 불용 발생 ..	239
20.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창업점포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242
2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일부 재위탁으로 인한 사업비 예산 과다 발생 .....	246
22.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중 일반직업능력 강화 필요 .....	253
23. 일학습병행 운영·지원사업 중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수당 불용 발생 문제 개선 필요 .....	260
24. 건설근로자공제회 일반회계의 이익금을 활용하여 일용임사근로자 복지사업 확대 필요 ..	265
2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필요 .....	272
26.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회계 수익률 개선 노력 필요 .....	277



# CONTENTS

## [기상청]

### I. 결산 개요 / 283

- 1. 현 황 ..... 283
- 2. 20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287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288

### II. 개별 사업 분석 / 289

- 1.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 289
- 2.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사업의 연내 집행을 위한 노력 필요 ..... 294
- 3. 민간에 위탁한 교육사업에 기상청 직원의 강사 참여 최소화 필요 ..... 297
- 4.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지양 필요 ..... 300
- 5. 기상정책연구사업(R&D)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수행 필요 ..... 303
- 6. 조달발주를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의 외부용역 실시 과다 ..... 306
- 7. (재)APEC기후센터 국외출장 제도 개선 필요 ..... 310





환경부



## 1

## 현황

##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247억 1,200만원(7.0%)이 증가한 6조 4,691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429억 5,000만원(3.6%)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602,234	4,895,546	5,033,731	5,341,509	307,778	△260,725
기금	1,109,914	1,010,755	1,010,755	1,127,689	116,934	17,775
합계	6,712,148	5,906,301	6,044,486	6,469,198	424,712	△242,950

자료: 환경부

2017회계연도 환경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88억 2,700만원(0.3%)이 증가한 6조 8,51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918억 6,600만원(2.8%)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724,682	5,728,691	5,890,786	5,915,384	24,598	190,702
기금	935,022	941,957	941,957	936,186	△5,771	1,164
합계	6,659,704	6,670,648	6,832,743	6,851,570	18,827	191,866

자료: 환경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조 337억 3,100만원이며, 6조 2,882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4.9%인 5조 3,415억 900만원을 수납하고 9,038억 3,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29억 3,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25	255	225	367	250	117	0	68.1
환경개선특별회계	4,893,015	5,031,200	5,031,200	6,245,624	5,305,576	897,118	42,930	84.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500	500	500	4,569	117	4,452	0	2.6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806	1,806	1,806	26,124	24,030	2,094	0	92.0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11,591	11,536	55	0	99.5
합계	4,895,546	5,033,731	5,033,731	6,288,276	5,341,509	903,836	42,930	84.9

자료: 환경부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조 8,771억 8,700만원이며, 이 중 98.4%인 9조 7,161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1,157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453억 3,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229,171	3,367,356	3,367,356	3,367,356	0	0	100.0
환경개선특별회계	4,893,015	5,031,200	5,150,440	5,013,914	107,890	28,636	97.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050	108,050	108,050	108,050	0	0	100.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51,671	375,581	376,248	375,700	158	390	99.9
지역발전특별회계	810,040	810,040	875,093	851,097	7,692	16,304	97.3
합계	9,391,947	9,692,227	9,877,187	9,716,117	115,740	45,330	98.4

주: 일반회계는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

자료: 환경부

다.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조 107억 5,500만원이며, 1조 2,093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2%인 1조 1,276억 8,900만원을 수납하고 809억 9,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6억 9,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513,433	513,433	513,433	633,833	589,667	43,751	415	93.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2,129	242,129	242,129	274,812	256,804	17,885	123	93.4
금강수계관리기금	115,888	115,888	115,888	133,591	123,174	10,392	25	92.2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9,438	89,438	89,438	98,725	91,180	7,504	41	92.4
석면피해구제기금	49,867	49,867	49,867	68,423	66,864	1,464	95	97.7
합계	1,010,755	1,010,755	1,010,755	1,209,384	1,127,689	80,996	699	93.2

자료: 환경부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1조 240억 8,600만원이며, 이 중 110.1%인 1조 1,276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102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억 3,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환경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513,433	513,433	524,128	589,667	8,156	7,008	112.5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2,129	242,129	243,360	256,804	640	896	105.5
금강수계관리기금	115,888	115,888	116,928	123,174	773	522	105.3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9,438	89,438	89,803	91,180	539	381	101.5
석면피해구제기금	49,867	49,867	49,867	66,864	152	126	134.1
합계	1,010,755	1,010,755	1,024,086	1,127,689	10,260	8,933	110.1

자료: 환경부

##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환경부의 자산은 5조 6,086억 400만원, 부채는 1,287억 1,600만원으로 순자산은 5조 4,798억 8,8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1,872억 100만원(3.5%)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조 2,026억 2,400만원, 투자자산 6,856억 7,200만원, 일반유형자산 3조 6,967억 2,3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4대강 수계기금의 토지 매입,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으로 일반유형자산의 3,073억 7,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343억 7,800만원(21.1%) 감소한 것으로 유동부채 590억 3,200만원, 장기차입부채 634억 4,200만원, 장기충당부채 34억 5,3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7억 8,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상환 등으로 장기차입부채 350억원의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5,608,604	5,421,403	187,201	3.5
Ⅰ. 유동자산	1,202,624	1,360,311	△157,687	△11.6
Ⅱ. 투자자산	685,672	649,332	36,340	5.6
Ⅲ. 일반유형자산	3,696,723	3,389,349	307,374	9.1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14,667	16,545	△1,878	△11.4
Ⅵ. 기타비유동자산	8,918	5,866	3,052	52.0
부 채	128,716	163,094	△34,378	△21.1
Ⅰ. 유동부채	59,032	61,082	△2,050	△3.4
Ⅱ. 장기차입부채	63,442	98,442	△35,000	△35.6
Ⅲ. 장기충당부채	3,453	781	2,672	342.1
Ⅳ. 기타비유동부채	2,789	2,789	0	0.0
순 자 산	5,479,888	5,258,309	221,579	4.2
Ⅰ. 기본순자산	3,805,876	3,805,876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390,658	1,165,538	225,120	19.3
Ⅲ. 순자산 조정	283,354	286,895	△3,541	△1.2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조 2,876억 4,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6조 1,231억 4,500만원, 관리운영비 2,478억 5,100만원, 비배분비용 3,540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082억 4,800만원, 비배분수익 4,209억 4,600만원, 비교환수익 등 9,082억 4,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16억 200만원(1.3%) 감소한 6조 1,958억 8,300만원이며, 이는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의 감소와 비배분수익의 증가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프로그램(2조 6,261억 8,100만원)과 4대강 유역관리 프로그램(7,407억 4,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326억 1,000만원과 경비 1,152억 5,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569억 6,000만원, 평가손실 474억 3,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014,897	5,894,474	120,423	2.0
가. 프로그램 총원가	6,123,145	5,970,620	152,525	2.6
나. 프로그램 수익	108,248	76,146	32,102	42.2
II. 관리운영비	247,851	308,224	△60,373	△19.6
III. 비배분비용	354,081	408,570	△54,489	△13.3
IV. 비배분수익	420,946	333,783	87,163	26.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195,883	6,277,485	△81,602	△1.3
VI. 비교환수익 등	908,241	897,608	10,633	1.2
VII. 재정운영결과(V - VI)	5,287,642	5,379,877	△92,235	△1.7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5조 2,583억 1,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조 4,798억 8,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215억 7,900만원(4.2%)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922억 3,5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이 기초 대비 1,072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5조 5,127억 6,200만원으로 채원의 조달 10조 6,120억 6,100만원과 채원의 이전 5조 992억 9,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29억 1,3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4억 1,800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감 △2억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환경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5,258,310	5,162,248	96,062	1.9
II. 재정운영결과	5,287,642	5,379,877	△92,235	△1.7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512,762	5,405,489	107,273	2.0
IV. 조정항목	△3,541	70,450	△73,991	△105.0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5,479,889	5,258,310	221,579	4.2

자료: 환경부

####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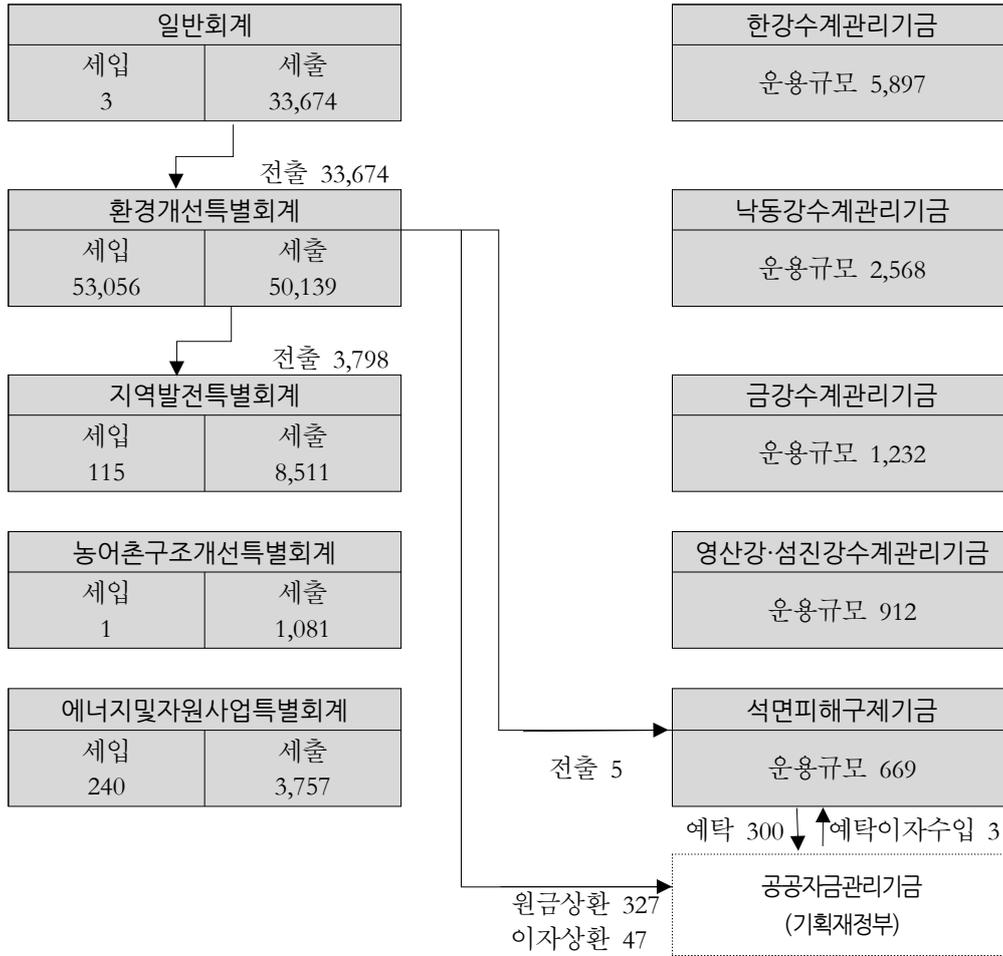
2017회계연도 환경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3조 3,674억원 전출되었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각각 3,798억원, 5억원이 전출되었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원금 327억원과 이자 47억원을 상환하였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석면피해구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을 예탁하였고, 예탁이자 수입으로 3억원을 받았다.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②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③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 등이 있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내역사업인 ‘물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 내용의 중복 및 집행부진으로 10억원이 감액(659억원 → 649억원)되었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보급실적 부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감안하여 79억원이 감액(265억원 → 186억원)되었다.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은 자체수입 과소 계상에 따라 5억원이 감액(946억원 → 941억원)되었다.<sup>1)</sup>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사업, ②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등이 있다.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은 흡입독성 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50억원이 증액(301억원 → 351억원)되었고,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은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DPF<sup>2)</sup>) 부착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46억원이 증액(1,183억원 → 1,225억원<sup>3)</sup>)되었다.<sup>4)</sup>

1)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1.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2)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3)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은 46억원이 증액되었고, 공해차량신고제 운영 예산이 4억원 감액되어 최종 예산은 42억원이 증액된 1,225억원이다.

4)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1.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사업,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동 사업들은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구매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체계를 정비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sup>5)</sup>.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 ②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81억원이 감액(446억원 → 365억원)되었고,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50억원 감액(2,932억원 → 2,882억원)되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은 ‘기존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및 집중측정소에 대하여 측정기 설치 높이 등 설치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측정소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sup>6)</sup>.

---

5)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7.

환경부는 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난제의 근본적 해결 착수**, ②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신산업 육성**, ③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확충**, ④ 환경관리 패러다임의 **과학화·선진화 촉진**, 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환경예산 내실화 도모**를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결과, 실집행률 저조, 재재이월 발생, 정산 지연 등 보조사업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환경부 소관 재정 규모의 60%이상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는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정민간대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1년을 초과하여 계약함에 따라 사업수행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한 이월금 발생과 정산 지연, 사업기간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사업성기금이지만 연간 순지출액(사업비+운영비)의 3배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여유자금이 과다한 측면이 있고, 2017년에는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0.77%로 목표수익률(1.9%)에 미달할 뿐 아니라 타 기금에 비해서도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일부 사업에서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발견되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에서 사업목적과 관련이 낮은 내용으로 연구용역비와 여비 등을 집행하였고,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에서는 기본경비 성격의 직원교육비(국외현장학습 교육비)를 집행하였으며, 환경감시대 운영 사업은 감시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를 연례적으로 선진국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었다.

## II

## 주요 현안 분석

### 1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 가. 현황

환경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18개 세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액 7조 3,356억원 중 61.4%에 해당하는 4조 5,026억원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다.

[환경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도 예산액	경상보조 (A)	자본보조 (B)	합계 (A+B)	비 고
환경개선특별회계	5,031,200	69,291	2,618,926	2,688,217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9개 세부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75,581	8,792	249,337	258,129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 프라 구축 등 4개 세부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810,040	1,826	781,063	782,889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등 16개 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08,050	0	108,050	108,050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등 2개 세부사업
한강 수계관리기금	513,433	245,787	95,471	341,258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16개 세부사업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42,129	117,334	73,351	190,685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
금강 수계관리기금	115,888	47,725	36,275	84,000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9개 세부사업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9,438	22,628	26,790	49,418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10개 세부사업
석면피해구제기금	49,867	0	0	0	0
합 계	7,335,626	513,383	3,989,263	4,502,646	118개 세부사업

주: 추경기준

자료: 환경부

김태은 예산분석관(tckim@assembly.go.kr, 788-4637)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환경부 소관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4조 5,767억원이며 이 중 99.7%인 4조 5,630억원이 집행되고 137억원이 불용되었다.

[환경부 회계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환경개선특별회계	2,556,038	2,688,217	0	6,794	2,695,011	2,692,413	0	2,59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50,219	258,129	0	0	258,129	258,079	0	50
지역발전특별회계	782,889	782,889	60,622	0	843,511	835,212	0	8,29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08,050	108,050	0	0	108,050	108,050	0	0
한강수계관리기금	341,258	341,258	0	3,738	344,996	342,909	0	2,08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0,685	190,685	0	189	190,874	190,418	0	456
금강수계관리기금	84,000	84,000	0	658	84,658	84,592	0	66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49,418	49,418	0	2,043	51,461	51,308	0	153
합 계	4,362,557	4,502,646	60,622	13,422	4,576,690	4,562,981	0	13,709

주 : 지역발전특별회계 전년도이월액은 세입부족에 따른 이월액임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결산 결과, 실집행률 저조, 재재이월 발생, 정산지연 등 보조사업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환경부 소관 재정규모의 60% 이상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는 소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부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의 99.7%인 4조 5,630억원을 자치단체로 교부하였으나 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71.9%로, 이월액이 1조 5,270억원 발생하였다.

2017회계연도 자치단체보조사업 교부액 4조 5,630억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조 9,935억원 중 4조 3,100억원이 집행되고 1조 5,270억원이 이월되는 등 실집행률이 71.9%이다.

[환경부 자치단체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4,562,981	1,430,510	5,993,491	4,310,037	1,527,017	156,437	71.9

자료: 환경부

118개 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실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이 34개 사업으로, 이 중 7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sup>1)</sup>

[자치단체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실집행률]

(단위: 개)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	실집행률					
	70%이상	50~70%미만	30~50%미만	10~30%미만	10%이하	기타 <sup>1)</sup>
118	83	22	5	6	1	1

주: 1) 부처 교부액이 0원인 사업

자료: 환경부

또한 자치단체에서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공사 등을 위탁할 경우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실집행실적이 100%로 나타나지만, 위탁기관의 실집행실적은 이보다 낮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위탁기관(최종 사업수행기관)의 집행실적이 낮을 경우 실집행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 환경부는 경기도 부천시에 2017년도 예산액 30억 7,1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경기도 부천시는 위탁기관에 30억 7,100만원을 모두 교부하여 실집행률 100%이나, 위탁기관의 실집행액은 10억 1,300만원으로 최종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률은 33.0%이다.

1) 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부처에서 미교부한 경우는 실집행률 70% 미만 사업 수에서 제외하였다.

[자치단체 집행률 100% 사업의 최종사업수행기관 실집행 실적(예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시군구	2017 예산(A)	환경부 집행액	자치단체 집행액(B)	위탁기관 집행액(C)	자치단체 실집행률 (B/A)	위탁기관 실집행률 (C/A)
하수관거정비	경기 부천시	3,071	3,071	3,071	1,013	100.0	33.0
하수관거정비	충남 금산군	1,683	1,683	1,683	554	100.0	32.9
하수관거정비	경북 울진군	3,445	3,445	3,445	878	100.0	25.5
도시침수대응	경북 봉화군	5,620	5,620	5,620	2,726	100.0	48.5
도시침수대응	강원 춘천시	7,009	7,009	7,009	3,764	100.0	53.7
도시침수대응	전북 부안군	2,869	2,869	2,869	1,856	100.0	64.7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충북 음성군	1,261	1,261	1,261	361	100.0	28.6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인천 강화군	2,548	2,548	2,548	790	100.0	31.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충북 옥천군	2,158	2,158	2,158	235	100.0	10.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경기 가평군	4,436	4,436	4,436	270	100.0	6.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경기 연천군	1,500	1,500	1,500	80	100.0	5.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경남 밀양시	2,000	2,000	2,000	434	100.0	21.7
노후상수도 정비	강원 홍천군	3,256	3,256	3,256	970	100.0	29.8
노후상수도 정비	경북 의성군	3,513	3,513	3,513	1,718	100.0	48.9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자치단체나 사업시행기관의 실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예산액을 교부함에 따라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다.2)

둘째, 「국가재정법」과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2회계연도를 초과한 이월(재재이월)을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부 소관 사업에서 보조사업자의 재재이월이 발생하였다.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월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이월이 가능하나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해서는 재이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자치단체로부터 공사를 위탁받는 사업수행기관 중 하나인 한국환경공단인 경우, 2017년 기준 관련 사업의 집행액이 7,065억원, 이월액이 3,135억원으로 매년 3천억원 가량의 이월액을 보유하고 있다.

재재이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지침으로 “국가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재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p.18)”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특별회계는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를 「국가재정법」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화된 조건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세출예산을 이월(재재이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회계 이월규정]

회계	법률 규정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정책기본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u>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u>

자료: 개별 법률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재이월, 재재이월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하수관로정비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서 25건의 재재이월이 발생하는 등 환경부 소관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일부 사업들은 재이월뿐 아니라 2015년 예산이 2017년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되는 재재이월이 이루어졌다.

[환경부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재재이월 사업 현황(예시)]

세부사업명	재재이월 사업 수(사업건별)	시군구명(사업)	재재이월액 (백만원)
하수관로정비	5개 사업	경남 창원시, 경기 남양주시 (화도 차집관로), 경기 남양주시(홍릉천), 경기 남양주시(용정천), 경기 여주시	4,287
도시침수대응	2개 사업	경기 안성시, 경기 안산시	2,531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개 사업	경남 거제시, 경기 안성시(미산1), 경기 안성시(평장), 경기 안성시(신가)	1,265
하수처리장확충	9개 사업	강원 강릉시, 강원 양구군(구암), 강원 양구군(송현2), 강원 양구군(죽곡), 경기 여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포천시, 경기 평택시(오성), 경기 평택시(통북 찌꺼기감량화)	21,323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개 사업	경기 오산시	1,166
비점오염저감사업	1개 사업	전북 전주시	68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 사업	논산 노성, 횡성 우천	887
생태하천복원사업	1개 사업	강원 인제군	219

주: 1. 사업 수는 공사현장별로 사업을 구분함. 즉, 동일 시군구라도 여러사업이 있을 수 있음.  
2. 생태하천복원사업만 지역발전특별회계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임  
자료: 환경부

다만, 사업완료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2조<sup>3)</sup>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고, 계속비는 사업 완료 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로 교부된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월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보조

3)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금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며, 예산의 이월은 예외조항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교부한 보조금의 과도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재재이월에 대해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sup>4)</sup>으로도 지적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조사업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환경부 소관 사업들 중 일부는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고, 소관부처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되고 보조사업이 종료된다.<sup>5)</sup>

2013년 이후 보조사업 중 2016년까지 종료사업을 대상으로 2017년말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조사한 결과, 9개 세부사업 중 38개 사업(시군구 기준)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7.12. p.1,303

(12) 보조금의 재재이월 개선 필요(시정요구유형 : 시정)

- 관련사업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1230-301), 비점오염저감 사업(1230-302), 공단폐수처리 시설 확충사업(1232-302)
- 지적 사항: 동 사업에서 2014년도 5개의 자치단체에 교부된 보조금 91억 3,200만원 중 17억 8,700만원이 2017년도로 재재이월됨
- 시정요구사항: 환경부는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부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2016년까지 종료사업 대상 정산지연 사업(예시)]

실국	세부사업명	미정산 사업(건별)
상하수도정책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4개 사업
	하수관거정비	11개 사업
	하수처리수재이용	1개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10개 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개 사업
물환경정책국	공단폐수처리시설	2개 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6개 사업
자원순환정책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개 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개 사업
합 계	9개 세부사업	38개 사업

자료: 환경부

또한 2014년 또는 2015년에 종료된 사업 중 2018년 6월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2015년 종료사업 중 2018.6월 기준 미정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종료시점	세부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기간	총 사업비	정산지연 사유
2014년	공단폐수 처리시설	예산군	2011~2014	17,014	정산 서류 부실로 정산자료 보완제출 지연, 보완자료 검토중
		서천군	2012~2014	616	정산서류 제출 지연, 서류 보완중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고양시	2009~2014	20,702	지체상금 관련 소송 정산지연

(단위: 백만원)

사업 종료시점	세부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기간	총 사업비	정산지연 사유
2015년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강원도 홍천군	2014~2015	1,470	`17.12.27 정산서 제출 `18.1.26 보완 요청 중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부여군	2008~2015	11,461	서류제출 지연 및 서류보완
	하수관거정비	서귀포시	2012~2015	10,183	정산 보완자료 미제출
	하수처리장 확충	제주시	2013~2015	1,060	정산 보완자료 미제출
강원도 홍천군		2015	3,281	`17.12.27 정산서 제출 `18.1.26 보완 요청 중	

자료: 환경부

정산이 지연되면 사업이 완결되지 않을뿐더러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국고로 회수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산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산업무가 완료되면 보조사업자(자치단체)는 보조금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나, 다년간 반환되지 않은 미반환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6)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보조금 금액을 확정된 후 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국고로 반환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sup>7)</sup>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sup>8)</sup>은 모두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최소한 사업집행이 완료된 다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8p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음연도까지는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의 조속한 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도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최소한 2017회계연도 내에 반납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까지 교부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정산 후 미반환금을 조사한 결과, 2012년 이전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미반환금이 4,600만원, 2013년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미반환금이 6억 600만원, 2014년 1억 2,600만원, 2015년 13억 6,600만원, 2016년 86억 8,100만원으로 총 108억 2,500만원이 2018년 5월 말까지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금 현황(2018.5.31.기준)]

(단위: 백만원)

미반환금 합계	보조금 교부 연도				
	2012이전	2013	2014	2015	2016
10,825	46	606	126	1,366	8,681

자료: 환경부

미반납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자치단체의 예산 미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집행잔액 등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수납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sup>9)</sup>은 반환 지연 시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금 현황(2018.5.31.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미반납금 합계	보조금 교부 연도				
		2012이전	2013	2014	2015	201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588	0	0	0	0	1,588
하수관거정비	1,660	0	0	0	0	1,660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507	0	0	0	324	183
농촌폐비닐처리사업	10	0	0	-	10	정산중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7	0	0	0	17	정산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0	0	0	0	0	정산중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15	0	0	0	0	15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 추진대책	1,461	40	514	0	44	863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2	0	0	0	2	0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26	5	0	8	7	6
환경교육강화	29	0	0	29	0	0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179	0	0	0	0	179
생태하천복원사업(생활)	1,068	0	0	0	0	1,068
생태휴식공간 확대	23	0	0	0	15	8
(한강)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69	1	9	6	53	0
(한강)친환경청정사업	11	0	0	0	11	0
(한강)퇴적물준설사업	253	0	0	0	253	0
(한강)환경기초시설 설치	95	0	0	0	0	95
(낙동강)관리청별주민지원	51	0	25	0	10	16
(낙동강)환경기초시설설치	3,090	0	0	0	617	2,473
(낙동강)하천하구쓰레기	1	0	0	0	0	1
(낙동강)오염총량관리	7	0	0	0	0	7
(금강)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	7	0	0	0	3	4
(금강)환경기초시설 설치	322	0	58	83	0	181
(금강)환경기초시설 운영	98	0	0	0	0	98
(금강)비점오염저감사업	236	0	0	0	0	236
합 계	10,825	46	606	126	1,366	8,681

주: ( )는 수계관리기금  
자료: 환경부

## 가. 현황

법정민간대행사업이란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법정민간대행사업은 민간전문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대행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sup>1)2)</sup>

2017년도 환경부 법정민간대행사업은 52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며, 주로 환경부 산하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2017회계연도 법정민간대행사업비의 예산액은 3,957억원으로, 수질재해복구비 사업의 43억원 증액과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사업의 전년도이월액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001억원이며 이 중 3,995억원이 법정민간대행사업자에게 교부되었다. 법정민간대행사업자의 실집행 실적은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465억원 중 3,277억원이 집행되고 1,057억원이 이월, 132억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법정민간대행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수	부처			법정민간대행사업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52개	395,704	400,119	399,503	399,503	47,011	446,514	327,651	105,689	13,174

주: 부처예산 중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수질재해복구비 사업이 이전용으로 4,331백만원 증액되었고,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사업의 전년도이월액 84백만원에 기인함

자료: 환경부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 1) 법정민간대행사업의 세출예산 과목은 320-08(법정민간대행사업비)이다.
- 2) 민간위탁과 차이는 민간위탁의 경우 국가사무의 일부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토록 하나, 민간대행의 경우에는 국가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귀속된다.(출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민간대행사업자와 사업 계약 시 1년을 초과하여 계약함에 따라 사업수행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한 정산 지연, 사업기간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예산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sup>3)</sup>

그러나 환경부는 법정민간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수의 사업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특히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계약하고 있고, 이로인해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어 국회의 결산심사 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이 2017.2.21.~2018.10.31.(20개월)로 1년을 초과하고 있고, 2016년도 계약기간이 2016.2.25.~2017.7.31.로, 2017년 계약기간과 약 5개월 가량이 중첩된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계약기간과 중첩되는 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대행기관명 (역무대행명)	대행기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지하수수질 보전대책	한국환경공단 (국가지하수수질전용 측정망 설치 및 운영)	2016.2.17.~ 2017.4.30	6,696	4,745	1,516	435
		2017.1.17.~ 2018.5.30	7,998	6,203	1,311	484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한국환경공단 (비점오염원관리 역무대행)	2016.1.22~ 2017.5.31	7,350	4,813	1,710	827
		2017.1.16.~ 2018.9.28	10,750	4,462	5,907	381

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대행기관명 (역무대행명)	대행기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 추진대책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시스템 운영)	2016.2.26 ~ 2017.4.30	1,256	1,248	0	8
		2017.2.21. ~ 2018.10.31	1,181	1,180	1	0
	한국환경공단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사업)	2016.2.25. ~ 2017.7.31	2,045	1,999	0	46
		2017.2.21. ~ 2018.10.31	1,922	1,620	302	0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국립공원관리공단	2016.2.26. ~ 2017.12.31.	27,021	12,962	14,059	0
		2017.3.7. ~ 2018.12.31.	26,759	18,046	8,713	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6.2.18. ~ 2017.6.30	2,466	1,763	698	5
		2017.1.23. ~ 2018.7.31	9,422	9,301	98	23
생활공해관리	한국환경공단 (소음·진동 측정망 통합 운영·관리)	2016.2.1. ~ 2017.5.31	2,707	2,228	223	256
		2017.2.7. ~ 2018.5.31	2,623	2,369	158	96

자료: 환경부

1년을 초과하여 계약하고 있는 사업들이 단년도 사업이 아닌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연례적으로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내용 상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추진할 수도 있으나, 다년도 사업에 대해 이와 같이 계약할 경우 차년도에 사업 추진 시 전년도 사업과 사업기간이 중복되고 정부의 결산심사 시점에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정산도 되지 않아 국회의 결산심사에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국가재정법」은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협상 등 계약에 의한 경비의 경우 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계약하고 이월을 승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사업수행 기간과 회계연도를 가급적 일치시켜 결산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령에 위탁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추경예산 실집행 저조 등

##### 가. 현황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sup>1)</sup>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사업자 등 배출원별로 저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7년도 추경중액분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662억 9,900만원 중 1,598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50억 900만원을 이월, 14억 6,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기개선추진대책	122,522	165,924	375	0	166,299	159,824	5,009	1,466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74,031	109,433	0	0	109,433	109,433 (100,314)	0	0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0	2,000	0	0	2,000	2,000 (515)	0	0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13,440	19,440	0	0	19,440	19,440 (15,628)	0	0
·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사업	880	880	0	0	880	880 (765)	0	0

자료: 환경부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631-301

## 나. 분석의견

첫째, 연내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사업준비 미흡으로 추경에서 증액된 사업의 실집행이 저조하다.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은 2017년도 추경을 통해 증액되었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354억 200만원 증),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20억원 증), 도로 재비산먼지<sup>2)</sup> 저감사업(60억원 증) 등 3개의 내역사업에서 총 43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다. 3개 사업은 모두 자치단체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으로, 예산이 전액 자치단체로 교부되었다.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추경증액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본예산 (a)	추경증액 (b)	예산합계 (A=a+b)	실집행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4,031	35,402	109,433	100,314	4,453	9,176	91.7
- 조기폐차 <sup>1)</sup>	48,240	18,612	66,852	64,013	441	6,908	95.8
- 저감장치(DPF) 부착 <sup>2)</sup>	22,212	2,501	24,713	22,242	110	2,361	90.0
- 저공해(LPG) 엔진 개조 <sup>2)</sup>	-	499	499	112	0	387	22.4
- PM·NOx 동시저감장치	450	3,165	3,615	1,850	905	860	51.2
- 건설기계 DPF 부착	170	4,775	4,945	5,419	1,222	(-)1,696 <sup>4)</sup>	109.6
- 건설기계 엔진교체	1,725	5,850	7,575	5,873	1,775	(-)73 <sup>4)</sup>	77.5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sup>3)</sup>	1,234	0	1,234	805	0	429	65.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0	2,000	2,000	515	75	1,410	25.8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3,440	6,000	19,440	15,628	2,520	1,292	80.4

주: 1) 조기폐차 사업에서 사업시행기관의 전년도이월액 4,509백만원으로 예산액 합계(A)와 실집행(B)+이월+불용액의 합이 차이가 발생함

2) 저감장치(DPF) 부착 25억원과 저공해(LPG) 엔진개조 5억원은 국회의 추경심사과정에서 증액됨

3) 노후경유차 운행제한(34대)은 CCTV 설치사업이며, 추경에서 증액된 사업은 아님.

4) 불용액 중 (-) 값은 내내역 사업간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집행액임

자료: 환경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경에서 증액된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예산액 20

2) 도로 재비산먼지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를 말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2조제1호)

억원 중 5억 1,500만원이 집행되어 실적행률이 25.8%에 불과하고<sup>3)</sup>,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저공해(LPG) 엔진 개조와 PM·NO<sub>x</sub> 동시저감장치<sup>4)</sup> 사업의 실적행률이 각각 22.4%와 51.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접수·집행기간이 부족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차령제한<sup>5)</sup>이 2019.1.1.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들이 2017년보다는 2018년에 전환을 희망하여 실적행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공해(LPG) 엔진 개조는 전체적인 수요부족과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 및 부품조달 문제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였고, PM·NO<sub>x</sub> 동시저감장치 사업은 추경에서 물량이 급격히 증가(본예산 60대, 추경으로 422대)하여 수요 조사 및 예산집행에 필요한 기간 소요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들은 수요조사나 물량의 공급가능성 등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경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제 사업수요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sup>6)</sup>

**둘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별로 예산을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각 예산을 구분하여 심의·확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내역을 조정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내내역사업 중 건설기계 DPF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위한 예산액은 각각 49억 4,500만원과 75억 7,500만원인데, 실적행액과 이월액을 합한 금액은 각각 66억 4,100만원과 76억 4,800만원으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이들 사업은 2016년에도 예산액은 각각 1억 7,000만원, 17억 2,500만원인데 실적행액은 각각 7

3) 800대를 계획하였으나 206대 지급완료하고 30대는 이월, 564대가 불용되었다.

4)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이고, PM·NO<sub>x</sub> 동시저감장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sub>x</sub>)까지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어린이 통학차량 사용 차령에 대한 법령\* 강화로 2019년 1월 1일부터 차령이 9년 초과(정비를 통해 최대 11년까지 연장 가능)된 차량은 어린이 통학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6) 추경사업은 아니지만 도로에 CCTV 설치를 위한 사업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기존의 경우 1차선에 1대씩 설치를 하였으나 기술 발전으로 카메라 1대가 2·3차선을 단속하게 됨으로써 계획보다 설치 대수가 줄어들어 집행이 부진한 바, 사전조사 시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실제 소요물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억 3,200만원, 66억 8,600만원으로 초과집행되었다. 예산부족분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내의 타 사업으로부터 자체 변경하여 확보하였다.<sup>7)</sup>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예산액 대비 초과 집행 사업]

(단위: 백만원)

	2016년			2017년			
	예산액 (추경포함)	실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추경포함)	실집행액 (A)	이월액 (B)	실집행액 및 이월액 (A+B)
건설기계 DPF 부착	170	732	0	4,945	5,419	1,222	6,641
건설기계 엔진교체	1,725	6,686	0	7,575	5,873	1,775	7,648

자료: 환경부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각각의 사업들을 검토하여 증액 여부 등을 결정<sup>8)</sup>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정부나 사업시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변경·집행하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자체적 예산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사업은 1분기에 실적이 저조한데, 최근 미세먼지가 연중 발생하고 있으므로 1분기에도 사업실적을 제고하여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도로청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측정하여 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액은 8억 8,000만원으로 사업시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전액 교부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이나 도로청소 행정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횟수를 보면, 분기별로 편차가 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특히 1분기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에는 총 611회의 자료제공 중 1분기 실적은 13회에 불과하고, 2017년에도 총 588건의 자료제공 중 1분기에 실적은 6회에 불과하다.

7) 사업시행기관에서의 내역사업간 예산 조정은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가 승인하고 있다.

8) 국회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을 증액하면서 저감장치(DPF) 부착(25억원 증)과 저공해(LPG) 엔진개조(5억원 증) 예산을 증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치단체 도로청소 행정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단위: 회, km)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2014	37	37	6	32	112
2015	11	47	10	34	102
2016	13 (242)	136 (5,163)	287 (10,032)	175 (6,366)	611 (21,803)
2017	6 (607)	135 (6,312)	222 (7,505)	225 (7,870)	588 (22,294)

주: ( )는 측정 거리(km)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1분기(동절기)는 도로재비산 측정에 부적합한 기온과 기상으로 인해 주로 직전년도 자료분석 및 당해년도 측정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동측정차량 6대 중 4대는 위탁 운영(환경공단→업체)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측정시작일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가 연중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8년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sup>9)</sup>가 1분기에 5차례(1.15., 1.17., 1.18., 3.26., 3.27.) 발령되는 등 겨울철에도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sup>10)</sup>, 1분기(동절기)에도 재비산먼지 오염 우심(憂心)지역을 조속히 청소할 수 있도록 도로재비산먼지 측정 사업을 연중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9)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 수도권지역에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자장 운영 단축·조정을 실시하여 단기적으로 미세먼지(PM<sub>2.5</sub>)를 저감시키는 긴급조치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미세먼지(PM<sub>2.5</sub>) 주의보 발령(90 $\mu$ g/m<sup>3</sup> 2시간 초과)된 날, ① 당일(00~16시) PM<sub>2.5</sub> 평균농도가 나쁨(50 $\mu$ g/m<sup>3</sup> 초과) 이상이며 ②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mu$ g/m<sup>3</sup> 초과)" 예보된 경우이다.

10) 분기별 미세먼지 나쁨 또는 매우나쁨 일수(2018.5월말 기준)

(단위: 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2015	20	2	0	4	26	8	0	1	4	13
2016	3	9	0	3	15	4	4	0	2	10
2017	6	7	0	3	16	8	0	0	4	12
2018.5	8	6			14	15	6			21

주: 1. 미세먼지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로 구분  
2. 2018. 3. 27일 이후 PM2.5 등급 기준 개정  
(나쁨: 51~100 $\mu$ g/m<sup>3</sup> → 36~75 $\mu$ g/m<sup>3</sup>, 매우나쁨: 101 $\mu$ g/m<sup>3</sup>초과 → 76 $\mu$ g/m<sup>3</sup>초과)  
자료: 환경부

### 가. 현황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리체계 구축 사업<sup>1)</sup>은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시험·분석장비 구입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및 평가기관 지정 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운영(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20억 1,800만원으로 환경부는 이 중 7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대부분 자산취득비(이월액 7억 4,700만원, 불용액 3억 9,900만원)에서 발생하였다.

[2017회계연도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리체계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리체계 구축	1,958	1,958	0	0	2,018	784	796	438
재활용환경성평가체계 구축 운영	1,568	1,568	60	0	1,628	394	796	438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390	390	0	0	390	390	0	0

자료: 환경부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는 「폐기물관리법」<sup>2)</sup>에 따라 2016년 7월 21일부터 도입된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11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도로, 새로운 재활용 방법을 제도화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관리기준도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허용하지 않고, 재활용 유형별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준수하게 해서 안전성이 입증 되었을때만 재활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려고하는 자는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승인하는 구조이다.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환경공단 1개소이다.<sup>3)</sup>

## 나. 분석의견

**첫째,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의 운용 실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2017년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실적을 보면, 매체접촉형(비료, 사료, 복토재 등 토양이나 지표수에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 2건, 비매체접촉형(폐기물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의 재활용) 7건 등 총 9건으로 당초 계획한 62건<sup>4)</sup>에 비하여 저조하다.<sup>5)</sup>

3) 2016~2018.5월 기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한국환경공단 1개 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3개 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업무수행능력 및 인력구축 분야 미비로 인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번호	기관명	신청일	검토결과
1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성평가팀	2016.9.13	기관지정('16.12.1)
2	(재)서해환경과학연구소	2016.11.17	부적합('17.2.14)
3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7.12.12	부적합('18.2.7)

4)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사업비는 “한국환경공단 출연(1950-303)”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매체접촉형 8건, 비매체접촉형 54건의 평가수행을 예상하고 2017년도 한국환경공단 출연사업에 82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5) 2017년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한국환경공단 밖에 없으므로,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신청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전체 업체로 볼 수 있다.

[2017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계획 대비 실적]

(단위: 건)

	계획	실적
매체접촉형	8	2
비매체접촉형	54	7
합 계	62	9

자료: 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6년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3억 9,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간 120명 교육을 예상하고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교육 등록 인원은 67명, 교육이수자는 60명으로 목표 달성에 미달하였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이수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원	등록 <sup>1)</sup>	교육이수	응시 <sup>2)</sup>	수료시험 합격
2016	140	96	90	100	70
2017	120	67	60	63	30

주: 1) 개인사정 등으로 지원자 대비 실제 등록인원은 감소함

2) 재응시자 포함

자료: 환경부

동 교육과정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기준(기술인력 중 최소 3명이상 동 교육과정 수료 필요)<sup>6)</sup>에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신청 자체가 저조하고, 또한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도 많지 않으며,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기준도 3명에 불과하여 연간 120명 교육 목표가 적정 수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sup>7)</sup>

6)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②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1. 기술인력기준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비고. 8.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3명 이상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둘째, 자산취득비가 연도말에 집행되거나 상당 금액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도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2억 5,400만원이고 이월액이 7억 4,700만원, 불용액이 3억 9,900만원이다. 집행액 2억 5,400만원 중 1억 3,900만원이 11~12월에 집행되었다.

[자산취득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자산취득비 (430-01)	1,340	1,340	60	1,400	254	747	399	18.2

자료: 환경부

재활용환경성평가체계 구축·운영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연도말 집행과 이월액 발생 사유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3천만원 이상 장비구매 시 장비구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구매여부를 결정(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규정, 예규 제696호)하고, 장비심의 및 구매관련 업무 절차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매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8)</sup>

이와 같은 절차를 고려할 때 장비 구매를 조속히 추진하였어야 하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장비심의 요청을 2017년 9월에 실시<sup>9)</sup>하는 등 예산의 연도 내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고가의 장비의 경우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결과보고서에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인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규 양성보다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평가지정기관 관리를 위한 재교육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8) 2017년도 예산액 13억 4,000만원 중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액은 6억 6,400만원으로, 이 중 3,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다.

9) 장비심의요청(17.9), 장비심의결과 통보(17.10), 장비구매계획보고 및 장비구매 요청(17.10), 구매계약체결통보(17.11), 장비대금 지급(17.11~12)

### 가. 현황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sup>1)</sup>은 물산업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물산업진흥시설, 실증화시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부터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335억원(국고 100%)이다.

2017년도 예산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639억원과 물산업 분야 우수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 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비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년도 이월액 36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15억원 중 669억원을 집행하고 341억원을 이월, 5억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4,902	64,902	36,570	0	101,472	66,909	34,091	472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902	63,902	35,615	0	99,517	65,825	33,672	21
물산업육성 정책연구	1,000	1,000	955	0	1,955	1,084	419	451

자료: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시설 개요]

구분	주요 시설	주요 기능	부지면적(m <sup>2</sup> )
물산업 진흥시설	물융합연구동 위터캠퍼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물산업 기초·응용·융합 연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 마케팅·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64,248(10%)
실증화시설	실증플랜트, 관망시험구역	성능시험, 인·검증	80,961(12%)
기업집적단지	기업 입주공간(산업단지)	개발기술 상용화, 제품 생산	481,070(74%)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6.11.10) 물산업의 실리론 벨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착공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311-311

2018년 6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8.12.13.시행)」의 제정으로 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방식, 지원 근거 등이 마련<sup>2)</sup>되었다.

## 나. 분석의견

**첫째,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2015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료할 예정이 었으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에 일정기간 소요되었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도 응찰업체가 없어서 2회 유찰됨에 따라 2016년 11월에 본공사에 착공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성능시험기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사업기간 을 2018년 12월에서 2019년 6월로 연장<sup>3)4)</sup>하였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 계획변경]

(단위: 백만원)

	당초	변경 (2018.3.22.)	비고
총사업비	2,335	2,335	동일
사업기간	2015~2018년	2015~2019년	입찰유찰로 사업지연, 성능시험기간 필요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목적인 물산업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공사기간 연장이나 사업지연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사업기간 연장(통보 공문 2018.3.22.)

4) 2018.12월말 공사완료, 성능시험기간(시운전, 2019.1~2019.6)

둘째, 실증화시설이 완공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확보가 필요하다.

기업집적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수는 50개 규모로, 물산업 클러스터 착공 시점인 2016년 10월 기준 16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기준으로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20개 기업으로 약 1년 반 동안 4개 기업만 추가적으로 입주를 확정하였다.

환경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8.6.12.제정, 2018.12.13.시행)으로 운영방식,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되었으나, 법 통과 전에는 집적단지의 운영방식이나 운영주체 등이 결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입주여부를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산업클러스터가 조기에 안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근 기업직접단지에 물 관련 업체의 입주율이 높아져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운영방식 등도 결정된 만큼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운영계획의 수립과 함께 물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입주기업의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산업 우수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비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다.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는 2017년도 예산액 10억원<sup>5)</sup> 중 1억 6,100만원만 집행되고, 4억 1,900만원이 이월, 4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6~2017년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본예산	추경					
2016년	2,200	2,200	0	2,200	1,022	955	223
2017년	1,000	1,000	955	1,955 (1,000)	1,085 (161)	419 (419)	451 (420)

주: ( )는 2017년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실적  
자료: 환경부

5)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부진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10억원으로 감액되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이 2017년도 하반기에 체결됨에 따라 선급금 지급 후 남은 예산잔액이 준공시점인 2018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입찰참가 업체 미등록에 따른 연구 용역유찰(3억원), 낙찰차액(1억 2,000만원)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지연으로 운영시작 시점도 순연되기는 하였으나, 정책연구가 클러스터조성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것이고, 2018년에는 정책연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당초 계획한 물산업 우수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완공 후 시설 운영이나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연구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연구용역비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계약기간 (변경)	수행기관
예산 편성 내역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물산업 우수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비 1,000백만원</li> <li>- 물산업 주요 국제표준 현황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200백만원</li> <li>- 유역단위 물 재이용 및 물-에너지 연계모델 도출 : 300백만원</li> <li>- 기술선도형 상하수도 인프라 혁신사업 추진전략 : 200백만원</li> <li>-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개발 연구 : 300백만원</li> </ul>				
집행 (실적)	물-에너지-자원 순환이용 기초모델 개발 연구	195	63	2017.5.25.~ 2018.5.24. (2017.5.25.~ 2018.8.24.)	(주)유신
	국가 물산업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195	98	2017.8.11.~ 2018.6.11. (2017.8.11.~ 2018.8.10.)	(주)날리지 웍스
	물산업 클러스터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190	0	2017.11.28.~ 2018.4.27. (2017.11.28.~ 2018.10.26.)	피앤티 컨설팅(주)
	소계	580	161		

주: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사업기간을 변경함  
자료: 환경부

### 가. 현황

방치폐기물<sup>1)</sup>처리 행정대집행 사업은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sup>2)</sup>의 내역 사업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정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9조<sup>3)</sup>에 의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비용징수는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방비 확보 후 국고지원(국고보조율 70%)을 신청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상대로 행정집행 비용을 징수(구상권 청구)하게 된다.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을 위한 2017년도 예산액은 2억 9,300만원으로 전액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	1,103	1,103	0	0	1,103	809	0	294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293	293	0	0	293	0	0	293

자료: 환경부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 1)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배출업체 등의 휴폐업, 조업중단으로 관리기관에서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 2)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1
- 3) 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체되어 있는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방치폐기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은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행정대집행이 발생한 사례는 2014년 1건(1억 6,00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5년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3년	495	0	0	495	0	0	495
2014년	442	0	0	442	160	63	219
2015년	442	63	0	505	142 <sup>1)</sup>	0	363
2016년	293	0	△293 <sup>2)</sup>	0	0	0	0
2017년	293	0	0	293	0	0	293

주: 1) 2015년 집행액 142백만원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집행이 아닌, 메르스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물품 구입 및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손실보상비 등으로 집행됨

2) 2016년 이전용 등 293백만원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전용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 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이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행정대집행 시 채무자(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자력 부족으로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가 어렵고, 처리명령 및 고발을 반복함에 따라 업무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공문,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나, 자치단체가 폐기물을 방치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적치 현황을 보면, 2015~2016년에 급증<sup>4)</sup>함에

4) 환경부는 2015년과 2016년에 급증한 원인에 대해 자치단체가 환경부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므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인지 과거의 것이 특정한 해에 신고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다만 방치폐기물이 급증한 지역은 경기도이다.

따라 적체량이 2014년말 기준 약 8만톤에서, 2017년말 기준 78만톤으로 10배 가량 증가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적치 현황]

(단위: 톤)

구 분	전년도 잔여량	발생량	처리량	적체량 (누적)	비 고
2013년	116,970	19,175	46,587	89,558	
2014년	89,558	19,864	31,788	77,634	국비지원 160백만원 (460톤 처리)
2015년	77,634	186,445	184,411	82,668	
2016년	82,668	681,241	33,699	730,211	
2017년	730,211	55,211	9,150	776,272	

자료: 환경부

방치된 폐기물은 침출수,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인체에 위해를 줄 수도 있어 적체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방치폐기물의 증가 및 방치 폐기물의 위해 등을 고려할 때 환경부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방치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은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sup>1)</sup>의 내역사업으로,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환경성질환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산모 등을 모집하여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먼저 조사하고 이후 질병에 걸리는지 추적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은 4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억 5,600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억 6,000만원이며, 환경부는 이 중 41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년도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7,000	7,000	861	0	7,861	5,975	1,727	158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4,704	4,704	756	0	5,460	4,151	1,272	37

자료: 환경부

출생코호트 사업은 대구모코호트(6.5만명, 1,392백만원)와 상세코호트(5천명, 2,483백만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모코호트는 산모의 채혈 및 설문조사(1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의 영유아건강검진 및 교육부의 학생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추적관리하는 것이고, 상세코호트는 모집된 출생아에 대해 청소년기까지 혈액·소변검사, 설문조사, 환경측정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두 코호트 사업 모두 3년 동안(2015~2017년) 참여자를 모집한 후 약 20년 동안 추적관리한다.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938-302

## 나. 분석의견

첫째,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은 초중고 학생들은 교육부<sup>2)</sup>에서, 그 외의 시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두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협의가 완료되어 시스템 연계 중에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과 연계를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동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하여 산모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출생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까지는 3년 가량의 시간이 있다고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사업과 연계 문제는 동 사업(코호트 구축)의 기획단계부터 제기되었던 사항이나 교육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히 협의가 완료되어도 시스템 연계 등 일정기간이 필요<sup>3)</sup>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반인 집단이나 질환군 대상의 코호트 사업, 유전·환경 상호작용 연구 등을 위한 모델 코호트 등을 포함하여 19개의 코호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소아호흡기·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 코호트 구축 사업이 환경부의 동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의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은 전국단위로 집단을 모집하고, 유해환경인자 노출이 5개 영역(임신·출산, 알레르기, 신경인지 발달, 성장발육·내분비계,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산모 등을 모집하고 주요 위험인자 노출과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 분석이라는 점에서 사업범위가 좁다는 차이가 있다.

2) 학생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검진자료 연계는 사전기획단계(2014년)부터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2018년 현재 시스템 연계중이 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간 코호트 사업과 비교]

구분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사업명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상세코호트)	소아호흡기·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 코호트 구축
사업기간	2015~2036년(22년간)	2009~계속
사업대상	산모·영유아~18세 청소년	산모·영유아~18세 청소년
모집단위	전국	수도권 중심
모집인원	5,000명	3,000명
질병	임신·출산, 알레르기, 신경인지 발달, 성장발육·내분비계, 사회성 및 정서발달	호흡기·알레르기
2017 예산액	2,483백만원	773백만원

자료: 환경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사업이 모집단위가 크고 질병범위가 더 넓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정기적 설문조사와 임상검진을 실시하고 2017년부터는 실내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어 환경부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코호트사업은 특성상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이므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호트 사업은 모집된 인원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여하기로 한 모집인원이 중도에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8년 5월기준으로 연도별 모집된 인원의 동의철회 비율을 살펴보면, 상세코호트의 경우 2015년에 모집한 인원 중 9.3%가 참여를 포기하였고, 2016년 모집 인원 중에서는 8.6%, 2017년 모집인원 중에서는 3.3%가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혀, 처음 참여 후 참여횟수가 증가할수록 중도포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모집인원 대비 동의철회 비율(2018.5월 기준)]

(단위: 명)

모집시기	상세코호트			대규모코호트		
	모집인원(A)	동의철회(B) (2018.5월 기준)	철회 비율 (B/A)	모집인원(A)	동의철회(B) (2018.5월 기준)	철회 비율 (B/A)
2015년 모집	1,274	118	9.3%	5,257	10	0.2%
2016년 모집	1,901	163	8.6%	15,416	123	0.8%
2017년 모집	1,633	54	3.3%	14,013	57	0.4%
소 계	4,808	335	7.0%	34,686	190	0.5%

자료: 환경부

코호트 구축 사업은 장기 추적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사업으로, 중도포기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검사비용 등은 매몰비용이 되고, 연구결과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도포기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동일한 기관과 연구용역 계약을 실시하면서 계약기간을 전년도 과제기간과 중첩하여 계약하였고,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타 사업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가 미흡하다.

환경부는 동 사업을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데, 매년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협약을 실시하면서 전년도 과제 계약기간과 당해연도 계약기간을 일부 중첩하여 협약을 실시하였다.

[출생코호트 연구 연도별 계약체결 현황('15~'18년)]

(단위: 백만원)

연도	상세코호트			대규모코호트		
	계약액	집행액	계약기간	계약액	집행액	계약기간
2015	649	649	'15.4.20~'16.3.4	699	693	'15.4.20~'16.3.4
2016	928	928	'16.2.26~'17.2.24	1,523	1,523	'16.2.26~'17.2.24
2017	1,372	960 <sup>1)</sup>	'17.2.13~'18.2.9	2,749	2,742	'17.2.13~'18.2.9
2018	1,333	933	'18.3.2~'19.2.28	2,726	1,908	'18.3.7~'19.2.28

주: 1) 정산 미완료로 2018년 5월중 추가 집행 예정

2) 사업수행기관 : 이화여대(상세코호트), 울산대(대규모코호트)

3) 두 개 과제 모두 1개 기관만 응찰하여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실시함

자료: 환경부

중첩기간이 길지 않으나(약 10일 내외), 연구수행기관이 동일하고 산모모집원(대규모코호트)과 추적연구원(상세코호트) 인건비가 12개월 편성되어 사업수행인력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 기간을 중첩하는 것은 업무상, 예산집행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사업(코드명: 1938-301)에서 14개 환경보건센터<sup>4)</sup>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민간경상보조, 3억원 내외/개소)하고 있다. 환경보건센터는 센터별로 아토피피부염, 천식, 소아암 등 환경성질환 분야를 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예방관리,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14개 센터 중 12개 센터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각 센터의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산모모집 및 추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위해 약 200~4,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다.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중 출생코호트사업을 위한 예산액]

(단위: 천원)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중 출생코호트 사업 관련 예산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중 출생코호트 사업 관련 예산
강원대 환경보건센터	33,500	순천향대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	15,000
고려대 안암병원 환경보건센터	39,000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	21,453
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	42,500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33,637
동아대 환경보건센터	20,140	제주대 환경보건센터	2,200
삼성서울병원 환경보건센터	30,110	화순전남대 환경보건센터	7,000
서울대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47,100	태안보건의료원 환경보건센터	4,000
		소 계	295,640

주: 센터별 운영비는 약 3억원 지원  
 자료: 각 환경보건센터 2017년도 사업계획서

환경부는 출생코호트 사업이 환경보건센터가 중심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센터 사업비 일부를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예산의 중복 지급을 방

4) 「환경보건법」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사·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를 위하여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중 상세코호트 사업의 예산에 모집 인원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산모 모집과 추적검사 등을 위해 환경보건센터의 협조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타당하나, 타 사업에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 규모에 혼선이 있고 사업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환경부는 생물자원의 수집, 연구, 보전, 전시 등을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예정), 국립생태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정부조직이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공공기관이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원관 및 생태원 현황]

구분 (개관일)	국립생물자원관 (2007.1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15.7.)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020년 목표)	국립생태원 (2013.12.)
법적근거	정부조직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국립낙동강생물자원 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및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운영방법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예정)	공공기관
조직인원	115명	110명	120명(예정)	334명
기능	· 생물자원 연구·수집·보전 및 홍보·전시 ·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지원 · 생물자원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 담수분야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발굴 · 담수분야 생물자원 특성화 연구 및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 · 생물자원 전시·교육 등	· 호남권 및 도서·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연구, 보전·이용기술 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 · 호남권 생물자원 인식증진 및 인력양성 등	· 생태연구 · 생태전시 · 생태교육 · 멸종위기종 복원 · 대외협력 등
예산 (백만원)	'17년 48,782 '18년 45,633	출연금 '17년 21,687 '18년 19,363	(건립 예산) '17년 7,929 '18년 4,194	출연금 '17년 40,930 '18년 53,900
위치	인천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충남 서천군

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0년 개원 목표로 설립공사가 진행중  
자료: 환경부

각 기관의 전시관 운영과 교육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시관 기획 및 운영 사업<sup>1)</sup>은 국립생물자원관 내에 설치한 자생생물 전문 전시관의 운영과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는 2017년도 예산액 13억 3,700만원 중 13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립생태원의 전시관 운영과 교육사업은 국립생태원 출연 사업<sup>2)</sup>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립생태원은 생태전시 기획·운영과 생태교육기획 및 운영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49억 6,800만원 중 48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전시관 운영과 교육사업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사업<sup>3)</sup>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전시관 운영 및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위해 19억 3,300만원 중 17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환경부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사업<sup>4)</sup>의 2017년도 예산현액 90억 9,100만원 중 1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76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전시관 기획 및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본예산	추경					이월액	불용액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 기획 및 운영	1,337	1,337	0	0	1,337	1,336	0	1
국립생태원 출연	40,900	40,930	0	0	40,930	40,930	0	0
생태전시 기획·운영	(3,162)	(3,162)	(0)	(0)	(3,162)	(3,102)	(0)	(60)
생태교육기획 및 운영	(1,778)	(1,778)	(28)	(0)	(1,806)	(1,738)	(17)	(51)
소계	(4,940)	(4,940)	(28)	(0)	(4,968)	(4,840)	(17)	(11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21,590	21,687	0	0	21,687	21,687	0	0
전시관 운영 및 전시	(1,469)	(1,469)	(34)	(0)	(1,503)	(1,366)	(50)	(87)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93)	(393)	(37)	(0)	(430)	(411)	(0)	(19)
소계	(1,862)	(1,862)	(71)	(0)	(1,933)	(1,777)	(50)	(106)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7,929	7,929	1,162	0	9,091	1,260	7,692	139

주: ( )는 사업시행기관의 예산 및 집행액  
자료: 환경부

-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844-301
- 2)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833-332
- 3)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832-340
- 4) 코드명: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1831-303

## 나. 분석의견

첫째, 자원관의 입장료가 기관별로 상이하나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입장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3개의 전시관의 입장료를 살펴보면, 국립생물자원관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성인기준으로 각각 2,000원, 5,000원을 징수하고 있다.<sup>5)</sup>

[자원관 등 입장료]

기관명(지역)	입장료	비고
국립생물자원관 (인천)	무료	환경부 소속기관(정부조직)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북 상주)	대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소인 1,000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법인)
국립생태원 (충남 서천)	대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소인 2,000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법인)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각 기관의 입장료는 기관의 수입과 지출, 출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하나,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만 무료로 운영<sup>6)</sup>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 전시시설 총 48개 중 45개가 무료<sup>7)</sup>로 운영되므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원관과 생태원의 전시관 이용객의 상당수가 인근 지역의 주민(주로 어린이)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당 전시관이 정부기관, 공공기관이라는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기관별로 입장료 차이의 이유를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5) 참고로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의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6)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설립당시 ‘전시품 관람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책정하고 있었으나, 생물자원 가치 홍보를 위해 관람료 징수를 유예하였고, 2009년 국립전시시설 무료입장 정책(2008년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2009년 ‘전시품 관람규정’을 개정하여 관람료 조항을 삭제하였다.

7)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 전시시설 48개소 중 유료로 운영되는 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법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법인)) 3개 기관이다. 다만, 국립생태원은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제외되었다.

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의 경우 법률에 이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sup>8)9)</sup>

**둘째,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교육과 연계한 숙박시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은 교육프로그램이나 해설프로그램 이용 시 또는 회의 참여 시 사용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총 29실을 보유하고 있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총 13실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숙박시설 보유 현황]

구분	숙박시설 구성	이용요금
국립생태원	총 29실 (4인실 14실, 6인실 15실)	6만원, 10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총 13실 (1인실 6실, 4인실 5일, 6인실 2실)	4만원, 8만원, 12만원

자료: 환경부

이들 숙박시설의 이용실적을 보면, 국립생태원은 이용실적이 2015년 4,002건에서 2016년 3,274건, 2017년 3,01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연간 이용실적이 275건으로 일평균 1개실만 대여되고 있다.

8)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 국립과학관의 경우 입장료 또는 테마별 체험관 등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성인기준으로 국립과천과학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4천원, 국립대구과학관 3천원, 국립부산과학관 3천원, 국립중앙과학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은 상설전시관은 무료이나 일부 관들은 유료로 운영, 국립어린이과학관 2천원이다.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숙박시설 이용실적]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구분	이용건수			예산(수입)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국립생태원	2014년	4,500	2,132	47.3	270 <sup>1)</sup>	149	55.2
	2015년	3,468	<b>4,002</b>	115.4	200 <sup>2)</sup>	292	146.0
	2016년	2,843	<b>3,274</b>	115.2	227	239	105.3
	2017년	3,575	<b>3,012</b>	84.3	286	188	65.7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2016년	1,755	<b>180</b>	10.3	140	14	10.0
	2017년	1,755	<b>275</b>	15.7	140	17	12.1

주: 1) 2014년 개원초기로 인해 숙박단가를 6만원으로 적용

2) 2014년 실적을 반영하여 2억원으로 조정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해당기관의 숙박시설이 교육 및 회의 등 참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한정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초 숙박시설을 건립한 이유가 교육 및 회의 등 참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전시 프로그램 개선, 적극적인 교육생 유치 등을 통해 숙박시설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경우 교육참여 실적도 저조<sup>10)</sup>하여 교육실적의 향상과 함께 숙박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교육참여 실적]

구분	인원(명)			예산(백만원)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2016년	23,400	8,867	37.9%	129	28	21.7%
2017년	23,400	10,717	45.8%	129	41	31.8%

자료: 환경부

10) 환경부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교육참여 실적을 계획할 때, 규모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립생태원을 모델로 하여 산정함에 따라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가. 현황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사업체 분담금, 중앙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구제급여의 지급, 석면피해 예방 사업 등에 사용된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소형 사업성기금으로 여유자금 운용은 전문성 부족 등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유자금 전액을 연기금투자쪽에 위탁하고 있다. 2017년도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06억 6,300만원으로 여유자금 일부(300억원)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2016년 493억 5,800만원 대비 286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다.

[석면피해구제기금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기금 운영비	차입금 원금 상황	차입금 이자 상황	여유 자금 운용
	경상	융자	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소계				
2015	8,972	0	8,972	0	0	0	0	1,656	0	0	42,185
2016	10,595	0	10,595	0	0	0	0	1,665	0	0	49,358
2017	14,496	0	14,496	0	0	30,000	30,000	1,705	0	0	20,663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2017년회계연도 결산 결과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사업규모에 비하여 여유자금이 과다하고, 2017년에는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첫째,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사업성기금이지만 여유자금 규모가 연간 순지출액의 3배 수준으로 여유자금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사업성기금은 사업수행이 기금운용의 주된 목적이므로 기금의 수입·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적정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석면피해구제기금은 매년 수입액이 지출액을 초과하여 여유자금 또한 매년 증가하였고, 그 결과 순지출액(사업비+운영비) 대비 여유자금 비율이 3~4배로 나타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
여유자금(A)	13,750	23,502	29,007	34,319	42,186	<b>49,358</b>	<b>50,663</b>	48,470
순지출액(C=D+E)	4,200	10,059	11,796	12,838	10,628	12,260	16,201	15,353
- 사업비(D)	2,700	8,280	10,104	11,185	8,972	10,595	14,496	13,630
- 기금운영비(E)	1,500	1,779	1,692	1,653	1,656	1,665	1,705	1,723
A/C	3.3	2.3	2.5	2.7	4.0	4.0	3.1	3.2

주: 2017년과 2018년(계획) 여유자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300억원 포함한 금액임  
자료: 환경부

여유자금이 과다하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환경부는 2017년에 정부 전입금 규모를 축소(30억원 → 5억원)하고 산업계 부담률을 하향조정(0.004% → 0.003%)하는 등 수입구조를 개선하였고, 피해자 발굴(2016년 87억원 → 2017년 105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의 이관(석면안전관리사업 1,073백만원) 등을 통하여 지출구조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공자기금에 예탁한 300억원 포함)이 2016년 494억원에서 2017년 50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여유자금 과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는 한편, 수입 및 지출구조 개선 등 여유자금이 과다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0.77%로 목표수익률에 미달할 뿐 아니라 타 기금에 비해서도 저조하다.

「석면피해구제법」과 동법 시행령<sup>1)</sup>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지침」에서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설정한 자산별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있다.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의 목표수익률은 1.90%이다.<sup>2)</sup>

그러나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0.77%로, 목표수익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 3년(2015~2017년) 간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타 기금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 소관 기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도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연기금투자쪽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들 기금의 2017년도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은 1.09~1.36%로 2016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 소관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단위: %)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석면		
	소계	직접	연기금	소계	직접	연기금	소계	직접	연기금	소계	직접	연기금	소계	직접	연기금
2015	1.70	2.05	1.45	1.49	0.76	1.74	1.65	0.08	1.70	1.83	2.09	1.67	2.93	0	2.93
2016	0.93	1.41	1.19	1.33	0.06	1.39	1.30	0.06	1.39	1.30	0.12	1.38	1.34	0	1.34
2017	1.30	1.30	1.09	1.33	0.07	1.35	1.34	0.07	1.36	1.30	0.09	1.36	0.77	0	0.77

주: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대부분 연기금투자쪽에 위탁운용하고 있음  
자료: 환경부

1) 「석면피해구제법」

제26조(기금의 관리·운용)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운용)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용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기금전체에 대한 목표수익률이 1.9%이고, 단기자금에 대한 목표수익률은 1.31%, 중장기자금에 대한 목표수익률은 1.94%이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전체 여유자금 중 중장기 상품(채권형)에 93.6%, 단기 상품(MMF)에 6.4% 투자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자금 중 단기·중장기 운용규모 및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자산운용위원회<sup>3)</sup> 심의의결을 통해 의사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7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북핵) 및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미국, 한국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기금투자폴 채권형 상품의 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유사하게 중장기자금(채권형)을 운용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경우 수익률이 2016년 1.19%에서 2017년 1.0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sup>4)</sup>

3) 자산운용위원회는 「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위원장은 환경부 기금 담당과장이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한국환경공단 기금운용 관련팀장과 재무 및 위험관리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4) 참고로 연기금투자폴에 위탁하더라도 자산배분비율이나 운용상품 선정은 자산운용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기금 담당과장)에서 결정하며, 「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지침」은 자산배분 재조정을 규정하면서 필요시 자산별 투자 비중을 재조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6. 자산배분 재조정

-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자금 소요시기 조정 등으로 자금의 안정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시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적정 유동성 규모를 감안하여 자산별 투자 비중을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할 수 있다.

### 가. 현황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sup>1)</sup>은 여름철 4대강 등에 녹조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류경보제 운영, 발생메커니즘 규명 등 대응을 강화하여 조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액은 213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9,700만원과 자체 전용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7억 2,500만원 중 210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400만원을 이월, 2억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21,368	21,368	297	60	21,725	21,057	464	204

주: 이·전용 등은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운용(1234-303) 사업에서 6,000만원 자체전용함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연구용역비와 여비 등의 집행에 있어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이라는 사업목적과 관련이 낮은 집행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연구용역비 집행실적을 보면, 환경부는 동 사업을 통해 녹조발생 대응과 관련성이 낮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마련을 위한 포럼 운영’ 등을 실시하였다.<sup>2)</sup>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232-306

2) 환경부는 2017년 예산편성 당시 물관리일원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였고 물통합물

[연구용역비 계획 대비 집행 비교]

구분	계획	집행
연구 과제	고랭지 밭 불법경작지 단속을 위한 과학적 관리시스템 도입(150백만원)	비점오염원관리지역(만대, 가아지구) 고랭지밭 GIS 구축 연구(150백만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200백만원)	행복도시 LID 기법 <sup>1)</sup> 설계 및 홍보 방안 수립 용역(II)(146백만원)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47백만원)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마련을 위한 포럼 운영(634백만원)
계	350백만원	977백만원 (추가 소요재원은 자체전용을 통해 확보)

주: 1)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을 직접 유출하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함  
자료: 환경부

국내 여비의 경우에도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집행 점검 및 현장확인(1,00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집행실태 점검(800만원)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장점검 뿐 아니라 부처 기본경비에서 사용하였어야 할 학회, 직원 교육, 회의, 행사 참여 등에도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다.

[부적절한 여비 집행 사례 예시]

일시	내용(장소)	집행액(원)
10.21	행사 참여(천안)	17,220
11.6~7	액션러닝과정(인천)	158,190
11.7~8	행정법 실무과정 참석(서울)	111,000
11.8	청렴의식 향상 및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참석(서울)	77,000
11.14	승진심사위원회 및 한강상하류 화합의날 기념행사(서울외1건)	44,6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포럼 운영,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5월 ‘물관리일원화’ 정부방침이 발표되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해 통합물관리 관련 사업에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행은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sup>3)</sup>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가. 현황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sup>1)</sup>은 음식물 쓰레기,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대국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재사용 등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7년도 예산 22억 2,300만원 중 2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8,700만원을 이월, 2,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원순환 기반구축	2,223	2,223	0	0	2,223	2,115	87	21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특정목적 외 위해 편성된 일반사업 예산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본경비 성격의 직원교육비(국외현장학습 교육비)를 집행하였다.

환경부는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 예산으로 환경부 직원의 국방대 안보과정 국외현장학습 교육비 4,516,500원을 지출(일반수용비)하였다. 환경부는 교육담당 부서(운영지원과)의 훈련비 예산 부족으로 교육생의 파견 전 소속부서에서 교육비를 지급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집행하였다고 한다.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431-306

[국방대 안보과정 국외현장학습 교육비 집행내역]

세부사업명 (비목)	내용	수령인명	지급액	요청부서
자원순환 기반구축 (일반수용비(210-01))	2017년 국방대 안보과정 국외현장학습 교육비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4,516,500원	환경부 운영지원과

자료: 환경부

그러나 자원순환 기반구축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생활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재사용 등을 목적으로 대국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환경부 직원의 국외현장학습 교육비를 집행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는 “기본경비”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비 부족 시 “기본경비” 간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특정목적에 위해 편성된 사업비 예산을 직원교육 등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환경감시대 운영 사업<sup>1)</sup>은 주민 식수원인 호소 보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각종 오염원 특별지도·점검 등을 위한 사업이다. 7개 지방청(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새만금청)에서 집행한다.

2017년도 예산액은 17억 7,600만원으로 16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이월, 1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환경감시대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환경감시대 운영	1,776	1,776	0	0	1,776	1,620	30	126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연례적으로 감시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를 조정하여 선진국 연수에 필요한 경비(국외여비)에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감시대 운영 사업에서 매년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국내여비 5억원 중 4,500만원을 국외여비로 조정하였고, 2016년에는 1,800만원, 2015년에는 7,300만원을 조정하였다.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7136-302

[환경감시대 운영 사업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5	국내여비	525	525	0	△83	442	432	0	11
	국외여비	4	4	0	<b>73</b>	77	77	0	0
2016	국내여비	519	519	0	△18	502	493	0	9
	국외여비	10	10	0	<b>18</b>	28	28	0	0
2017	국내여비	500	500	0	△45	455	399	0	56
	국외여비	4	4	0	<b>45</b>	49	48	0	1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조정된 국외여비로 선진국의 환경감시대도 조사 및 발전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10일 내외의 선진국 연수에 활용하였다.

[최근 3년 국외출장 내용]

구분	2015	2016	2017
방문국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등)
방문목적	- 환경오염행위 등 단 속체계 등 환경감시 기법 발전방안 모색 - 선진국의 공공하수 처리시설, 소각장 관리 및 감시제도 조사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분야의 정책수립 및 관리현황에 대한 선 진제도 조사 - 외국의 환경감시제도 및 단속·수사체계 환경기 법 발전방안 모색	- 선진제도 조사를 통해 지도·점검담당자의 전문 성 확보를 통한 직무역 량 제고 - 외국의 환경감시제도 및 단속·수사체계 등 환경 오염물질 관리 발전방안 모색
연수기간	8.24~9.1(7박 9일)	6.26~7.6(8박 10일)	11.11~11.19(7박 9일)
연수인원 (참여자 소속)	17명 (환경부, 지방청, 지자체)	20명 (환경부, 지방청, 지자체)	18명 (환경부, 지방청, 지자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환경부

그러나 연수제도가 필요하여 국외여비가 필요하다면 감사·감독·단속을 위한 국내여비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부터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내여비가 검찰 합동단속, 특별점검, 민관 합동단속 등에 필요한 사업비라는 점에서 국내여비의 전용감액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연례적으로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가. 현황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 사업(R&D)<sup>1)</sup>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고유 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안전·생태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물리적 제거기술 등 5개 과제 연구개발을 내용으로 2017년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0억원으로 R&D 관리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전액 교부되었고, 실집행액은 10억 4,800만원으로 9억 5,100만원이 이월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R&D)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R&D)	2,000	2,000	0	0	2,000	2,000 (1,048)	0 (951)	0 (1)
(일반연구비)	(1,900)	(1,900)	(0)	(0)	(1,900)	(950)	(950)	(0)
(인건비, 운영비 등)	(100)	(100)	(0)	(0)	(100)	(98)	(1)	(1)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사업시행 첫째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연구과제 협약이 연도말 또는 차년도에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연례적으로 사업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산액 20억원 중 19억원은 과제연구비이고, 1억원은 R&D관리기관인 한국환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834-305

경산산업기술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과제연구비 19억 원 중 9억 5,000만원(3개 과제)만 협약이 완료되고, 9억 5,000만원은 2018년도에 재추진하기 위하여 이월되었다. 또한 협약된 3개 과제의 연구기간 시작일이 12월 26일로 연도말에 시작하고 있다.

[과제협약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2017년 연구비
행동생태를 이용한 외래생물 개체군 감소 기술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12-26 ~ 2020-12-31	250
토양 seedbank resilience 관리 기반 생태계교란식물 물리적 제거 기술 개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12-26 ~ 2020-12-31	400
생태계교란 블루길, 큰입배스 제거 기술개발	화학(연)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2017-12-26 ~ 2020-12-31	300
합 계			950
미협약과제			950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사업시작 첫해에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해당 과제들이 종료될때까지 매년 과제협약 기간이 연도말 또는 차년도에 시작함에 따라 매년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말 또는 차년도 과제 협약은 결산 시점에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국회에서 사업성과 등을 검증할 수 없고, 매년 사업비가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부처에서 사업시행기관에 사업비 출연 시 사업시행기관에서 보유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산 운용행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sup>2)</sup>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편성된 예산이 연도말에 집행되거나 차년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sup>3)</sup>

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연구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기간을 단계적으로 앞당기거나, 2018년도에 협약된 과제에 대해서는 한 해 정도 사업비를 축소 편성하여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가. 현황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sup>1)</sup>은 노후된 상수관망,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돗물 누수 저감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를 재원으로 하며, 자치단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70%<sup>2)</sup>)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의 2017년 예산액 512억 600만원 이 중 505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다.<sup>3)</sup>

[2017회계연도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후상수도 정비	51,206	51,206	0	0	51,206	50,561	0	645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최종 사업수행기관(2차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나, 자치단체는 다시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사업을 재위탁한 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은 영월군<sup>4)</sup>을 제외하고, 21개 자치단체의 실집행 실적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 1) 코드명: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1131-303
- 2) 국고보조율은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2016.9월, 기획재정부)에서 수립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외부전문가(회계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라 50%, 60%, 70%로 결정된다.
- 3) 자치단체 20개소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2개소의 노후 정수장 정비를 위한 예산이다.

은 모두 100%로 나타난다. 따라서 동 사업의 실집행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실집행률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 실적을 보면, 21개 자치단체 중 14개 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으로 나타났다. 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한국환경공단이 공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sup>5)</sup>

[2017회계연도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실집행률 70% 이하 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	시군구	실집행기관 (위탁기관)	총 사업비	2017년 예산(A)	환경부 집행액	지자체 집행액	위탁기관 집행액 (B)	실 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실집행률70%이하)
[상수관망]									
강원도	홍천군	한국 환경공단	39,800	3,256	3,256	3,256	970	29.8	기술제한 적격자 선정 지연
경상남도	창녕군	한국 환경공단	35,172	2,463	2,463	2,463	1,437	58.3	기술제한 적격자 선정 지연
경상남도	하동군	한국 환경공단	29,187	2,189	2,189	2,189	1,051	48.0	실시설계 수행중으로 시설공사 착공 지연
경상남도	산청군	한국 환경공단	21,147	1,586	1,586	1,586	1,090	68.7	실시설계 수행중으로 시설공사 착공 지연
경상북도	의성군	한국 수자원공사	33,459	3,513	3,513	3,513	1,718	48.9	실시설계 수행중으로 시설공사 착공 지연
경상북도	성주군	한국 환경공단	30,648	2,758	2,758	2,758	1,314	47.6	실시설계 수행중으로 시설공사 착공 지연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 환경공단	38,558	4,049	4,049	4,049	1,140	28.2	실시설계 수행중으로 시설공사 착공 지연
전라남도	고흥군	한국 환경공단	38,827	2,721	2,721	2,621	1,196	44.0	기술제한 적격자 선정 지연
전라남도	구례군	한국 환경공단	19,439	1,458	1,458	1,458	35	2.4	실시설계 수행중으로 시설공사 착공 지연

4) 불용액의 영월군의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노후정수장 개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데, 영월군의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어 불용되었다.

5) 환경공단은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단위: 백만원, %)

시도	시군구	실집행기관 (위탁기관)	총 사업비	2017년 예산(A)	환경부 집행액	지자체 집행액	위탁기관 집행액 (B)	실 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실집행률70%이하)
전라남도	영광군	한국 환경공단	43,128	3,881	3,881	3,881	1,222	31.5	실시실계 수행중으로 시설공사 착공 지연
전라북도	무주군	한국 환경공단	17,801	1,602	1,602	1,602	1,042	65.0	실시실계 수행중으로 시설공사 착공 지연
전라북도	부안군	한국 환경공단	41,601	3,864	3,864	3,864	1,418	36.7	기술제안 적격자 선정 지연
충청북도	보은군	한국 환경공단	19,944	1,795	1,795	1,795	589	32.8	실시실계 수행중으로 시설공사 착공 지연
[정수장]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 수자원공사	42,720	2,966	2,966	2,966	865	29.2	설계 지연
합 계				51,206	50,561	50,461	27,323	53.4	

주: 사업기간은 상수관망은 2017~2021년이고, 정수장은 2017~2019년임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사업은 다년도 사업이므로 사업시행 첫해부터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순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어 향후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이 양호하더라도 2차 실집행기관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예산의 편성이나 교부 시 2차 실집행기관의 실적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각종 부담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비롯하여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 총량초과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등 기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2017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 6,229억원으로 이중 7,737억원이 수납되고 8,063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429억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법정부담금 계	816,910	816,910	816,910	1,622,878	773,690	806,296	42,892	47.7
· 환경개선부담금	<b>535,009</b>	<b>535,009</b>	<b>535,009</b>	<b>1,181,247</b>	<b>464,247</b>	<b>674,108</b>	<b>42,892</b>	<b>39.3</b>
· 대기배출부과금	8,800	8,800	8,800	10,777	8,300	2,477	0	77.0
· 수질배출부과금	<b>8,527</b>	<b>8,527</b>	<b>8,527</b>	<b>66,220</b>	<b>8,305</b>	<b>57,913</b>	<b>0</b>	<b>12.5</b>
· 재활용부과금	11,121	11,121	11,121	35,415	17,588	17,827	0	49.7
· 폐기물부담금	168,828	168,828	168,828	195,195	191,374	3,820	0	98.0
· 수질개선부담금	12,146	12,146	21,554	21,554	15,257	6,297	0	70.8
· 생태계보전협력금	66,406	66,406	66,406	96,646	61,412	35,234	0	63.5
· 기타부담금	6,073	6,073	6,073	15,825	7,206	8,618	0	45.5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다.

최근 4년 동안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47.7~49.9%로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정부담금 중 규모가 가장 큰 환경개선부담금의 수납률이 39.3~47.0%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수납률은 2014년 46.5%, 2015년 47.0%로 점차 개선되고 있었으나 2016년 41.4%, 2017년 39.3%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납률이 좋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2015.7월부터 폐지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수납률이 감소하게 되었다.

[최근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4	729,276	729,276	1,504,815	684,895	46.5	789,109	30,811
2015	626,084	626,084	1,504,064	692,022	47.0	780,769	31,273
2016	523,214	523,214	1,276,917	506,248	41.4	717,207	53,462
2017	535,009	535,009	1,179,942	464,247	39.3	673,329	42,366

자료: 환경부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도 수납률이 11.0~16.6%로 저조한데, 환경부는 2016년 이전 과년도 발생 배출부과금 징수율이 저조(5.6%, 33억원/593억원)하여 수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도 발생 수질배출부과금도 징수율이 73.5%(50억원/68억원)로 높은 편으로 보기 어렵다.

1) 2015년기준 수납률 79.0%

[최근 4년 수질배출부과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2014	7,557	7,557	7,557	53,368	8,854	16.6	44,514	2,000
2015	11,629	11,629	11,629	76,877	8,492	11.0	68,385	8,300
2016	10,988	10,988	10,988	69,774	10,301	14.8	59,455	100
2017	8,527	8,527	8,527	66,219	8,305	12.5	57,914	0

자료: 환경부

법정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2017년 기준 3조 3,674억원)을 받아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고, 또한 장기 미수납액이 지속되는 것은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sup>1)</sup>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한-중 공동 협력사업으로, 한국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중국내 대기환경설비에 적용하여 중국 발생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국내 참여 후보기업(기술)을 우선 선정하고 현지 홍보 및 협상을 통해 한-중 기업간 계약이 체결될 경우 평가를 통해 실제 사업 수행기관으로 확정하고 총 계약금의 20%(최대 40억원)<sup>2)</sup>를 정부가 지원한다.

2017년도 예산액은 100억원으로 환경부는 사업시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액 지급하였다.

[2017회계연도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10,000	10,000	0	0	10,000	10,000	0	0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첫째, 수탁기관과 1년을 초과하여 계약함에 따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1년을 초과하여 수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2015.2.26.~2017.7.31., 2016년에는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명: 환경개선특별회계 1634-306

2) 한국정부 20%, 중국정부 20%, 중국업체 60% 부담

2016.3.18.~2017.11.30., 2017년에는 2017.3.2.~2018.6.30.로 1년 6개월 정도를 계약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년도 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방법
2015	10,000	10,000	10,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2.26~2017.7.31	수의계약
2016	10,000	10,000	10,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6.3.18~2017.11.30	수의계약
2017	10,000	10,000	10,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7.3.2~2018.6.30	수의계약

자료: 환경부

또한 1년을 초과한 계약으로 지출원인행위도 없고,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근거로 사업시행기관의 이월을 승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5~2017년 동안 매년 98억원, 96억원, 83억원 등 예산액의 대부분이 이월 되고, 2017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96억원 중 76억원이 불용되기도 하였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5	10,000	10,000	0	0	0	10,000	334	9,666	0
2016	10,000	10,000	9,666	0	0	19,666	10,045	9,621	0
2017	10,000	10,000	<b>9,621</b>	0	0	19,621	3,643	8,334	<b>7,644</b>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국내 참여 후보기업(기술) 선정부터 해당 기업(기술)이 중국 현지기업에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사업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년도 회계제도를 택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환경부는 당해연도 내 예산을 집행하고 연례적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간 5건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계약 건이 총 8건이고, 이 중 3건은 취소되는 등 성과가 저조하다.

동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2015년에는 12월에 3건(150억원 규모, 정부지원금 3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국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2016년에는 5건 65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2018년 5월과 11월에 종료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계약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2017년 실증사업 실시 현황]

연도	기업명	발주처(지역)	프로젝트 규모	비 고
2015	가	민원강철	5억원	중국측 요청으로 계약 해지
	나	유방특강	137억원	
	다	태산강철	8억원	
	소 계			
2016	라	석가장강철(하북)	28억원	'17.7월 종료
	마 <sup>1)</sup>	대동탄광(산서)	190억원 (4.65억원)	'17.7월 종료
	바	경공건설(산서)	109억원	'17.4월 종료
	사	보덕화력(산서)	131억원	'18.5월 종료 예정
	아	초매그룹(산서)	192억원	'18.11월 종료 예정
	소 계			650억원
2017	계약실적 없음			

주: 1) 당초 중국 발주처와 190억원 규모 계약 체결했으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주처 요청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4.65억원)하여 사업 완료

자료: 환경부

사업의 특성상 대외적 여건이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 변화로 성과가 저조한 측면은 있으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적에 대한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간의 협력 강화와 함께 사업수행자 측면에서 사업추진방식 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sup>1)</sup>은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한 포항 지역 공업용수도 33.3km 구간에 대해 관로 개량(16.6km) 및 복선화(16.7km)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총사업비 646억원의 30%인 194억원을 국비로 출자하여 시행한다.

정부는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1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sup>2)</sup>

[2017회계연도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	추경	전년 이월	예산 현액(A)	집행 (B)	이월	불용	집행률 (B/A)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1,000	1,000	0	1,000	1,000	0	0	100.0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첫째,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상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7회계연도 이 사업의 예산은 설계비 6억 7,900만원, 보상비 2억 8,700만원 및 관리비 3,400만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정부는 이를 전액 한국수자원공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 중 보상비로 계획된 2억 8,700만원은 실집행 단계에서 전액 설계비로 집행되었다.<sup>3)</sup>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788-4623)

1) 코드명: 일반회계 5031-313

2) 이 사업은 2018년 6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2017회계연도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집행하였다.

[2017년도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비고
보상비	287	-
설계비	679	기본 및 실시설계비
관리비	34	(공사비+설계비) × 5%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당초 2017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하기 위하여 보상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도권 노선과 관련한 주민 민원 발생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보상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1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여 4월 19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지시서상 과업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여 2017년 10월 18일 설계 완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설계용역 완료 후에도 ① 용역결과 검토 및 완수조치, ② 보상계획 통지 등 후속조치 기간 소요에 따라 당초부터 2017년 내 토지 취득 및 보상비 집행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2016년 4월 체결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서 연내 보상비 집행이 어려움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sup>4)</sup>에서도 용지보상비는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반영하되, '17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고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향후에는 건설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실집행 단계에서의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현실성 있는 사업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지연중인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가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환경부에 따르면, 설계비 중 국비부담분은 당초 계획된 6억 7,900만원으로 모두 충당가능하였으며, 보상비로 계획된 2억 8,700만원은 설계비의 수자원공사 부담분을 대신 집행한 것으로서 2018년에 동일액의 국비 부담분을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충당함으로써 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4)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24.

정부가 동 사업에서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한 것은 당초부터 다소 무리하게 설정된 사업기간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당초 2016~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관련 급수지역의 용수공급 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설계용역 과업기간 18개월과 시설공사 과업기간 900일만으로도 거의 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타 사업절차를 고려한다면 2016~2019년(4년)이라는 사업기간은 애초부터 다소 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의 정확한 설정은 총사업비 등 재정부담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정책실행도 확보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총사업비 관리지침”<sup>5)</sup>도 사업기간 설정 시 실제 소요기간을 기초로 하고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계약 등 사업단계마다 총사업비와 함께 사업기간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향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기간을 현실성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사업은 다소 무리한 사업기간 설정 외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동 사업은 2018년 4월 13일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하여 6월 이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공고문상 공사기간이 착공일부터 900일임을 고려하면 최소한 2020년 하반기 이후 완공이 예상되어 당초 사업기간 대비 1년 이상의 지연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추가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5)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조(사업기간의 관리)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구축 완료 후 5년간의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 가. 현 황

국가하천유지보수<sup>1)</sup> 사업은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홍수 및 가뭄 등 이상기후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하여 16개 다기능보, 제방, 저수로, 홍수조절지, 친수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와 「다기능보/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 위수탁계약」에 의거하여 아라천과 다기능보 유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집행된 사업비는 376억 3,000만원이다.<sup>2)</sup>

[2017년회계연도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하천유지보수	141,749	141,749	0	0	141,749	139,542	1,212	955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의 2017년 예산 총 376억 3,000만원 중 다기능보 유지관리사업비는 304억 3,000만원이며, 아라천 유지관리보수사업비는 72억원이다.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일반회계 5331-308

2) 동 사업은 2018년 6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다.

[연도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중 한국수자원공사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다기능보유지관리	18,688	25,284	29,155	30,473	31,061	30,430
아라천유지관리	3,750	7,503	6,625	7,379	7,530	7,200
합계	22,438	32,787	35,780	37,852	38,591	37,63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 나. 분석의견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와의 위수탁계약에만 의존하면서 자체수익사업을 개발하지 못하는 모회사 의존형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의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에 포함되는 다기능보와 아라천 유지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후, 일부를 100% 출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에 재위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워터웨이플러스에 재위탁하는 사업은 아라천 유지관리 중 일부와 다기능보에 설치된 강문화관 운영비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와 「다기능보/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제6조3)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워터웨이플러스에 재위탁하고 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중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액 및 재위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한국수자원공사 직접 수행	워터웨이플러스 재위탁액	국토교통부 위탁액 합계	비고
다기능보 유지관리비	27,130	3,300	30,430	강문화관 운영
아라천 유지관리비	4,316	2,884	7,200	하천시설 관리
위탁 총계	31,446	6,184	37,630	

주: 2017년 기준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 3) 「다기능보/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제6조(사업의 집행)

- ⑤ “K-water”는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도급 시행할 수 있으며, “K-water”는 수탁 받은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11년 4월에 설립된 워터웨이플러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을 위탁받거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재위탁받는 대행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선착장 편의시설 임대, 서해5도복합센터 운영 등의 자체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워터웨이플러스가 2017년에 인식한 대행사업수수료수익은 82억 8,200만원으로 총매출액의 84.1%를 차지하며, 2016년에도 86억 1,600만원으로 총매출액의 91.8%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워터웨이플러스의 외부감사인인 2017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중 강조사항<sup>4)</sup>에서 매출액 대부분을 지배회사(지분율 100%)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의존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워터웨이플러스 매출 구성]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행사업수수료수익(a)	8,529	8,512	8,663	8,616	8,282
자체사업매출	433	591	80	773	1,563
매출액 합계(b)	8,962	9,103	9,471	9,389	9,845
모회사 의존도(a/b)	95.2	93.5	91.5	91.8	84.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의 대행사업수수료수익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위탁한 사업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하천시설유지관리업무(강문화사업 등)를 재위탁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합계액 82억 8,200만원은 총매출액 98억 4,500만원의 84.1%를 차지하여 워터웨이플러스의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다.

4)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을 말함.

[위터웨이플러스 매출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마리나운영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	995	916	920	918	915
관광레저활성화		1,271	1,289	1,348	1,528	1,285
하천시설유지관리 (청소용역)		-	104	28	-	-
하천시설유지관리 (항만관리)		159	500	488	461	461
하천시설유지관리 (아라천 관리)	국토부 재위탁	2,897	2,669	2,879	2,722	2,621
강문화관 운영		3,048	3,034	3,000	2,987	3,000
대행사업수익 소계(a)		8,529	8,512	8,663	8,616	8,282
수상레저	자체사업	44	36	100	162	82
자전거대여		164	141	188	189	253
관광문화사업		114	247	213	161	453
편의시설 운영 (서해5도복합센터, 선착장 편의시설)		111	160	304	230	641
공공교육프로그램		-	7	3	31	134
자체사업 소계(b)		433	591	808	773	1,563
총 매출액(c=a+b)		8,962	9,103	9,471	9,389	9,845
대행사업수익 비중(a/c)		95.2	93.5	91.5	91.8	84.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위터웨이플러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선착장 편의 시설(편의점 4곳)을 위터웨이플러스에 임대하였지만, 위터웨이플러스는 이를 전대하여 임대료수입만 발생시키고 있다.

[선착장 편의시설 관련 임대료 및 임차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임대료(수익)	109	160	125	111	111
임차료(비용)	87	91	94	93	93
이익	22	69	31	18	18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과 국토교통부 재위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워터웨이플러스의 최근 5년 동안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매년 소폭 확대되고는 있지만, 원가를 충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5월에 개장한 서해5도복합센터운영을 통하여 자체사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증가(2016년 773백만원→ 2017년 1,563백만원)하였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은 미미하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수탁계약에만 의존하면서 자체수익사업을 개발하지 못하는 모회사 의존형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는 자체수익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워터웨이플러스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8,962	9,103	9,471	9,389	<b>9,845</b>
매출원가	7,934	8,052	8,467	8,449	8,810
영업이익	158	76	(51)	13	14
당기순이익	155	103	41	46	7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 가. 현 황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sup>1)</sup>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방수로를 뱃길로 활용하여 물류 및 레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한 경인아라뱃길사업 중 국가귀속 토지보상비 등을 출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의 마지막 연도인 2017년에는 433억원 전액을 집행하였다.<sup>2)</sup>

[2017회계연도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b)	불용액	이월률 (b/a)
	본예산	추경					
경인아라뱃길 사업지원	43,300	43,300	43,300	43,300	0	0	0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사업에 총 2조 6,75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비는 인천터미널 및 김포고촌 물류단지 조성비 6,920억원, 항만조성비 1조 3,520억원, 그리고 총 18km에 이르는 주운수로 건설비 6,31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일반회계 5332-303

2) 동 사업은 2018년 6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비	주요 내용
물류단지	6,920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15만㎡, 김포고촌 물류단지 89.4만㎡의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조성비
주운수로	6,319	인천시 서구 오류동(서해) ~ 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까지 연장 18km(방수로 14.2km 포함) 구간 내 홍수소통 및 선박운항을 위한 주운수로 및 부대시설 조성비
항만	13,520	인천터미널(144만㎡, 부두 10선석, 갑문 2기), 김포터미널(97만㎡, 부두 10선석, 갑문 1기) 접안시설 등 항만 조성비
합계	26,759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사업 총투자비 2조 6,759억원 중 국가귀속 토지보상비 4,603억원을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정부로부터 출자방식으로 지급 받았다.

[연도별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정부 출자 현황]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900	900	900	800	670	433	4,603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나. 분석의견**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중 2017년 말 현재 잔여투자비 1조 5,043억원(장부가액 기준)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자산가액을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투자비 2조 6,759억원이 소요된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하여 물류단지 분양, 정부 출자 및 부두·시설 임대, 마리나 운영, 항만유휴부지 신규임대, 항만시설관리권 매각 등을 통하여 총 3조 214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류단지를 분양하여 1조 1,396억원, 토지보상비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4,603억원을 회수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매각, 부두·시설임대 등 40년간 항만수익을 통하여 1조 4,215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17년까지 회수한 금액은 물류단지 분양을 통한 1조 1,037억원, 국가귀속 토지 등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정부출자액 4,603억원 외에 항만을 활용한 수익(항만시설관리권 매각, 부두시설임대, 마리나 운영) 1,104억원 등 1조 6,744억원이다.

물류단지 분양과 정부출자를 통한 보상비 지원을 통한 회수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항만수익을 통한 회수는 40년간 운영이 전제된 계획으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는 항만수익을 통하여 1조 4,215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2017년 말까지 실적은 7.8%인 1,104억원에 그쳤다. 특히, 항만시설관리권 매각실적이 당초 계획치 9,776억원에 크게 밀도는 693억원에 그쳤고, 경인항<sup>3)</sup> 부두시설임대 등의 항만운영에서 3,876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9.4%인 363억원에 그쳤다.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회수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물류 단지 분양	보상비 등 국고지원 (출자)	항만수익				주운 수로 이용료	합계
			항만시설 관리권 매각	항만운영 (부두시설 임대)	마리나 운영	소계		
회수 계획(a)	11,396	4,603	9,776	3,876	563	14,215	0	30,214
실적 (b)	11,037	4,603	693	363	48	1,104	0	16,744
차액 (b-a)	△359	0	△9,092	△3,513	△515	△13,111	0	△13,470

주: 주운수로 이용료는 관련법 상 징수근거 미비로 미징수, 회수계획은 개통이후(12.5월) 40년간 운영을 전제로 수립, 총사업비 확정시 변경 가능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3) 경인항: 경인아라뱃길에 속한 항구로 인천터미널의 항구와 김포터미널의 항구 두 개로 구성됨.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투자비 2조 6,759억원 중 1조 6,744억원을 회수하고 잔여투자액 1조 1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투자비 및 2017년 말까지 회수액 현황]

(단위: 억원)

한국수자원공사 투자비	회수액				잔여 투자액
	물류단지 분양	보상비 등 국고지원	항만수익	합계	
26,759	11,037	4,603	1,104	16,744	10,015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한 투자비 중 물류단지를 제외한 금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항만시설관리권, 주운수로관리권, 마리나시설관리권,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2017년 말 현재 취득원가는 1조 7,344억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 2,301억원을 차감한 1조 5,043억원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있다.

[경인항 항만시설관리권(무형자산) 현황]

(단위: 억원)

	항만시설 관리권	마리나시설 관리권	주운수로 관리권	건설중인자산 (운하)	2017년 말
취득원가	9,965	100	6,592	687	17,344
상각누계액	△1,050	△7	△1,244	0	△2,301
잔액	8,915	93	5,348	687	15,043

주: 물류단지 제외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잔여투자액은 항만시설관리권 매각, 부두시설임대, 마리나 운영 등 항만을 활용하여 회수할 계획이다.

경인항은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터미널은 컨테이너 부두 등 3개 부두를 설치하여 총 10선석<sup>4)</sup>을 접안할 수 있고, 김포터미널은 3개 부두를 설치하여 10선석을 접안할 수 있다.

4) 선석: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말함.

[경인항 항만시설 현황]

(단위: 선석)

	접안시설		여객터미널 시설	마리나시설
인천 터미널	컨테이너부두(3), 잡화부두(5), 여객부두(2)	10	연면적 3,562m <sup>2</sup> / 건축면적 2,425m <sup>2</sup> (지상2층)	-
김포 터미널	컨테이너부두(2), 잡화부두(3), 여객부두(5)	10	연면적 5,630m <sup>2</sup> / 건축면적3,039m <sup>2</sup> (지하1층/지상3층)	마리나 계류시설 : 136선석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에 귀속한 경인항의 물동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항만 물동량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 항만 운영 이후 당초 계획치 대비 실적치가 7.4~10.6%에 불과하다. 이는 경인항이 거의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인 아라뱃길 물동량 당초 KDI 추정치 및 실적]

(단위: 천톤,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KDI 추정치	4,097	7,007	7,422	7,867	8,343	8,856	43,592
실적	310	537	551	832	828	728	3,786
실적/추정치	7.6	7.7	7.4	10.6	9.9	8.2	8.7

주: 2012년도는 일할계산하여 산정함(5.25~12.3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물동량을 컨테이너와 일반화물로 구분한 결과, 컨테이너화물의 실적치는 예측치 대비 5.6~9.9%이며, 일반화물의 실적치는 예측치 대비 4.7~16.1% 수준이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반화물 물동량은 2013년 이후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동량 예측치 대비 실적치는 10%를 넘지 못하는 등 저조하다.

[경인 아라뱃길 연도별 화물량 예측 및 실적 현황]

(단위: 천톤,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측	실적	비중	예측	실적	비중	예측	실적	비중	예측	실적	비중	예측	실적	비중
컨테이너	4,924	440	8.9	5,305	364	6.9	5,716	565	9.9	6,157	557	9.0	6,634	371	5.6
일반 화물	2,083	97	4.7	2,117	187	8.8	2,151	267	12.4	2,186	271	12.4	2,222	357	16.1
합 계	7,007	537	7.7	7,422	551	7.4	7,867	832	10.6	8,343	828	9.9	8,856	728	8.2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항만물동량 실적 저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회수와 부두시설의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잔여투자비의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경인항과 같이 사용도가 낮은 항만을 건설한 후 항만사용도가 높은 항만의 시설사용료로 이를 충당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으로서 항만공사(경인항 건설)를 수행하고 설치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서해갑문, 김포지구, 인천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누어 설정 중이다. 이렇게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항 항만시설관리권을 3개 지구로 분리한 이유는 인천시의 시설물(경관도로,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등) 이관 지연 및 선행 인허가(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처리 지연으로 신속한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서이다.

3개 지구 중 서해갑문과 김포지구 등 2개 지구는 2016년 2월과 2017년 7월에 각각 항만시설관리권 규모를 확정·승인받았지만, 규모가 가장 큰 인천지구의 항만시설관리권 규모는 2018년 5월 현재 확정되지 않고 있다. 향후 경인항 항만시설관리권 규모가 확정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항만시설관리권(자산)을 인식하고 해양수산

부는 동액을 사회기반시설 중 항만자산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항만사용수익권이라는 차감항목으로 인식할 예정이다.

[경인항 항만시설관리권 현황]

(단위: 억원)

	사업 기간	준공 시기	총사업비		주요시설(국가귀속)
			신청	확정·승인	
서해 갯문	'09.06 ~ '14.03	'15.12	2,088	1,877 (16.02)	서해갯문
김포 지구	'09.06 ~ '13.03	'16.11	4,822	4,457 (17.07)	부두 및 호안, 한강갯문, 마리나 등(도로 등 지자체 이관시설 포함)
인천 지구	'09.06 ~ '15.06	'15.6 신청	12,626	'18.12월 예정	부두 및 호안, 주운수로 등 (도로 등 지자체 이관시설 포함)
합 계			19,536		

주: 인천지구까지 승인 후 자산규모는 확정될 예정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3개 지구 중 서해갯문과 김포지구의 사업비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 규모를 확정하고 2016년에 최초로 매각을 개시하여 2016년 288억원, 2017년 405억 등 총 693억원을 매각하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매수한 사업자는 항만법에 따라 타 국가관리항(항만법에 따른 4개 항만공사 운영 국가항 제외)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항만시설관리권을 매수한 사업자는 타 국가항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시설관리권과 상계할 수 있어서, 매수자의 입장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은 일종의 항만시설사용료 선불금액인 셈이다.

이 경우, 경인항에서 발생한 항만시설 투자비를 타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인항 투자비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용도가 낮은 항만을 건설한 후 항만사용도가 높은 항만의 시설 사용료로 이를 충당하는 것은 동액만큼 건설비 낭비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에 귀속한 경인항의 물동량이

많지 않아 항만시설사용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경우, 경인항 건설에 소요된 자금을 경인항을 이용하는 선주 및 화주들에게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하지 못하고, 타 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로 충당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인항을 통한 항만시설사용료수익은 매우 적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인항 관련 투자비의 회수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항 항만시설관리권을 제3자에게 순조롭게 매각하고, 제3자는 이를 타 항만시설사용료 지불에 활용하게 될 경우라도, 경인항은 자체적으로 수익(항만시설사용료)을 거의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어 항만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인항과 같이 사용도가 낮은 항만을 건설한 후 항만사용도가 높은 항만의 시설사용료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로 수력발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외사업에 지분참여 형태로 투자하고 있으며, 2017년 말 현재 투자금액은 3개 종속기업<sup>1)</sup> 2,212억 2,300만원과 2개 관계기업<sup>2)</sup>에 대한 1,008억 4,500만원 등 총 3,220억 6,800만원이다.<sup>3)</sup>

[2017년 말 현재 보유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지분투자회사 현황]

(단위: 백만원)

기업명		소재지	주식 취득연도	투자금액 (취득가액)	주요영업활동
종속 기업	KDS Hydro Pte. Ltd.	싱가 포르	2009년	103,921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사업 등
	K-Water Thailand Co., Ltd.	태국	2013년	28	태국 물관리 사업
	JSC Nenskra Hydro(주)	조지아	2015년	117,274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 사업
	소계			221,223	
관계 기업	KWPP Holdings Co.	필리핀	2013년	0.3	필리핀 앙갓담 수력발전 사업
	Angat Hydropower Co.	필리핀	2006년	100,845	필리핀 앙갓담 수력발전 사업
	소계			100,845	
합계				322,068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 1) 일반기업회계기준 상의 종속기업이란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며, 지배기업이 직접적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 2) 일반기업회계기준 상의 관계기업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한다.
- 3) 2018년 6월 8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수자원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관이 변경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지분투자액은 2013년 598억 7,800만원이었지만, 이후 신규 해외사업투자처 발굴 및 기존 투자처에 대한 추가출자 등으로 인하여 2017년 말에는 2013년 대비 4.4배 증가한 3,2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 지분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a)	2014	2015	2016	2017 (b)	증감 (b-a)
종속기업	58,211	62,256	119,225	170,035	221,223	163,012
관계기업	1,667	62,256	119,225	100,845	100,845	99,178
해외사업 지분투자액 합계	59,878	124,513	238,449	270,880	322,068	262,190

주: 취득원가 기준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 동안의 지분투자액 증가액은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사업 추가 출자 457억 3,800만원, 2015년의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 사업 신규 출자 1,172억 7,400만원과 필리핀 양갓담 수력발전 사업 신규출자 1,008억 4,500만원 등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에 중국 강소성 사양현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강소심수수무(유)에 16억원을 투자하였지만, 현지 투자여건 변화로 인하여 2015년 7월 9일에 보유 지분을 매각한 사례도 있다.

[2013년 말 대비 2017년 말 해외사업 지분투자액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기업명		2013년 말	2017년 말	증감액
종속 기업	KDS Hydro Pte. Ltd.	58,183	103,921	45,738
	K-Water Thailand Co., Ltd.	28	28	0
	JSC Nenskra Hydro(주)	0	117,274	117,274
	소계	58,211	221,223	163,012
관계 기업	KWPP Holdings Co.	0	0.3	0
	Angat Hydropower Co.	0	100,845	100,845
	강소심수수무(유)	1,667	0	△1,667
	소 계	1,667	100,845	99,178
합계		59,878	322,068	262,190

주: 취득원가 기준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해외투자를 가급적 지양하고, Angat 사업의 경우 PF 금융조건상 지분 매각이 가능한 2024년 이후에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분매각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분 40%<sup>4)</sup>를 투자하고 있는 Angat Hydropower Co.의 최근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2015년 지분법손실 84억 8,500만원, 2016년 지분법 손실 34억 2,800만원 및 부의 지분법 자본변동<sup>5)</sup> 18억 7,600만원, 2017년 지분법 손실 11억 3,900만원 및 부의 지분법 자본변동 104억 6,400만원 등 총 130억 5,200만원의 비용 및 123억 4,000만원의 부의 지분법 자본변동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기업투자지분 비용 및 자본변동]

(단위: 백만원)

해당 관계기업	2015	2016		2017		합 계
	지분법 손실	지분법 손실	자본 변동	지분법 손실	자본변동	
Angat Hydropower Co.	△8,485	△3,428	△1,876	△1,139	△10,464	△25,392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분법손실과 부의 지분법 자본변동이 발생한 Angat Hydropower Co.의 손익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2017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33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2015년과 2016년의 이상 기후로 인한 강우량 부족과 그에 따른 발전량 감소에 기인한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적은 강우량으로 인한 발전량의 감소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2017년에는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발전량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감소하였다. Angat

4)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에 Angat Hydropower Co.의 지분 99.99%를 223억 280만원에 취득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후 지분 59.99%를 452억 3687만원에 처분하여 지분처분이익 318억 5521만원을 인식하였다.

5) 폐소화로 표시된 Angat Hydropower Co.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환율 변동 효과는 당기순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다.

Hydropower Co.의 연도별 매출이 Angat댐 강우량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감이 발생하는데, 이상기후가 지속되어 강우량이 감소된다면 지분법손실의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정부와 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체결하지 않아 영업리스크를 줄이지 못하였다.<sup>6)</sup>

한편, 동 필리핀 Angat댐 수력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Angat Hydropower Co.는 2017년 말 현재 2,696억 600만원에 이르는 금융부채를 7%<sup>7)</sup>의 금리로 조달함에 따라 매년 132~207억원의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다. 즉,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에서 양(+)<sup>8)</sup>의 값이 발생할지라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낮다. 또한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이 BBB(적격) 등급이나, 국가신용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ngat Hydropower Co.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3,775	31,195	30,100	46,808
매출원가	4,830	29,199	28,370	25,277
영업이익	△1,055	1,996	1,730	21,531
금융비용	△2,960	△33,055	△13,201	△20,679
당기순이익	△1,782	△22,031	△11,471	△696
금융부채	481,800	515,774	317,962	269,606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필리핀 Angat댐 수력발전사업 지분투자는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기후에 따른 강우량의 감소로 인하여 2015년 및 2016년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114~220억원 시현함으로써 투자회사인 한국수자원공사에 134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6) 필리핀에서는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입찰 방식으로 전력이 거래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상 정부가 민간 발전소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다.

7) 15년의 만기 및 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전액 폐소화 차입임을 고려할 때 금리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에 2,000억원에 이르는 필리핀 불라칸(Bulacal) 상수도사업을 BOT방식<sup>8)</sup>으로 수주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총 14억원을 2017년에 투자하였으며 추후 추가적인 투자 계획은 없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해외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투자 중인 필리핀 Angat댐 수력발전사업의 투자지분은 PF 금융조건상 지분 매각이 가능한 2024년 이후에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분매각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의 현금흐름, 금융부채 및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사업의 2018년 이후의 추가투자분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계획하는 해외투자를 자제하여 적절한 규모의 해외사업 지분투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조지아의 수력발전관련 SPC인 JSC Nenskra Hydro(주)의 총사업비는 10억 8,260만불(1조 1,681억 2,500만원)이며, 2017년까지 투입된 자금은 총 1억 150만불(1,172억 7,400만원)이다. 2018년 이후 9억 8,110만불(1조 486억 500만원)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투자계획에 따라 기투자한 1,172억 7,400만원 외에 2018~2022년까지 추가적으로 1,979억 9,300만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JSC Nenskra Hydro(주) 투자개요 및 향후 투자계획]

(단위: 백만불, 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금액(2017년까지)		향후 투자금액(2018~2022년)	
		사업 전체 투자비	한국수자원공사 투자비	사업전체 투자비	한국수자원공사 투자비
외화	1,082.6	101.5	101.5	981.1	185.3
원화	1,168,125	117,274	117,274	1,048,305	197,993
재원조달: 자본금 30%(한국수자원공사 88%, 조지아정부 7%, EBRD 5%), 차입금 70%					

주: 2017년 12월 29일자 1달러당 매매기준율 1,068.50원을 적용함.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8) BOT 방식은 사업자가 건설 후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상하수도 사업, 수자원사업, 단지조성사업 등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2조 6,980억원인데, 주요 수익원이 되는 상하수도사업, 수자원사업의 건설 및 시설개·대체 등의 투자활동에 3조 6,135억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 등을 통한 재무활동에서 4,915억을 조달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현금흐름]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누계
영업활동 현금흐름	1,144,645	79,830	802,468	414,428	256,619	2,697,989
투자활동 현금흐름	△724,331	△829,077	△579,551	△865,415	△615,168	△3,613,541
재무활동 현금흐름	△262,403	179,982	△257,036	435,672	395,286	491,501
현금의 증감	157,911	△569,266	△34,119	△15,315	36,737	△424,05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 중 4대강 부채는 최근 5년 동안 5,321억원 감소하였지만 고유사업 부채는 4,58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유사업 부문 부채 증가액 4,580억원은 현금흐름 분석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재무활동으로 추가적으로 조달한 4,951억원과 유사한 규모이다.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요 사업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영업활동으로 충당하지 못하여 외부 차입, 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한국수자원공사 금융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a)	2014	2015	2016	2017(b)	증감액 (b-a)
4대강 부채	73,225	75,523	71,132	69,660	67,904	△5,321
수공 고유사업 부채	41,377	41,066	43,056	44,791	45,957	4,580
금융부채 합계	114,602	116,589	114,188	114,451	113,861	△74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사업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8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말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 사업은 2015년에 조지아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후에도 Nenskra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일부 대주단으로부터 차입금 조달 승인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사업 주요 사업계획 및 경과]

주요 경과 및 계획	이행/지연
2015. 8 양허계약(실시협약, 전력구매계약 체결)	이행
2017. 4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투자위원회 승인	
2017. 9 AIIB 이사회 승인(예정)	
2017. 9 자금조달 협약 완료	진행 중
2018. 3 본 공사 착공(예정)	진행 중
2021. 11 상업발전 시작(예정)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4.27.)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외투자개발형 인프라개발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고, 지역과 국가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 자금 조달처 확보 문제,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외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JSC Nenskra Hydro(주)의 지분 조정 등을 검토하여 추가 투자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sup>1)</sup>에 따라 2012~2104년 동안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는 2012년 12월에 지정된 부산에코델타시티, 2014년 1월에 지정된 나주 노안지구, 대전 갑천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총 4개 지구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sup>2)</sup>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4개 지구 중 대전 갑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를 개발 중이다.<sup>3)</sup>

한국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나주 노안<sup>4)</sup>, 부여 규암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5조 4,8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산에코델타시티에 5조 4,386억원, 나주 노안지구에 248억원, 부여 규암지구에 1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투자한 금액은 총 2조 6,018억원이며, 부산에코델타시티 2조 5,887억원, 나주 노안지구 59억원, 부여 규암지구<sup>5)</sup>에 72억원 등이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업시행자)
  -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2018년 6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수자원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 4) 나주 노안지구는 2014년 1월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2018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 5) 부여 규암지구는 2014년 1월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6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8년 5월 현재 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친수구역 조성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산에코델타시티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합계	
개발기간	2012~2018	2012~2020	2012~2018	-	
사업비	2017까지	2,588,714	5,933	7,187	2,601,834
	2018이후	2,849,886	18,902	10,643	2,879,431
총사업비	5,438,600	24,835	17,830	5,481,265	

주: 부산에코델타시티의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부여규암지구의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연장될 계획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친수구역 개발사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총사업비 5조 4,386억원 중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은 2조 2,600억원인데, 2017년까지 92.9%에 해당하는 2조 995억원의 토지보상을 실시함에 따라 동 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이후에는 토지조성공사를 중심으로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 총사업비 세부내역 현황]

(단위: 억원, %)

	2017까지 누계		2018 이후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토지보상비	20,995	92.9	1,605	7.1	22,600
공사비	2,043	8.8	21,193	91.2	23,236
조사설계비	415	56.6	318	43.4	733
기타 관리비 등	2,434	31.1	5,383	68.9	7,817
소계	25,887	47.6	28,499	52.4	54,386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한국수자원공사는 친수사업권으로 계상 중인 1조원의 실현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자산가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다 2015년에 4대강 투자금 회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장부금액과 회수금액의 차이 6조 2,813억원을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독점적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으로 개발 중인 친수구역 조성사업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실현이익 1조원을 친수사업권(자산)으로 인식하였다. 현재 조성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을 통하여 5,600억원, 추가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통하여 4,400억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에서는 추가적인 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친수사업권 금액을 설정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자산 및 친수사업권 관련 기타무형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4대강 자산	6,216,259	6,241,645	△6,241,645	-	-	
친수사업권	부산에코델타시티	-	-	560,000	560,000	560,000
	신규사업	-	-	440,000	440,000	440,000
	합계	-	-	1,000,000	1,000,000	1,000,00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한국수자원공사는 5,600억원의 이익을 예상하여 친수사업권을 설정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지역 1,177만㎡를 개발하여, 무상공급면적을 제외한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관광·레저 등의 용도별 면적 589만 8,000㎡를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물류 등 용지면적이 전체면적 중에서 21.8%를 차지하며, 유상공급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

(단위: 천㎡, %)

구분	유상공급면적					무상 공급	합계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등	공공시설 등	소계		
면적	2,345	412	2,569	572	5,898	5,872	11,770
비율1	19.9	3.5	21.8	4.9	50.1	49.9	100.0
비율2	39.8	7.0	43.6	9.7	100.0		

주1: 산업·물류용지는 R&D, 첨단산업, 물류, 산업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됨

주2: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원, 녹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학교 등으로 구성됨.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수자원공사는 유상공급토지 중 산업·물류와 연구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급승인을 받은 후 분양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공고한 산업·물류와 연구용지 29만 7,262㎡ 중 42.7%인 12만 7,000㎡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되었다. 특히 산업용지의 분양률은 17.8%로 저조하다. 이에 반해 2017년 9월에 공동주택용지 11만 724㎡는 100% 분양되었다. 그 결과, 분양가액 4,673억 7,000만원 중 3,203억원 상당액만 분양되고, 1,470억 7,000만원 상당액은 미분양된 상태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용지분양 실적]

(단위: ㎡, 백만원, %)

용도	분양가능일	위치	분양		분양실적		분양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산업용지	2015.9.~	명지동	140,667	122,108	25,637	22,000	17.8
물류용지	2016.6.~	명지동	114,041	98,166	82,588	71,100	72.8
연구용지	2017.9.~	명지동	42,554	35,741	18,842	15,800	44.6
산업·물류용지 소계			297,262	256,015	127,067	108,900	42.7
공동주택	2017.9	강동동	110,724	211,355	110,724	211,400	100
합계			407,986	467,370		320,300	58.3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급승인을 받은 산업용지 물량 중 분양을 시도하여 실제 분양까지 이어진 물량은 3.2%에 그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산업용지 물량의 공급승인 후에도 적극적으로 분양활동을 전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산업용지 수요부족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2017년까지 산업·물류용지의 유상공급면적 256만 8,753㎡ 중 38.2%가 공급승인을 받아 분양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물량도 저조하며 2017년 말까지 분양한 면적은 12만 7,067㎡에 불과하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공급승인 용지별 분양 실적]

(단위: ㎡, 백만원, %)

형태	공급 승인일	유상공급 면적	공급승인 물량(a)	분양공고 물량	분양 물량(b)	분양율 (b/a)
연구	2017.9	220,700	59,702	42,554	18,842	31.6
산업	2015.11~ 2016.9	1,698,561	807,354	140,667	25,637	3.2
물류	2016.9	589,974	114,041	114,041	82,588	72.4
산업 지원	-	59,518	-	-	-	-
소계		2,568,753	981,097	297,262	127,067	13.0
		100.0	38.2	11.6	4.9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에도 4,5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투자액 및 투자계획]

(단위: 억원)

2010 ~ 2012	기투자액						계획		총 사업비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액	2018	2019 이후	
79	4,359	4,696	6,337	5,380	5,036	25,887	4,550	23,949	54,389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급승인물량을 선분양하지 못하여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에서 매년 5,000억원 가량 발생하는 토지보상비와 조성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자본 조달을 증가시키고 있다. 2013년에 고유사업분 금융부채가 4조 1,377억원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4조 5,957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기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선분양을 통한 자금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하는데, 이처럼 에코델타시티의 수요 부족에 따른 산업용지 미분양 물량 확대는 공사의 재무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의 재무위험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융성 부채 현황]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대강 금융부채	73,225	75,523	71,132	69,660	67,904
고유사업금융부채	41,377	41,066	43,056	44,791	45,957
금융부채 합계	114,602	116,589	114,188	114,451	113,86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투자한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1조원을 친수사업권으로 계상 중이다. 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 개발을 통하여 5,600억원의 이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친수사업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산에코델타시티	-	-	560,000	560,000	560,000
신규사업	-	-	440,000	440,000	440,000
친수사업권 합계	-	-	1,000,000	1,000,000	1,000,00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산업 용지 등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추정된 개발이익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해신공항 확장공사가 향후 부산 에코델타시티 주택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공사가 진행되면 신설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23개 블록에서 약 2,700호의 세대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7년 11월 8일에 설립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sup>6)</sup>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정받아 조성 중인 친수구역 사업이 마무리되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산업용지 분양지연 문제, 추가적인 친수구역 지구 지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수사업권으로 계상 중인 1조원의 실현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적정한 자산가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

6)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교통부 실장·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 가. 현황

환경부<sup>1)</sup>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주)워터웨이플러스<sup>2)</sup>는 뱃길경관 유지·관리, 물류 지원센터 운영, 친수 관광·레저시설 개발·운영, 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행사·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워터웨이플러스의 2017년 기준 총수입·총지출합계는 99억 1,100만원이며, 인건비는 4억 9,100만원, 경상운영비는 5억 3,000만원, 사업비는 88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다.

[주)워터웨이플러스 총수입 및 총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	정부지원수입	8,961	9,104	10,471	13,390	9,845
	기타사업수입	0	0	0	0	0
	부대수입	35	40	70	31	66
	출자금	0	0	2,700	0	0
	차입금	0	0	0	0	0
	기타	2	1	17	11	0
	합계	8,998	9,145	13,258	13,432	9,911
지출	인건비	490	525	521	454	491
	경상운영비	380	451	534	474	530
	사업비	7,934	8,052	9,467	12,450	8,810
	차입상환금	0	0	0	0	0
	기타	194	117	2,736	54	80
	합계	8,998	9,145	13,258	13,432	9,911

주: 결산 기준

자료: (주)워터웨이플러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2018년 6월 8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수자원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주)워터웨이플러스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관이 변경되었다.

2)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이다.

## 나. 분석의견

(㉞)위터웨이플러스는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국외연수 등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휴직기간 중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㉞)위터웨이플러스는 내부 규정인 「연봉규정」 제13조<sup>3)</sup>에 따라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또는 직무훈련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실적급여를 제외한 연봉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 지침」<sup>4)</sup>에 따르면, 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기간 중 급여 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기준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sup>5)</sup>을 살펴

### 3) 「연봉규정」

제13조(휴직 등에 따른 연봉) 휴직 및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실적급여(야간근무수당은 제외)는 통상근무자의 직급별 월한도 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준급을 지급한다.
4.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또는 직무훈련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실적급여를 제외한 연봉전액을 지급한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산전·산후휴가의 경우 초일부터 60일간은 실적급여를 제외한 연봉전액을 지급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 지침」 p. 6

#### (5) 휴가·휴직 제도

- 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기간 중 급여 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보면,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도 국가공무원 휴직 규정을 감안하여 공사의 필요에 의한 휴직을 전제로 선발된 직원이 6개월 이상 외국유학 또는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2년을 한도로 기본급(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과 (주)위터웨이플러스 국외연수 휴직 관련 규정 비교]

구분	국가공무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주)위터웨이플러스
휴직 사유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	휴직을 전제로 선발된 직원이 6개월 이상 외국유학 또는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또는 직무훈련에 따른 휴직
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	기본급 (연봉월액)의 50%를 지급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50퍼센트를 지급	휴직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실적급여를 제외한 연봉전액을 지급
기한	2년 (교육공무원 예외)	2년	3년	제한 없음

자료: 「공무원보수규정」과 「연봉규정」을 바탕으로 제작성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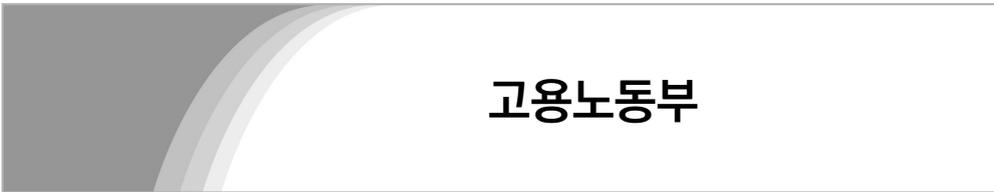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도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해서 휴직 기간(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 연봉월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위터웨이플러스는 휴직 기간 중 실적급여를 제외한 연봉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간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어, 국가공무원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주)위터웨이플러스는 직원의 해외 유학이나 직무 훈련 시 연봉 전액(실적급여 제외)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해외 유학이나 직무 훈련 후 의무복무기간도 설정하지 않아 해당 직원이 습득한 기술이나 능력을 기관에 기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주)위터웨이플러스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 지침」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명시된 국외연수 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 1 현황

##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 4,605억 4,700만원(8.5%)이 감소한 26조 5,261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9,445억 6,800만원(10.0%)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00,580	81,917	81,917	99,435	17,518	△1,145
기금	29,370,139	28,884,781	28,904,781	26,426,716	△2,478,065	△2,943,423
합계	29,470,719	28,966,698	28,986,698	26,526,151	△2,460,547	△2,944,568

자료: 고용노동부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 6,078억 6,500만원(8.3%)이 감소한 28조 7,537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8,003억 6,800만원(8.9%)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183,998	2,287,559	2,456,853	2,327,053	△129,800	143,055
기금	29,370,139	28,884,781	28,904,781	26,426,716	△2,478,065	△2,943,423
합계	31,554,137	31,172,340	31,361,634	28,753,769	△2,607,865	△2,800,368

자료: 고용노동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19억 1,700만원이며, 1,546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4.3%인 994억 3,500만원을 수납하고 551억 5,0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1,714	81,714	81,714	123,347	72,614	50,696	38	58.9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03	203	203	1,382	361	1,021	0	26.1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29,893	26,460	3,433	0	88.5
합계	81,917	81,917	81,917	154,623	99,435	55,150	38	64.3

자료: 고용노동부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4,735억 6,800만원이며, 이 중 94.1%인 2조 3,270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1,409억 7,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135,164	2,300,500	2,317,215	2,170,714	5,541	140,959	93.7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71,093	75,051	75,051	75,037	0	14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	81,302	81,302	81,302	81,302	0	0	100.0
합계	2,287,559	2,456,853	2,473,568	2,327,053	5,541	140,973	94.1

자료: 고용노동부

다.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8조 9,047억 8,100만원이며, 30조 9,189억 6,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5.5%인 26조 4,267억 1,600만원을 수납하고 4조 3,108억 2,0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814억 2,7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13,724,326	13,744,326	13,744,326	14,627,269	13,315,998	1,260,364	50,907	91.0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12,278,202	12,278,202	12,278,202	12,604,382	11,093,375	1,395,640	115,367	88.0
임금채권보장기금	1,353,970	1,353,970	1,353,970	2,479,041	896,131	1,573,734	9,176	36.1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1,201,710	1,201,710	1,201,710	855,394	833,901	20,006	1,487	97.5
근로복지진흥기금	326,573	326,573	326,573	352,877	287,311	61,076	4,490	81.4
합계	28,884,781	28,904,781	28,904,781	30,918,963	26,426,716	4,310,820	181,427	85.5

자료: 고용노동부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계획현액은 28조 9,060억 1,800만원이며, 이 중 91.4%인 26조 4,267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772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13,724,326	13,744,326	13,745,563	13,315,998	679	631,486	96.9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12,278,202	12,278,202	12,278,202	11,093,375	0	9,986	90.4
임금채권보장기금	1,353,970	1,353,970	1,353,970	896,131	0	29,945	66.2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1,201,710	1,201,710	1,201,710	833,901	0	443	69.4
근로복지진흥기금	326,573	326,573	326,573	287,311	0	5,396	88.0
합계	28,884,781	28,904,781	28,906,018	26,426,716	679	677,256	91.4

자료: 고용노동부

##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고용노동부의 자산은 37조 2,640억 8,900만원, 부채는 17조 2,249억 800만원으로 순자산은 20조 391억 8,1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39,747억 8,000만원(11.9%)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6조 6,274억 6,000만원, 투자자산 27조 7,373억 7,700만원, 일반유형자산 2조 8,251억 4,200만원, 무형자산 65억 4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676억 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장기투자증권의 증가에 따라 투자자산이 3조 3,757억 8,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1조 170억 7,800만원(6.3%)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587억 9,700만원, 장기차입부채 44억 9,400만원, 장기충당부채 280억 5,6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7조 1,335억 6,000만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에 따라 기타비유동부채가 9,973억 6,7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	37,264,090	33,289,309	3,974,781	11.9
Ⅰ.유동자산	6,627,460	6,250,005	377,455	6.0
Ⅱ.투자자산	27,737,378	24,311,053	3,426,325	14.1
Ⅲ.일반유형자산	2,825,143	2,662,072	163,071	6.1
Ⅳ.무형자산	6,504	5,386	1,118	20.8
Ⅴ.기타비유동자산	67,605	60,793	6,812	11.2
부채	17,224,909	16,207,830	1,017,078	6.3
Ⅰ.유동부채	58,798	36,528	22,270	61.0
Ⅱ.장기차입부채	4,495	3,916	579	14.8
Ⅲ.장기충당부채	28,056	22,319	5,737	25.7
Ⅳ.기타비유동부채	17,133,560	16,145,066	988,494	6.1
순자산	20,039,181	17,081,478	2,957,703	17.3
Ⅰ.기본순자산	1,643,105	1,643,105	0	0.0
Ⅱ.적립금 및 잉여금	15,372,380	13,153,255	2,219,125	16.9
Ⅲ.순자산조정	3,023,695	2,285,117	738,578	32.3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209억 3,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7조 3,405억 6,700만원, 관리운영비 9,387억 1,000만원, 비배분비용 4,304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510억 8,400만원, 비배분수익 1조 392억 5,4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7조 3,984억 9,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조 2,856억 8,400만원(7.9%) 증가한 17조 5,194억 2,600만원이며, 이는 고용정책 프로그램순원가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가 전년도에 대비 7,322억 6,5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고용정책프로그램(8

조 145억 500만원)과 산재보험프로그램(4조 7,810억 2,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경비 6,054억 4,300만원과 출연비 4,451억 1,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2,513억 2,100만원과 기타비용 1,543억 2,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7,189,483	16,489,882	699,602	4.2
가. 프로그램 총원가	17,340,567	16,608,302	732,265	4.4
나. 프로그램 수익	151,084	118,421	32,663	27.6
II. 관리운영비	938,710	898,873	39,837	4.4
III. 비배분비용	430,487	471,974	△41,487	△8.8
IV. 비배분수익	1,039,254	1,626,988	△587,734	△36.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7,519,427	16,233,742	1,285,685	7.9
VI. 비교환수익 등	17,398,492	16,687,388	711,104	4.3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20,934	△453,647	574,581	126.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17조 814억 7,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0조 391억 8,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조 9,577억 300만원(17.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5,745억 8,0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482억 6,500만원, 조정항목은 기초대비 1조 1,418억 4,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조 3,400억 5,8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의 재원의 이전 994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7,404억 4,3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18억 6,5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7,081,478	14,839,305	2,242,173	15.1
II. 재정운영결과	120,934	△453,646	574,580	126.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340,058	2,191,793	148,265	6.8
IV. 조정항목	738,578	△403,267	1,141,845	283.1
V. 기말순자산( I-II+III+IV)	20,039,181	17,081,478	2,957,703	17.3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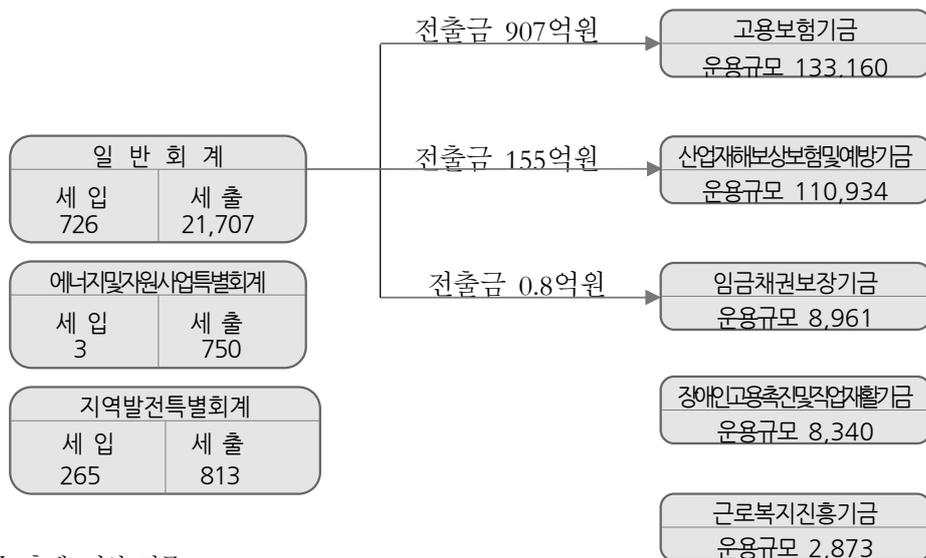
### 마. 재정 구조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907억원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155억원 전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기금으로 0.8억원 전출되었다.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구직급여 사업, ②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③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 등이 있다.

구직급여 사업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여 3,262억원이 감액(56,612억원→53,350억원)되었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조선업 사업장의 고용유지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177억원이 감액(1,027억원→850억원)되었다.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목표 인원을 10,000명에서 7,500명으로 조정하는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104억원이 감액(463억원→359억원)되었다<sup>1)</sup>.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운영지원 등이 있다.

한국폴리텍대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캠퍼스 건립 공사비 및 개축을 위하여 16억원이 증액(1,631억원→1,647억원)되었다<sup>2)</sup>.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정부는 자활근로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간 연계 개편에 대한 평가를 개편 후 3년이 경과한 2018년에 시행한다.”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sup>3)</sup>.

1)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1.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2)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1.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3)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② 고객상담센터 운영사업 등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대학 재학생 지원물량 5,000명을 축소하기 위해 244억원이 감액(1,350억원→1,106억원)되었고, 고객상담센터 운영사업은 고객상담센터 인력 확충을 위해 1억원 증액(1억원→2억원)되었다<sup>4)</sup>.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7.

고용노동부는 ①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핵심개혁과제의 현장 확산 및 안착 지원**, ②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실직자 고용안정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지속**, ③ 일자리사업 개편, 재정사업평가 결과 반영 등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일부 취업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1년 고용유지율도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수료율이 다소 저조하며, 협약기업으로의 취업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경으로 편성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였다. 2017년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예산현액 45억원 중 14억 2,500만원(31.7%)이 집행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476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23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가입 인원 저조 등으로 314억원(45.8%)이 집행되었다.

## II

## 주요 현안 분석

### 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모색 필요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1)에 따라 1990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장애인고용기금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 부담금의 연체금 및 가산금,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동 기금으로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장애인 취업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도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입은 8,339억원이고, 이 중 사업비로 2,563억원을 집행하였다. 사업비 외 지출은 공자기금 예탁 500억원, 여유자금운용 4,746억원 등이다.

[2017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수입	자체수입					정부 내부 수입	여유 자금 회수
	부담금	용자 원금 회수	재산 수입	기타	소계		
	453,236	67	12,205	8,190	473,698	689	359,514
지출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
	256,319		52,960		50,018		474,604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1-1. 장애인고용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가. 현황

장애인고용기금의 2017년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연중 운용평잔 기준<sup>2)</sup> 9,4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였다. 2017년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등 주요지출은 3,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다.

한편, 주요지출 대비 여유자금 비율이 2012년 0.87에서 2017년 3.06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기금이 특정한 재정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성 기금으로, 기금의 수입-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적정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점에서,<sup>3)</sup> 이와 같은 주요지출 대비 여유자금 비중 증가 추이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억원, %, 배)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a)	2017(b)	
						(b-a)	a
여유자금(A)	1,905	2,929	4,019	5,901	8,103	9,475	16.9
주요지출(B)	2,175	2,439	2,572	2,646	2,797	3,093	10.6
A/B	0.87	1.20	1.56	2.23	2.90	3.06	-

주: 1. 여유자금은 연중 운용평잔 기준

2. 주요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차입원금이자 상환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부담금 수입 규모 증가에 비해 사업비 증가율이 높지 않아 여유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의 다양화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중 운용평잔이란 연말과 같이 특정 시점에서 산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1년 간 운용한 자산의 평균 잔고이다.

3)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5.9., p.6

장애인고용기금의 주 수입원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이며, 지출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비 및 이에 수반되는 운영비로 구성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사업비는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최근 6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수입의 연평균 증가율(13.2%)이 사업비 증가율(8.3%)에 비해 높다.

[장애인고용기금의 부담금 수입 및 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장애인 고용부담금	2,435	3,188	3,420	4,181	4,347	4,532	13.2
사업비	1,720	1,967	2,085	2,136	2,268	2,563	8.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미달인원과 부담기초액을 근거로 산정되는데,<sup>4)</sup> 법정 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되고 있음에 따라 의무고용률 준수 비율이 2013년 50.8%에서 2017년 46.1%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부담기초액도 2013년 62만 6,000원에서 2017년 81만 2,000원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의무고용률, 부담기초액 및 의무고용준수율 현황]

(단위: %,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무 고용률	국가·지자체(공무원)/ 공공기관	3.0				3.2
	민간기업/ 국가·지자체(비공무원)	2.5	2.7			2.9
부담기초액		626,000	670,000	710,000	757,000	812,000

4) 장애인고용부담금 = [(월별 상시근로자수×의무고용률)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연간합계액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단위: %,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무 고용 준수율	국가·지자체(공무원)	87.2	87.9	89.5	89.8	82.8
	국가·지자체(비공무원)	90.8	93.2	92.2	91.8	91.5
	공공기관	58.2	56.4	59.4	62.6	55.7
	민간기업	49.8	47.0	46.6	46.6	45.0
	계	50.8	48.1	47.8	47.9	46.1

주: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1명당 월별로 부담하는 금액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장애인고용기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되나, 2017년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6.5%로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36.0	37.0	34.8	36.1	36.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기금의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률을 비롯한 고용 현황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고용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sup>5)</sup>

5)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4.)」에서 장애인 고용률 및 의무고용준수율을 제고하고 평균임금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1-2.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의 고용유지를 제고 필요

###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sup>6)</sup>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고용 사업 및 중증장애인 인턴제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7년도 계획현액은 84억 6,300만원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액 출연되었다.

[2017회계연도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장애인 취업지원	8,463	8,463	0	0	8,463	8,463	0	0

자료: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3~7주간의 사업체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취업 후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훈련생에게는 훈련일 1일 당 일비 1.7만원이 지급되며, 사업체에는 1일당 1.9만원의 사업체 보조금이, 직무지도원에게는 2.5~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고용할 시, 인턴기간(최대 6개월) 동안 월 약정임금의 80%를 월 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월 65만원 정규직 전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유형에 속하는 자로, 장애유형은 매 3년마다 변경하여 지정된다.<sup>7)</sup>

6) 코드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6-311

7)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등 총 9개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 나. 분석의견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및 인턴제 사업을 통해 취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이 저조한 편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의 취업률은 2013년 72.6%에서 2017년 83.8%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훈련 수료율도 86.0%이다. 그러나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6개월 고용유지율이 약 50%인데 비해 1년 고용유지율은 30%대로 20%p 정도 낮다.<sup>8)</sup>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현황]

(단위: 개, 명, 건, %)

	참여 사업장 수	순 참여 인원	참여 건수 (A)	훈련수료 건수(B)	훈련 수료율 (B/A)	취업 건수 (C)	취업률 (C/B)	고용유지율	
								6개월	1년
2013	990	2,874	3,121	2,844	91.1	2,064	72.6	54%	33%
2014	951	2,909	3,174	2,874	90.5	2,040	71.0	51%	31%
2015	925	2,959	3,171	2,856	90.1	2,254	78.9	52%	35%
2016	972	3,097	3,345	2,954	88.3	2,366	80.1	54%	35%
2017	886	3,097	3,292	2,832	86.0	2,374	83.8	49%	-

주: 동 사업은 중복참여가 가능하므로, 취업률 및 훈련수료율은 참여건수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지원고용 사업으로 취업 후 수요가 있을 시 사업장 적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응지도를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주는데, 직무지도원의 배치 기간이 취업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한 점도 1년 고용유지율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sup>9)</sup>

한편,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경우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고용률이 낮은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도 정규직 전환율이 약 70% 수준이다. 1년 고용유지율 또한 지원고용 사업에 비해 높으나, 1년 6개월 고용유지율은 30%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8) 참고로 비장애인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2017년에 6개월 고용유지율(62.1%)에 비해 1년 고용유지율(48.6%)이 낮으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에 비해 고용유지율의 감소폭이 더 작다.

9) 2017년의 경우 303명의 직무지도원이 495명에 대해 취업 후 지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체 취업건수대비 약 20% 수준이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참여 사업장 수	참여 목표 인원	참여 인원 (A)	정규직 전환인원 (B)	정규직 전환율 (B/A)	고용유지율		
						6개월	1년	1년 6개월
2015	184	200	306	154	63.9	66%	46%	33%
2016	213	200	322	171	71.3	73%	56%	28%
2017	206	200	292	176	74.6	50%	-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의 경우 작업방법 습득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의 참여비율이 높고,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은 장애인 평균 고용율에 미달하는 최종중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므로 고용유지율 저하 폭이 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취업 후 실업상태에 다시 놓이게 되는 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취업 후 사후 관리 방안 마련, 적응지도 기간 연장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장려금<sup>1)</sup>은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추진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고용을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7년도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서 계획현액 1,066억원 중 988억원을 집행하였다. 내역사업별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799억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 87억원, 정규직전환지원 102억원이다.

[2017회계연도 고용안정장려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고용안정장려금	106,560	106,560	0	0	106,560	98,839	21	7,70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73,555	73,555	0	0	81,555	79,933	0	1,622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11,934	11,934	0	0	9,934	8,682	21	1,231
정규직전환지원	21,071	21,071	0	0	15,071	10,224	0	4,847

자료: 고용노동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고용보험기금 1345-350

## 2-1. 고용안정장려금의 집행 실적 제고 필요

### 가. 현황

고용안정장려금은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②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③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나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을 재고용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재택·원격근무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은 2017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임금상승분의 80%를 보전해주고,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요]

구분		요건	지원규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비정규직 재고용	임신, 출산전후 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 계약 종료되는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우선지원) 월 60만원 (대규모) 월 30만원
	육아휴직 등 부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하고 업무 복귀 후 계속 고용	간접노무비 월 10~30만원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	(우선지원) 월 60만원 (대규모) 월 30만원

구분		요건	지원규모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간접노무비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도입	주 3회 활용 기준 1주 10만원
	채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채택·원격근무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임금증가액 보전) 월 60만원 내 임금상승분 80% 보전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나. 분석의견

일부 고용안정장려금의 집행이 저조한바, 기업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중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중 채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 장려금의 2017년도 집행률은 각각 67.3%, 1.1%, 48.5%로 저조한 편이다.

### [2017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 (a)	실적 (b)	b/a	편성 (c)	집행 (d)	d/c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	비정규직 재고용		294	224	76.2	1,560	1,050	67.3
	육아 휴직 부여	육아휴직	9,129	36,831	403.5	29,002	39,576	136.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19	858	165.3	718	1,646	229.2
	대체인력 지원		9,131	7,774	85.1	40,787	36,155	88.6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 (a)	실적 (b)	b/a	편성 (c)	집행 (d)	d/c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3,300	3,880	117.6	7,920	6,122	77.2
	채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신규)	70	2	2.9	1,400	16	1.1
정규직 전환지원	간접노무비	3,728	4,691	125.8	21,071	10,224	48.5
	임금증감액 보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장려금별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검토하면,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2017년 1월부터 지원요건 강화,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금 감소<sup>2)</sup> 등으로 집행률이 다소 낮았다. 지원금 규모에서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의 개선은 바람직하나, 비정규직 재고용 실적이 감소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채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의 경우 2017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인지도가 낮았던 측면이 있다. 또한 장려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장이 2개소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등에서 채택·원격근무 제도의 도입·운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sup>3)</sup>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지원의 경우 2016년도 집행률 21.7%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상승, 간접노무비 증가, 고용기간 연장 등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한시적(1년)인 지원금 지급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정규직 전환지원은 목표인원 3,728명 대비 실제 4,691명이 지원하여

- 2) 지원요건: (이전) 1년 이상 유기계약 또는 무기계약 지원 → (변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시만 지원  
대규모기업 지원액: (이전) 1년 이상 유기계약 월 40만원, 무기계약 월40~80만원 → (변경) 월 30만원
- 3)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융자) 사업(고용보험기금 1047-351)에서도 채택·원격 근무를 도입한 기업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 목적으로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17년에 신규로 2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였다.

지원 인원 측면에서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다. 목표인원을 달성했음에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과의 차이로 인해 예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예산의 지원기간 및 지원단가는 2016년도 지원 실적(12개월, 47.1만원)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5.5개월, 39.6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였다.<sup>4)</sup>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집행이 부진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당초 장려금이 목표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4) 국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 실적 부진에 대해 시정요구(주의)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용부는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78개 기업 대상으로 2017년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17년 10월부터 지원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통해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2018.4.30).

## 2-2. 대체인력뱅크 실적 제고 필요 등

### 가. 현황

대체인력뱅크란 출산·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워줄 적합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충원하도록 대체인력 구인 및 발굴 관리, 교육훈련,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안정장려금의 내역사업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7년도 계획현액은 14억 8,800만원이며, 이 중 14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대체인력뱅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고용안정장려금	106,560	106,560	0	0	106,560	98,839	21	7,70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73,555	73,555	0	0	81,555	79,933	0	1,622
대체인력뱅크	1,488	1,488	0	0	1,488	1,485	0	3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민간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지역 구분 없이 운영기관을 하나로 지정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운영기관을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수도권 운영기관으로 (주)커리어넷과, 비수도권 운영기관으로 (주)스카우트가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며, 각각 9억 7,600만원과 5억 900만원을 집행하였다.

[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 및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기관명	(주)커리어넷	(주)커리어넷	(주)커리어넷	(주)스카우트	(주)커리어넷	(주)스카우트	(주)커리어넷	(주)스카우트
예산	924	989	971	504	976	509	976	512

주: 2017년까지는 집행액 기준이며, 2018년은 계획액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대체인력뱅크의 당초 계획 대비 모집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대체인력뱅크는 당초 운영기관이 설정한 목표에 비해서는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구인기업 모집 측면에서 (주)커리어넷과 (주)스카우트의 목표 달성률은 각각 53.5%와 49.8%였다. 또한, (주)커리어넷은 2017년에 신규 구직자를 4,062명 모집하여, 당초 목표로 한 15,000명 대비 27.1%를 달성하였다. (주)스카우트의 경우 구직자는 목표 대비 95.6%를 모집하였으나, 알선 건수 측면에서 목표했던 6,000건의 43.7%인 2,622건을 달성하였다.

[대체인력뱅크의 당초 목표 대비 실적]

(단위: 개, 명, 건)

구분		구인 기업	구직자	알선 건수	취업자	교육	
						소 양	직 무
(주)커리어넷 (수도권)	목표	2,500	15,000	6,500	5,000	1,500	1,500
	실적	1,338	4,062	6,692	3,755	1,535	2,348
	달성률(%)	53.5	27.1	103.0	75.1	102.3	156.5
(주)스카우트 (비수도권)	목표	3,000	3,000	6,000	2,000	1,320	680
	실적	1,494	2,868	2,622	1,252	866	372
	달성률(%)	49.8	95.6	43.7	63.2	65.6	54.7

주: 1. 구인기업 및 구직자는 2017년에 신규로 등록된 수를 의미

2. 동일한 구직자에게 여러 건의 알선이 가능하므로, 알선 건수가 구직자보다 많을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커리어넷은 대체인력뱅크 운영 4년차로 사업 수행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며, (주)스카우트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구인 기업, 구직자, 알선건수 등 양적 측면에서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스카우트의 경우 대상 지역인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6곳에서 100개 미만의 구인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범위가 넓어 구직자와의 매칭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스카우트의 지역별 구인기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부산	강원	전북	경남	대구	전남	경북	대전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세종	제주	수도권
기업수	216	172	170	168	138	137	107	105	80	80	59	40	10	7	5
비중	14.5	11.5	11.4	11.2	9.2	9.2	7.2	7.0	5.4	5.4	3.9	2.7	0.7	0.5	0.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체인력뱅크는 구인기업 및 구직자의 충분한 모집이 알선 및 취업 성과 제고의 필수 전제 요소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에서 모집 실적을 비롯한 대체인력뱅크의 운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보조사업자인 (주)커리어넷과 (주)스카우트를 통해 하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커리어넷과 (주)스카우트는 보조사업비 중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합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개선방안’이라는 한 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보조사업자의 2017년도 연구용역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건명	수행기관	금액	계약방식
(주)커리어넷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	수의
(주)스카우트			1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해당 연구용역이 보조사업자를 통해 수행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해당 계약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아닌 수의로 진행되었다.<sup>5)</sup>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에서 2,000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장 제4절(정책연구의 관리)에 따라 연구과제 결정부터 연구 종료 후 평가 및 활용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나, 보조사업자를 통해 연구를 수행할 경우 이와 같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보조사업자 2곳은 활동지역을 나누어 전국단위의 동일한 목적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개선방안’이라는 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비를 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러 보조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구는 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 부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용노동부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로하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사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sup>6)</sup>

---

6)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연구용역 사업이나 정책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체인력뱅크 사업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또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별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2-3.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사업의 개선 검토 필요

### 가. 현황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내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 신규사업이다.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의 2017년도 계획현액은 6억원이며, 이 중 5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고용안정장려금	106,560	106,560	0	0	106,560	98,839	21	7,700
일·가정양립환경개선	11,934	11,934	0	0	9,934	8,682	21	1,231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600	600	0	0	600	568	0	32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은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산업계, 노동계,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며, ① 지역의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 ② 지역별 일생활 이슈 발굴, ③ 지역의 일생활균형 문화 확대 등을 주요 역할로 한다. 2017년에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선정기관 현황]

연번	선정기관	활동지역	연번	선정기관	활동지역
1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4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
2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	5	광주상공회의소	광주
3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	6	청주상공회의소	충북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이하 ‘지역추진단’)이 수행하는 일부 행사의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였는데, 중앙의 사업과 연계하는 등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지역추진단에서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선정·시상’을 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지역 별로 운영에 편차가 있었다. 경기지역추진단의 경우 우수기업 선정 시 평가에 어려운 점이 있어 당초 7개 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9개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대구 지역은 컨설팅을 통해 우수 사업장을 발굴하였으나, 시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인천지역은 심사 대상 기업이 5개 기업에 불과하였다.

[우수기업 선정 사업 비교]

	지역추진단	고용노동부
사업 규모	(경기) 14개 기업 모집, 9개 기업 선정 (대구) 컨설팅 통해 우수 사업장 발굴하였으나, 시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시상 미진행 (부산) 우수사례 23건 (인천) 5개 기업 심사, 1개 기업 선정 (충북) 13개사 발굴	143개 기업 참여, 12개 기업 선정 (대상 2, 최우수 4, 우수상 3, 장려상 3)
사업 방식	- 우수기업 공모 후 선정(경기) - 기업 컨설팅을 통한 발굴(대구, 부산 등)	- 공모 후 선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지역추진단에서 일생활균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고용노동부도 일터혁신컨설팅 사업<sup>7)</sup>에서 장시간근로시간 개선에 대해 전국 단위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일가정양립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추진단에서 수행한 컨설팅의 경우 지역별로 컨설팅 대상 기업 수의 편차가

7) 코드명: 고용보험기금 1348-350

존재하며,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사업이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컨설팅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개발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일생활균형 관련 컨설팅 사업 비교]

구분	지역추진단	고용노동부
사업 규모	(경기) 40개 기업 (광주) 12개 기업(3개 기업 중도에 중단) (대구) 30개 기업 (부산) 50개 기업 (인천) 5개 기업 (충북) 10개 기업	(장시간근로개선) 76개 기업 (일가정양립) 308개 기업
사업 방식	- 컨설팅단 모집 후 컨설팅 위탁	-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후 컨설팅 위탁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별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수기업 선정과 같이 지역별로 기업을 선정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컨설팅 사업처럼 중앙에서 체계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대규모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중앙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사업도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이 지역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소 비효율적인 사업의 경우 중앙 부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업을 개편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추진단은 각종 회의를 개최할 시 호텔 등을 활용하였는데, 가급적 공공의 유희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추진단은 지역추진단 정규 회의 및 협약 선언식 등을 개최하며 호텔을 임차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기지역추진단의 경우 지역추진단 3차 회의와 사업주 대상 인식개선 제3차 설명회를 위해, 대구지역추진단의 경우 지역추진단 사업보고회, 노사민정 일생활균형 실천 협약식 등을 위해 지역의 호텔을 임차하고 임차료 및 식대 등을 집행하였다.

[호텔을 임차한 회의 등 현황]

(단위: 천원)

지역	목적	장소	참여인원	집행액
경기	지역추진단 3차 회의	이비스	8명	1,000
	사업주 인식개선 제3차 설명회	엠베서더호텔	100명	2,700
대구	지역추진단 사업 보고회	호텔 라운제나	5명	5,677
	노사민정 일생활균형 실천 협약식		200명	
	일생활 균형 실천 한마당		100명	3,61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추진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지역의 공공 유희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정기회의 및 일부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회의장 및 행사장은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등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8)</sup>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보조사업자인 지역추진단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8)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p.95.

## 3

##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 사업 추진 분석

고용전산망관리 사업<sup>1)</sup>은 법/제도 신설·변경 등에 대응하여 취업알선전산망,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고용보험전산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2017년 계획현액 417억 2,200만원 중 414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다.

## [고용안정전산망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고용전산망관리	40,722	41,722	0	0	41,722	41,490	0	23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전산망관리 사업에서 사업시행주체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금으로 414억 9,000만원을 교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305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73.1%이다.

## [2017회계연도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당초	수정(A)								
40,722	41,722	41,490	41,490	0	41,490	30,510	9,212	1,768	73.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고용보험기금 1054-510

### 3-1. 신규 정보화 사업의 집행 부진

####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당초 동 사업에서 ①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② 청년 일자리정책 홍보 통합시스템, ③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사업은 워크넷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90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다. 청년 일자리정책 홍보 통합 시스템은 정부의 청년 취업지원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사업은 직무(직업)과 관련한 용어 추출, 연관성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를 사전에 자동 생성하고 서비스 이용 주체별 속성 및 이력정보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매칭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고용전산망관리 사업 중 신규 정보화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수정 계획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9,000	9,000	9,000	0	8,017	1,751
청년 일자리정책 홍보 통합시스템 구축	1,000	768 <sup>1)</sup>	768 <sup>1)</sup>	0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1,000	1,000	1,000	0	1,000	0

주: 1) 청년 일자리정책 홍보 통합시스템 구축은 집행 전 기재부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사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기재부에서 권고하면서 232백 만원을 제외한 최종 768백만원 교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어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발표(2016.4.27., 정부)」에 따라 워크넷을 수요자 특성에 기반한 고용 복합 서비스<sup>2)</sup>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로 확대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일자리포털 ISP 수립사업 TFT를 운영하고, 2016년 7월~12월의 5개월 간 ISP를 수립하였다.

그런데, 사업수행주체인 고용정보원은 2017년 10월 13일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을 위한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12.8. 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구축 사업비 80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다.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사업 추진 현황]

- 최초 계약 체결 : '17.10.13 ~ '18.12.6
- 계약 취소 : '17.12.8.
- 신규 계약체결 요청(한국고용정보원→조달청) : '17.12.8
- 사전규격 공고 : '17.12.8 ~ 12.18
- 입찰공고(긴급) : '17.12.21 ~ '18.1.23
  - 무응찰에 따른 유찰
- 1차 공고 유찰에 따른 재입찰 공고 : '18.1.23 ~ 2.6
  - (주)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 단일 응찰
- 제안 적격심사(한국고용정보원) : '18.2.13
- 계약체결 : '18.2.27 ~ '18.12.1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계약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사유는 계약 과정에서 유착관계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등 행정상 감독 부실에 따른 것이다. 현재 (주)대우 시스템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이 정상화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유사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① 일자리 관련하여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통합하며, ② 사용자 유형분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 추천 정보를 제공하고, ③ 대상별 고용 취약성을 고려한 고용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둘째, ‘청년 일자리정책 홍보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추진되지 않았다.**

국회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청년 일자리정책 시스템은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청년취업지원 사업들을 원스톱으로 홍보하고 정부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화 시스템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 심의 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사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10억원 중 7억 6,800만원만을 지출하도록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고용정보원은 이를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사업에 포함하기로 하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청년일자리정책 홍보 통합시스템 또한 구축되지 못하였다.

국회가 청년 고용문제 해결방안으로 증액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국회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7년도 추경으로 편성된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수립(ISP)’ 비용 10억원이 전액 이월되었다.**

2017년도 일자리 추경 시 머신러닝을 활용한 직무역량 중심의 일자리매칭 모델을 개발하고자 ISP 수립 비용 10억원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2017년 추경 편성 시 일자리매칭시스템을 2019년에 오픈하기 위해서는 이의 기반이 되는 ‘기업정보시스템’ 및 ‘근로자이력관리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2017년 내에 추경편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추경안 통과(2017.7.22.) 이후 최신 기술검토 등 사업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17년 11월 시스템 구축 계약을 발주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었다. 현재는 2018년 1월 10일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고 일자리매칭 관련 내·외부 환경 분석,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 중에 있다.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

- 행안부 사전협의 : '17.9.1. ~ 9.26.
- 사업계획 수립 및 조달 공고 : '17.9.28 ~ 12.12.
- 기술평가 : '17.12.15. (조달청 평가 수행)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술 협상 : '17.12.18. ~ '18.1.5.
-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매칭 ISP 사업' 계약 체결 : '18.1.1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동 시스템이 2019년에 운영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3)</sup>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 사업은 다음연도 계획액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시급하게 편성된 사업으로 연내에 실질행되어 사업효과가 발생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은 2017년도 추경 사업인 해당 사업의 집행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향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추경 사업이 연내에 실질행되도록 하여 추경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일자리 매칭시스템 향후 추진 일정]

- 머신러닝기반의 일자리매칭시스템 ISP 구축: 2018. 1.~ 2018. 9.
- 머신러닝기반의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추진: ~ 2019. 12.
- 일자리포털 내 매칭시스템 서비스 실시 예정: 2020. 1.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2. 정보화 사업을 통한 기관 홍보 사업 추진 부적정

### 가. 현황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이나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보화 사업인 고용안전전산망관리 사업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나 고용 관련 신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의 용도로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

### 나. 분석의견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보화 사업을 활용하여 비정보화 사업인 홍보, 기념품 구매 등 기관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7년 정보화 사업인 동 사업을 활용한 기관 홍보 성격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옥외매체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홍보 계약 3,700만원, ‘2017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홍보비’ 2,800만원,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2,000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보화 사업인 동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은 일부 예산을 정보화 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관을 홍보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sup>4)</sup>.

4)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교부받는 ‘한국고용정보원 운영(7076-232)’ 세부사업이 있음에도 정보화 사업인 동 사업에서 기관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에서 집행한 기관 홍보 사업 집행 내역(예시)]

(단위: 백만원)

일시	지출내역	2017 집행액
2017. 4. 1	옥외매체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홍보 계약	37
2017. 4. 3	2017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홍보비	28
2017. 4. 18	한국고용정보원 홍보 브로슈어 제작	8
2017. 6. 1	2017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 대상 홍보비	5
2017. 6. 29	홍보를 위한 기념품 구매	4
2017. 7. 17	기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 구매	4
2017. 8. 1	대한민국 경영대상 홍보비	3
2017. 10. 27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20
2017. 12. 22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구매	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sup>5)</sup>에서 고용보험기금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sup>6)</sup>에서는 일반법령출연금의 경우,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사업출연금)의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출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 달성에 충실히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보화 사업의 목적에 맞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17

□ 출연금 사업은 이월불용 현황 및 사유 등 집행실적과 출연기관의 보유자산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다음년도 예산 편성

○ 일반법령출연금의 경우,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사업출연금)의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출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 달성에 충실히 사용

- 중앙기관의 장은 예산안 요구시 결산 결과 등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출연금 집행 점검의 결과를 첨부

- 출연금 관련 사업의 예산안은 사업출연금 집행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은 제외하고 편성

-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또는 여타 사업 출연금 예산안에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을 반영하여 편성

지 않는 비정보화 사업인 홍보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이 있다.

워크넷 등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나, 정보화 사업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기관운영사업이나 별도 사업(내역사업 포함) 등의 비정보화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예산편성지침과 법령을 준수하여 정보화 사업에서 기관 운영과 관련된 홍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예산 사용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비정보화 사업인 홍보사업의 별도 사업 분리, 비정보화 사업 부분의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3. 지침을 위반한 차세대 HRD<sup>7)</sup>-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의 낙찰차액 사용 부적정

#### 가. 현황

HRD-Net 시스템은 고용센터, 지방자치센터, 훈련기관의 훈련과정·훈련생·훈련비용 등 직업능력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 신청, 성과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HRD-Net 시스템의 부처 내 훈련정보 통합연계 구축, 온라인 수강신청 기반 구축, 출결관리시스템 개선, 통합심사시스템 추가 구축,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등의 기능 개선을 위하여 2017년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을 출연금 예산 15억원을 활용하여 추진하였다.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1,500	1,500	0	0	1,500	1,500	0	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나. 분석의견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낙찰차액을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사용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낙찰차액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시스템의 정부출연금 예산은 1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의 계약금액은 12억 4,850만원으로 낙찰차액이 2억 5,150만원이 발생하였다.

7)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의 낙찰차액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공고일시	계약금액 (A)	출연금 (B)	낙찰차액 (B-A)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	2017. 4. 21	1,248.5	1,500	251.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낙찰차액 2억 5,150만원을 소프트웨어 구매 2,524만원, 감리용역에 5,775만원, 조달수수료 지출에 86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의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시	지출내역	지출금액
계약 금액	2017. 4. 27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	1,248,500
낙찰 차액	2017. 6. 12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 SW 구매	25,235
	2017. 9. 11	차세대HRD-Net 시스템 3차 구축사업 감리용역	57,750
	2017. 12. 28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 조달 수수료 지출 요청	8,64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sup>8)</sup>에 따르면, 정보화

8)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95

가. 이·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 다만,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무회의 등 정책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보 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를 지원하거나 국무회의 등 정책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 분으로 사용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HRD-Net 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의 계약금액과 예산과의 낙찰차액인 2억 5,150만원을 조달수수료, 감리 등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에 따라 중앙관서(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거나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지만,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

향후,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에 대해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불용처리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후 타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

- 이 경우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고용영향평가사업 위탁사업 관리 부적절

####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사업<sup>1)</sup>에서 정책 및 예산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예산현액 37억 7,400만원 중 37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고용영향평가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용영향 평가사업	3,774	3,774	0	0	3,774	3,763	0	1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는 ① 정책 고용영향평가와 ②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로 구성되는데, 정책 고용영향평가란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에 대해 고용효과 분석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며,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란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가 전담기구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연구원 12명)에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39건의 정책 고용영향평가 및 249개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일반회계 1045-301

[고용영향평가 수행 절차]

- [정책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 실시(노동연 주관, 6개월 내 외) → 평가결과 협의(고용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고용부)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예산편성지침 반영(기재부) → 평가 가이드라인 배포(고용부) →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각 부처) → 노동연 검토 → 예산편성시 활용(기재부)
- \*\*2018년부터는 노동연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변경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영향평가 위탁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한국노동연구원 위탁사업비 집행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사업의 주관부처로서, 대행사업자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점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영향평가 사업 수행 시 부적절한 용도로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우선, 한국노동연구원은 동 사업 예산으로 ‘2017년 고용영향평가사업 설명회’ 목적의 전 직원 워크숍을 2017.3.30.~31. 부산에서 실시하고 3,752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워크숍에는 고용영향평가센터 연구원 12명을 포함하여 한국노동연구원 전 직원(93명)이 참여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전직원 워크숍 집행 현황]

(단위: 원)

구분	집행액
숙소이용료(숙박비)	4,900,000
숙소이용료(조식비)	1,326,600
오만찬비	7,674,000
버스이용료	6,600,000
워크숍 대행업체이용료	16,907,000
기타	112,380
계	37,519,98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아닌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들도 고용영향평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매년 기간제 인력을 채용함에도<sup>2)</sup> 고용영향평가사업 설명회를 위한 워크숍에 이러한 기간제 인력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고용영향평가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집행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12.14. 「산업과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를 언론사에 위탁하고 행사대행비 4,892만원을 집행하였다. 해당 언론사는 이를 본지 홍보비, 각종 회의 경비, 행사 재대행비에 집행하였다.

[언론사의 토론회 행사대행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집행내역	집행액
미디어 홍보비	본지(기사), 현장취재·보도 등	25,000
경비	행사장 임차비, 회의비, 운영비 등	14,063
재대행	행사기획, 인쇄비 등	9,857
계		48,92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산업과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토론회」는 ① 산업·지역 중심 일자리 정책의 의의, ② 산업·지역 노동시장 진단 및 일자리창출 방향, ③ 산업·지역 중심 고용지원을 위한 향후과제 등의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산업과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회로, 고용영향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sup>3)</sup>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고용영향평가사업의 위탁사업비로 고용영향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2017년도에는 2017.5.10.~2017.8.9. 동안 14명의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였다.

3) 참고로 동 사업에서 2016년에는 '2016 고용영향평가 컨퍼런스', 2015년에는 '2015 고용영향평가 토론회 및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한국노동연구원은 정책 고용영향평가 시 활용할 자료수집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동일한 업체에 여러 건을 위탁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책 고용영향평가에 활용하고자 34건의 자료수집 용역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34건의 용역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12건(1억 2,700만원)은 동일한 업체와 체결하였다.

[(주)아○○○와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	금액
1	아파트 기계경비 도입 실태조사	14,000
2	아파트 공동현관 보안설비 도입 실태조사	5,000
3	이미용사 설문조사	5,500
4	원하청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관련 설문조사	29,000
5	성과공유제 관련 좌담회	3,000
6	일자리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위한 전문가 조사 (정보통신 분야)	3,600
7	일자리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위한 전문가 조사 (섬유의복 분야)	3,200
8	고용영향평가 "가구, 공예, 목재산업" 좌담회	12,000
9	조선업 이직자 중 귀농 귀촌 프로그램 이용자 관련 좌담회 및 조사	9,500
10	공예산업 인력실태조사	29,700
11	일자리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식품가공 분야)	4,000
12	해양수산분야 고용영향평가 관련 조사	8,500
계		127,0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은 해당 용역들은 모두 예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액의 계약으로,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은 공정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의계약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액인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일부 업체와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특정 업체와 다수의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위탁 대상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39건의 정책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이 중 ‘리츠 활성화의 고용영향평가’ 등 8건의 경우 외부 연구기관에 전부를 재위탁하였다.

[전체를 재위탁한 정책 고용영향평가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정책 고용영향평가 주제	재위탁	
		수탁기관	계약액
1	리츠 활성화	(사)한국건설경제산업협회	29,000
2	원하청 상생협력제도	(사)한국노동경제학회	65,000
3	신산업 투자활성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65,000
4	외국인 취업비자제도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65,000
5	고용친화적 조세제도	한국재정학회	65,000
6	대구시 신성장 산업 육성전략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65,000
7	에너지 신산업육성	(사)한국노동경제학회	65,000
8	소방, 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및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43,000

주: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가 모두 한국노동연구원 소속이 아닌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인력에 비해 고용영향평가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sup>4)</sup>

그러나 고용영향평가 전체를 재위탁할 경우 평가 지연 및 평가의 질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탁 사업자 공모 및 계약체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2017년도의 경우 전체 재위탁 건수 8건 중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2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한 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되었다.<sup>5)</sup> 이는 고용영향평가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적합한 위탁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가급적 고용영향평가의 대행기관인 한

4) 고용영향평가센터 인력은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을 포함하여 13명이며, 2015~2017년 동안 각각 32건, 12건, 39건의 정책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5) [고용영향평가 제공고 현황]

국노동연구원이 개별 고용영향평가를 총괄하도록 하고, 고용영향평가의 난이도 및 주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위탁 기준을 마련하여 총괄 관리가 어려울 경우 이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sup>6)</sup>

연번	과제명	공고일	재공고일	계약일
1	원하청 상생협력제도 고용영향평가	2017-05-18	2017-05-26	2017-06-19
2	신산업 투자활성화의 고용영향평가			2017-06-19
3	외국인 취업비자제도 고용영향평가			2017-06-19
4	고용친화적 조세제도 고용영향평가			2017-06-21
5	대구시 신성장 산업 육성전략의 고용영향평가			2017-06-22
6	에너지 신산업육성의 고용영향평가			2017-06-1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6) 참고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조사 전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으며, 하나의 조사건 중 비용/수요 등 정형화되는 분석은 외주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지역균형/정책성/종합평가 등 공공성 측면에서 평가해야하는 부분은 직접 수행하고 있다.

## 가. 현황

고용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sup>1)</sup>은 ① 연체금, ② 부정이득징수금, ③ 부당이득징수금, ④ 보조금 반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부정이득징수금은 지급 당시 허위 사실을 기초로 지급된 실업급여 등을 회수하는 것이며, 부당이득징수금은 지급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 지급 유지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계획현액은 1,188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40억원이나 이 중 1,861억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8.4%이다.

## [2017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이전수입	118,828	118,828	118,828	384,030	186,050	186,705	11,275

자료: 고용노동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규모는 최근 4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4	105,269	268,192	91,635	8,544	168,014
2015	118,393	320,829	127,803	27,258	165,768
2016	142,812	348,668	149,495	18,557	180,616
2017	118,828	384,030	186,050	11,275	186,70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고용보험기금 59-596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부정이득징수금, 보조금 반환 등이다. 2017년에는 부정이득징수금의 징수결정액이 1,477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연체금(1,205억원), 보조금 반환 등(976억원), 부당이득징수금(182억원) 순이다.

[2017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계획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연체금	34,272	120,498	25,645	10,445	84,408
부정이득징수금	38,481	147,710	60,754	783	86,173
부당이득징수금	6,320	18,188	9,369	47	8,772
보조금 반환 등	39,755	97,634	90,281	0	7,353
계	118,828	384,030	186,050	11,275	186,70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부정이득징수금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부정이득징수금의 급여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부정이득징수금 징수결정액 1,477억원 중 실업급여가 1,07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7년 부정이득징수금의 급여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실업급여	1,079,000	509,860	496	563,680
직업능력개발	17,569	4,176	15	13,378
모성보호지원	1,597	961	0	636
고용안정사업	20,694	4,632	272	15,790
합 계	1,477,110	607,544	783	861,77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1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18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0.6%으로, 2013년 0.3%에 비해 2배 증가하였다. 2017년 부정수급자는 33,653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6%인데, 2013년 1.8%에 비해 1.4배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율	
	수급자(A)	지급액(B)	부정수급자(C)	부정수급액(D)	C/A	D/B
2013	1,209,587	3,883,507	21,735	11,725	1.8	0.3
2014	1,252,677	4,156,135	22,106	13,092	1.7	0.3
2015	1,272,470	4,547,337	21,452	14,655	1.7	0.3
2016	1,278,833	4,895,396	29,022	30,868	2.3	0.6
2017	1,273,291	5,242,526	33,653	31,842	2.6	0.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되며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에 ‘부정수급 모니터링팀’을 신설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정보와 연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고용보험수사관’ 제도를 2018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가 실제로 부정수급이 증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사후 적발이 강화되어 증가한 것이라는 점에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매년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이득징수금의 수납률이 50% 미만인 등 회수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의 사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sup>3)</sup>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이전에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전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한국고용정보원의 TF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 명단을 국세청 및 4대연금에서 중복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3) 참고로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했던 영국이나 미국의 최근 경향도 적발 위주의 사후대책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평가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6.9. pp.22~23.)

### 가. 현황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sup>1)</sup>은 ‘취업상담(1단계)→직업능력 증진(2단계)→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본예산은 3,305억원으로 31.6만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추경으로 1,106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목표인원을 36.1만명으로 확대하고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였다. 2017년도에는 예산현액 4,411억원 중 3,771억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330,478	441,072	9	0	441,081	377,138	0	63,943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대상자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청년/중장년)으로 나뉜다. I 유형은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등 취업 취약 계층에 있는 만 18~69세를 대상으로 한다. II 유형(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히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II 유형(중장년)은 만 35~69세 중 일정 기준<sup>2)</sup>을 충족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도에 지원금은 I 유형(저소득) 1,252억원, II 유형(청년) 2,232억원, II 유형(중장년) 266억원 등이 집행되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일반회계 1036-301

2) ①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 영세자영업자

## 나. 분석의견

첫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종료 후 2단계 참여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로 설정(1단계), 직업능력 증진(2단계), 취업 알선(3단계)을 통해 취업 성공에 이르는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 취업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17년도 신규참여자의 참여 현황을 검토한 결과, 1단계 종료자 중 2단계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I 유형(저소득층)은 1단계 종료자 중 2단계 참여자 비율이 78.9%이며, II 유형(중장년)은 이 비율이 78.2%이다. II 유형(청년)의 경우 1단계 종료 후 참여율이 52.7%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017년도 신규참여자의 2단계 참여율]

(단위: 명, %)

구분	1단계 참여자	1단계 종료일자가 있는 참여자(A)	2단계 훈련참여자 (B)	2단계 참여율(B/A)	
I 유형(저소득)	129,872	122,247	96,420	78.9	
II 유형	청년	198,706	193,914	102,164	52.7
	중장년	23,558	22,546	17,622	78.2
계	352,136	338,707	216,206	63.8	

주: 1. 2단계 훈련참여자에게는 동 사업에서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참여자도 포함

2. 2018.3.30.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또한, 3단계 참여자 중 2단계를 참여한 자의 비중 또한 54.9%로 낮은 수준인데, 이 중 II 유형 청년이 45.1%로 가장 낮다.

[2017년도 신규참여자 중 3단계 참여자의 2단계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3단계 참여자			C/D	
	2단계 미참여	2단계 참여(C)	계(D)		
I 유형(저소득)	25,677	59,877	85,554	<b>70.0</b>	
II 유형	청년	91,343	75,017	166,360	<b>45.1</b>
	중장년	4,897	13,609	18,506	<b>73.5</b>
계	121,917	148,503	270,420	<b>54.9</b>	

주: 1. 2단계 훈련참여자에는 동 사업에서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참여자도 포함  
2. 2018.3.30.기준

국회는 2016년도 결산 심의 시 2단계 훈련참여율이 저조한 실적(계획: 70%, 실적: 56.1%)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지원에서 2단계 훈련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였으나(2018.4.), 현재 시정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체 참여자 중 저소득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체 참여자 중 I 유형(저소득) 및 II유형(중장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반면, II유형 청년의 참여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절대적인 규모도 II유형(청년)은 2013년 7만명에서 2017년 19만 8,700명으로 약 184% 증가한 것에 비해, I 유형은 2016년 14만 5,368명까지 증가하다 2017년에 13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II유형 중장년은 2013년 3만 6,000명에서 2017년 2만 3,558명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참여 인원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I 유형(저소득)	102,721 (49.2)	106,986 (55.2)	137,331 (46.5)	145,368 (39.7)	129,872 (36.9)
II 유형(청년)	70,034 (33.5)	68,262 (35.2)	133,472 (45.2)	192,725 (52.6)	198,706 (56.4)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II 유형(중장년)	36,020 (17.3)	18,497 (9.5)	24,599 (8.3)	28,061 (7.7)	23,558 (6.7)
계	208,775 (100.0)	193,745 (100.0)	295,402 (100.0)	366,154 (100.0)	352,136 (10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 심화에 따라 청년층도 취업 취약계층으로 검토되기도 하나, 저소득층이나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참여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I 유형(저소득)과 II 유형(중장년)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급여 수준이 낮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많고, 고용유지율이 개선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임금연동인센티브 지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취업자 중 50%가 월 180만원 미만의 취업처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 별 임금연동인센티브 지급 현황]

(단위: 건, %)

구분	~140만원 미만	140 이상 180 미만	180 이상 230 미만	230 이상	계
지급건수	2,088	11,462	8,343	4,973	26,866
지급비율	7.8	42.7	31.1	18.5	10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자의 고용유지율이 담보상태에 있다. 6개월 고용유지율은 60% 초반 수준이며, 1년 고용유지율은 40%대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6개월/1년 고용유지율]

(단위: 명, %)

		2013	2014	2015	2016	2017
6개월	취성패 종료 후 취업인원 중 고용보험가입자(A) (6개월 이상 경과자 수)	88,436	93,716	162,226	205,063	50,091
	취성패 종료 후 취업인원 중 고용보험 가입자(A) 중 6개월 고용유지자 수(B)	53,766	57,528	100,283	127,510	31,122
	6개월 고용유지율(B/A)	60.8	61.4	61.8	62.2	62.1
1년	취성패 종료 후 취업인원 중 고용보험가입자(C) (1년 이상 경과자 수)	88,436	93,714	161,978	159,145	5,824
	취성패 종료 후 취업인원 중 고용보험 가입자(C) 중 1년 고용유지자 수(D)	37,618	40,678	72,672	73,442	2,831
	1년 고용유지율(D/C)	42.5	43.4	44.9	46.1	48.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취업한 곳의 급여수준이 낮거나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이들이 다시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동 사업의 성과는 취업률 뿐 아니라 취업 후 수령하는 급여, 고용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자들의 급여수준 및 고용유지율이 개선되도록 양질의 취업처에 알선되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sup>1)</sup>은 참여 대학생 중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이 50% 이상인 ‘인문계 특화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사업으로, 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참여기업·대학과 협력하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6년까지는 인문계 특화과정과 일반과정(계열 무관)이 함께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인문계 특화과정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2017년 예산현액 350억 8,600만원 중 350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35,086	35,086	0	0	35,086	35,050	0	36

자료: 고용노동부

연수과정은 단기과정, 장기과정, 창직과정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과정은 대상, 과정내용, 연수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유형별 내용]

구분	대상	과정 내용	연수시간	'17 개설 과정 수
단기 과정	대학재학생 (4년제 2~3학년, 2, 3년제 1학년 2학기~)	직무이해, 기초직무훈련	200시간 내외	226개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일반회계 1051-300

구분	대상	과정 내용	연수시간	'17 개설 과정 수
장기 과정	대학졸업예정자	통합연수 (교육+현장실습+멘토링)	600시간 내외	188개
창직 과정	대학재학생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창직프로젝트 구성 및 운영	200~ 600시간	9개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인문특화과정은 과거 운영했던 일반과정에 비해 수료율이 낮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문특화과정은 2016년까지 운영한 일반과정에 비해 수료율이 낮다. 2015년의 경우, 일반과정의 수료율은 90.9%였으나, 인문특화과정은 73.3%였다. 2016년은 일반과정 수료율이 86.7%, 인문특화과정은 71.0%였다. 또한, 인문특화과정만 실시된 2017년 수료율은 73.6%이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과정 구분	참여인원 (a)	수료인원 (b)	수료율 (b/a)
2015	일반	9,171	8,339	90.9
	인문특화	1,193	874	73.3
2016	일반	7,158	6,203	86.7
	인문특화	1,771	1,257	71.0
2017	인문특화	10,014	7,371	73.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수료율을 과정별로 살펴보면, 2017년도에 운영한 423개 과정 중 수료율이 50% 이하인 과정이 80개로 전체 과정의 18.9%였다.

[2017년도 수료율별 과정 현황]

(단위: 개, %)

수료율	0	0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40 초과 50 이하	50 초과 60 이하	60 초과	계
과정 수	3	1	13	12	26	25	35	308	423
비중	0.7	0.2	3.1	2.8	6.1	5.9	8.3	72.8	1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동 사업의 수료율이 낮아지는 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인문·사회·교육·예체능 전공자를 IT/SW 등 전공 외 관련 분야로의 취업연계를 위해 기초부터 전공 졸업자 수준까지의 교육이 진행되나,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역량 차이, 긴 연수시간 등에 따른 연수과정 부적응 등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료율이 낮을 경우 당초 목표 대비 사업의 성과가 미흡해질 수 있으므로, 인문계 과정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보다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문·사회·교육·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비중이 50% 이상이면 인문특화 과정으로 인정되므로, 인문·사회·교육·예체능 계열 학생과 그 외 학생의 수료율도 별도로 관리하여 사업의 성과를 보다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약기업 취업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한 편이다.**

동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 직무훈련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운영기관<sup>2)</sup>은 연수과정 설계, 멘토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참여기업(이하 ‘협약기업’)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 시 협약기업 및 참여대학과의 협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2015년 인문특화과정과 2016년 인문특화 장기과정의 협약기업 취업률이 각각 3.9%, 5.6%로 낮은 수준이었다.<sup>3)</sup>

2) ‘운영기관’이란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 훈련기관 등의 기관으로, 사업수행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별 과정 운영을 위탁한 기관을 의미한다.

3) 2015년에는 장기/단기 과정 구분 없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만 과정을 운영하였다.

[인문특화과정(장기과정)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구분00	참여인원 (a)	수료인원 (b)	수료율 (b/a)	취업 인원 (c)	협약기업 취업인원 (d)	취업률 (c/b)	협약기업 취업률 (d/b)
2015	1,193	874	73.3	472	34	54.0	3.9
2016	1,771	1,257	71.0	724	71	57.6	5.6

주: 2015년은 장/단기 과정의 구분이 없었으며, 2016년은 장기과정을 대상으로 함. 2017년은 취업  
연계 중에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협약기업으로의 취업률이 부진할 경우 국가기반전략산업 직종훈련 등 타 직무  
훈련사업과의 차별성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으며, 협약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의 수요  
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 촉진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협약기업 취업률이 부진한 원인을 검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협약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의 내역사업인 직업지도사업<sup>1)</sup>에서 청소년 및 성인 진로 직업설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 출연사업이다. 2017년도 계획현액은 29억 2,800만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5,049	5,049	0	5,049	5,049	0	0
직업지도사업	2,928	2,928	0	2,928	2,928	0	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서 워크넷 직업·진로 포털(<http://www.work.go.kr/jobMain.do>)을 운영하며, 직업심리검사, 진로동영상, 직업·학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동 사업은 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실 내 3개 팀(미래직업연구팀 10인, 생애진로개발팀 12인, 청년정책허브지원단 13인)이 담당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직업·진로 포털과 교육부의 커리어넷 사이트는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을 운영하고 있는데, 커리어넷에서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mailto: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고용보험기금 1051-350의 내역사업

도 워크넷의 직업·진로 포털과 유사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직업·학과정보, 진로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커리어넷은 중·고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반면, 워크넷은 대학재학생 이상에 대한 직업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커리어넷에는 초·중·고등학생용 심리검사·주니어직업정보·진로교육자료 등 중·고등학생 이하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들이 있으며, 워크넷에서는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 강소기업 관련 동영상 등 성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토하면, 실질적으로 양 사이트에서 유사하게 제공되는 항목이 다수 있다.

예를 들어, 직업(진로)심리검사의 경우 워크넷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커리어넷에서도 청소년용 심리검사와 함께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업정보와 학과정보도 세부 내용에서는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sup>2)</sup>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상담과 진로동영상은 양 사이트 모두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전체 유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교육부 커리어넷 비교]

	워크넷 직업진로 포털	커리어넷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교육부
운영 기관	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예산	고용보험기금 7억 4,000만원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비 15억원 ('18년)
주요 서비스 대상	대학 재학생 이상	중·고등학생
특징	채용, 자격, 훈련 정보 등 상세 제공	중·고등학생이 전체 회원의 85%

2) 워크넷의 직업정보 및 학과정보는 커리어넷과 달리 직업-일자리(채용)-자격-훈련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 직업진로 포털	커리어넷
공통 서비스	심리 검사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대학생/일반)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직업 정보	하는 일, 관련교육/자격, 직업전망 ※ 워크넷 817종, 커리어넷 415종 제공	
	학과 정보	학과개요, 개설대학, 취업률, 졸업 후 진출분야 ※ 워크넷 130종, 커리어넷 522종 제공	
	진로 상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대상 온라인 진로상담 제공	
	진로 동영상	청소년, 대학생, 성인 대상 직업소개 및 학과소개 등 동영상 제공	

자료: 워크넷 진로직업 포털 및 커리어넷을 바탕으로 재작성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각자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예산 운용 및 정보 제공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로·직업 정보를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양 사이트를 연계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sup>1)</sup>의 내역사업인 직업정보제공사업에서 신직업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정보제공 사업의 2017년 계획현액은 21억 2,1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 [2017회계연도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5,049	5,049	0	5,049	5,049	0	0
직업정보제공	2,121	2,121	0	2,121	2,121	0	0

자료: 고용노동부

‘신직업 발굴 및 확산’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신직업을 발굴하면 각 정부부처가 이를 평가·최종 검토하여 후보 직업군을 선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최종 신직업을 선정한다.<sup>2)</sup> 최종 선정된 신직업은 관련 부처에서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확산을 추진한다.

2017년에 신직업 발굴 및 확산 사업 관련 집행 예산은 6억 5,5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총 17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한국고용정보원 출연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 [신직업 발굴 및 육성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	110	325	655	655	1,74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 1) 코드명: 고용보험기금 1051-350
- 2) 이때 향후 성장가능성, 국내도입 후 활성화가능성 및 고용창출가능성, 기존 직업과의 차별성 등이 고려된다.

## 나. 분석의견

첫째, 정부가 발굴한 신직업 수는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며, 부처별 육성방안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2013)」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개의 신직업을 발굴하여, 총 500개의 신직업 발굴을 목표로 하였다. 그런데 2013~2015년에는 매년 100여개의 신직업을 발굴하였으나, 2016년 67개, 2017년 35개로 발굴 신직업 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500개에 미치지 못하는 417개의 신직업만이 발굴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4년 44개, 2015년 17개, 2016년 10개 등 총 71개의 신직업을 선정·발표하였는데,<sup>3)</sup> 매년 선정 수가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새로운 신직업을 선정하지 않았다.

[연도별 신직업 발굴·선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발굴 수	102	113	100	67	35	417
선정 수	-	44	17	10	-	7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또한, 각 부처는 관련 신직업에 대해 부처별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육성방안의 추진실적에 대해 2016년 이후 별도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sup>4)</sup>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개별 부처에서 신직업 선정 이후 육성 노력이 미흡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신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는 신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 통계 등은 관리 되고 있지 않아 실적을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3) 최종 선정된 신직업으로는 산림치유지도사, 임신출산육아전문가, 기업재난관리자, 문신아티스트, 원격진료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4)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 각 부처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대신 71개 선정된 신직업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즉, 동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성과가 저조하고, 발굴 후 사후 관리와 활용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신직업 위원회’와 ‘미래 유망직업 발굴·육성추진단’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고용노동부는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016)」에서 2016년 11월 구성된 ‘민관합동 신직업 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산업변화 및 산업인력수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3년에 구성되었던 관계 부처 협의체인 ‘미래 유망직업 발굴·육성추진단’을 운영하여 신직업 발굴 및 도입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런데 2017년에 해당 위원회 및 추진단의 운영 실적이 없다. 민관합동 신직업 위원회는 2016년 구성 후 2016년 11월 30일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공유, 제3차 신직업 발굴·육성계획 검토를 위해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회의체 운영 실적이 없다. 미래 유망직업 발굴 육성추진단은 2016년에 향후 체계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계획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신직업 관련 회의체 운영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미래 유망직업 발굴 육성추진단	2회 (3.7., 9.25.)	-	-	-
민관합동 신직업 위원회	-	-	1회 (11.30.)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계획에 비해 민간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당초 기대한 정보 공유 및 부처간 연계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용노동부는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sup>5)</sup>

5)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민관합동 신직업 위원회’와 ‘미래 유망직업 발굴·육성추진단’과 같은 특정 협의체를 최근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미래 유망직업 발굴·육성추진단’ 기능과 유사한 관계부처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민관합동 신직업 위원회’ 기능과 유사한 직업별 종사자, 전문가, 협회 등 다양한 민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가. 현황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sup>1)</sup>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신규채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신규 신청이 종료되는 사업이다.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도입 시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중소기업은 연 1,080만원을,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집행률은 2015년 14.7%, 2016년 35.0%로 다소 부진하였으나, 2017년에는 계획액 359억 3,700만원 중 358억 5,9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세대간상생 고용지원	35,937	35,937	0	35,937	35,859	0	78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은 2016년 말 지원 수준을 변동하였는데, 이에 따른 지원 규모 증가가 임금피크제 등 도입 효과에 따른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대간상생고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2016.9.1.)하여 지원 수준을 변동하였다. 당초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임금인상 자제 적용 근로자수 1명당 지원금 지급 청년을 1명 매칭하였으나, 이를 3명까지 매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고용보험기금 1060-360

[세대간상생고용 지원금 제도 변경]

유 형	지원금 지급 인원	
	제도 변경 전	제도 변경 후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 수 × 1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 수 × 3
임금체계 개편	개편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50세 이상 근로자 수 × 1	개편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50세 이상 근로자 수 × 3
임금인상 자제	임금인상 자제 고임금 근로자 수 × 1	임금인상 자제 고임금 근로자 수 × 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적용근로자 수(이하 ‘적용근로자 수’) 대비 청년 신규채용자 지원 인원 비율이 1이었으나, 2016년에는 1.52, 2017년에는 1.70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제도 적용근로자수에 대비 청년 신규채용자 지원 비율이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적용근로자 수 대비 청년 신규채용자 지원이 1.45였으나, 중견기업은 이 비율이 1.78, 대기업은 2.38이었다.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연도별 지원금 지급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적용 근로자 수(a)	청년신규 채용자 지원(b)	b/a	적용 근로자 수(c)	청년신규 채용자 지원(d)	d/c	적용 근로자 수(e)	청년신규 채용자 지원(f)	f/e
중소	3	3	1	675	804	1.19	1,076	1,555	1.45
중견	-	-	-	333	484	1.45	515	924	1.79
공공	-	-	-	1,733	2,158	1.25	2,151	2,914	1.35
대기업	9	9	-	763	1,874	2.46	1,425	3,389	2.38
계	12	12	1	3,504	5,320	1.52	5,167	8,782	1.70

주: ‘적용근로자 수’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적용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청년 신규채용자 지원’은 적용근로자 수에 대하여 인건비가 지급된 신규채용 청년 수를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청년 신규채용자에 대한 지원이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계획에 없던 인원을 채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따른 청년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

에 대한 일치된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요건 완화는 사중손실<sup>2)</sup>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사업은 2018년도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향후 이와 같은 고용장려금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지원 요건 변동에 따른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요건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2) 고용정책에서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이란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히 고용이 창출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을 의미한다.

## 가. 현황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sup>1)</sup>은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노동분쟁(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정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50억 8,800만원이며, 이 중 47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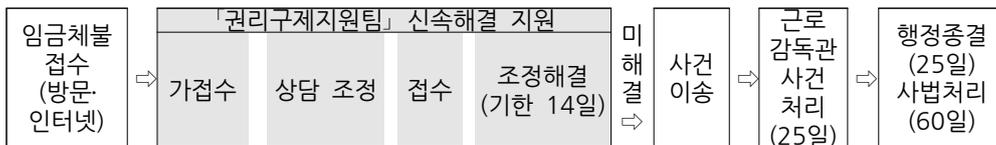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근로조건개선지원	9,815	9,815	233	△394	9,654	9,223	0	431
권리구제 지원팀 운영	5,422	5,422	0	△334	5,088	4,739	0	349

자료: 고용노동부

권리구제지원팀이란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7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근로감독관이 처리하지 않아도 민간전문가 등의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소액의 임금체불 사건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권리구제지원팀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이송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권리구제지원팀 사건 처리도]



자료: 고용노동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 1) 코드명: 일반회계 3031-302의 내역사업
- 2)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7조의2(권리구제 지원팀 운영) 취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청산 등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관서에 권리구제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권리구제 지원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권리구제지원팀은 변호사, 노무사, 민간전문가<sup>3)</sup>로 구성되는데, 2017년에는 167명이 권리구제지원팀으로 활동하였다.

## 나. 분석의견

**권리구제지원팀 조정해결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권리구제지원팀의 2017년의 조정해결률은 권리구제지원팀이 처음 시작된 2014년의 66.3%에 비해 14.8%p 낮은 51.5%로, 조정해결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권리구제지원팀 조정해결 실적]

(단위: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민원	307,498	313,449	359,540	372,330
조정 대상 건수(a)	40,747	73,458	101,989	98,289
조정 해결 건수(b)	26,997	48,365	55,024	50,121
<b>해결률(b/a)</b>	<b>66.3</b>	<b>65.8</b>	<b>54.0</b>	<b>51.5</b>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민간조정관 1인당 조정건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조정관 현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8명→99명→117명→11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긴 하나, 권리구제지원팀 조정 대상 건수는 2014년 4만건에서 2017년 9만 8천건으로 증가하여 민간조정관의 증가율보다 더 크다. 이에 따라 민간조정관 1인당 조정건수가 2014년 416건에서 2017년 878건으로 증가하였다.

[민간조정관 1인당 조정건수]

(단위: 건,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정 대상 건수(A)	40,747	73,458	101,989	98,289
민간조정관 현원(B)	98	99	117	112
<b>민간조정관 1인당 조정건수(A/B)</b>	<b>416</b>	<b>742</b>	<b>872</b>	<b>878</b>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3) 민간전문가는 학력, 전공 및 경력에서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나, 노무 관련 교육 수료 여부, 노동 관련 경력 및 자격 소지 시 우대된다.

조정해결률이 낮아질 경우, 당초 권리구제지원팀 도입의 기대효과인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노무행정서비스의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지원팀 내의 노하우 공유 및 권리구제지원팀 차원에서 조정이 어려운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으로의 빠른 이송 등 조정해결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sup>1)</sup>은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성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집중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 사업이다.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의 2017년도 계획현액은 356억 9,900만원이며, 이 중 354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업종별 재해예방	46,631	46,631	0	46,631	46,046	0	585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8,856	8,856	0	8,856	8,718	0	138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26,843	26,843	0	26,843	26,725	0	118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과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단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 수행, 중대 재해 원인조사 등을 수행한다.

한편, 50인 미만의 안전·화학·서비스 분야 사업장 및 공사규모 3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점검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한다. 민간위탁기관은 사업장의 재해원인 및 대책 제시 등의 기술지도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때 집중관리 대상사업장은 과거 추세에 따른 업종·규모별 재해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 사망재해 다발 기인물 다소 보유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의 내역사업

[사고성재해 사업개요]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대상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고성 사망 및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선정	50인 미만의 안전·화학·서비스 분야 사업장 및 공사규모 3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
예산(2017)	88억 5,600만원	268억 4,300만원
사업장 수 (2017)	18,061개소	329,972개소
사업 방식	공단이 직접 기술지도	위탁업체 선정 후 위탁업체를 통한 기술지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017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2.6만개소에 대한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를 계획하였다. 이 중 건설업 물량은 6만개소로, 전체의 18.4%이다.

[2017년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사업 현황]

(단위: 개소, 개,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물량 (계획)	위탁 업체 수	수행 요원 수	물량 (계획)	위탁 업체 수	수행 요원 수	물량 (계획)	위탁 업체 수	수행 요원 수
건설업	60,000	28	168	60,000	27	181	60,000	27	167
제조업	56,000	138	409	56,000	147	444	56,000	135	428
서비스업	290,000	27	433	290,000	28	462	210,000	30	378
계	406,000	166	577	406,000	174	625	326,000	162	59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나. 분석의견

사고성재해 발생률이 높은 건설업 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발생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사업의 성과를 볼 때 건설업의 지원 사업장의 재해 발생률<sup>2)</sup>이 1.28%로, 제조업 0.8%나 서비스업 0.56%에 비해 높다. 또한, 공단을 통

해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의 재해 발생률 0.65%에 비해서도 높다.

[2017년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대상 사업장의 지원 성과(재해 발생률)]

(단위: 명, %)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공단	위탁	공단	위탁	공단	위탁
지원 사업장 근로자 수(a)	392,662	<b>188,155</b>	293,089	389,481	264,771	370,123
지원 사업장 재해 발생자 수(b)	2,556	<b>2,417</b>	2,082	3,124	974	2,083
재해 발생률(b/a)	0.65%	<b>1.28%</b>	0.71%	0.80%	0.37%	0.5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건설업 집중관리 위탁사업의 성과가 다소 저조한 원인으로 건설업 재해 발생의 구조적인 측면 및 위탁사업 자체의 운영 미흡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우선, 건설업의 재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사고성재해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및 기타의 사업에 비해 건설업의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sup>3)</sup>이 높다. 2017년 건설업 재해율은 0.84%로, 제조업(0.61%)이나 기타의 사업(0.32%)에 비해 높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건설업의 경우 1.66‰로, 제조업(0.5‰), 기타의 사업(0.15‰)보다 높다.

[2017년 사고성재해 발생 통계]

(단위: 개소, 명, %, ‰)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고사망 만인율
건설업	<b>397,405</b>	<b>3,046,523</b>	<b>25,649</b>	<b>579</b>	<b>0.84</b>	<b>1.66</b>
제조업	368,305	4,149,966	25,333	433	0.61	0.50
기타의 사업	1,597,079	9,510,716	30,595	318	0.32	0.1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재해 발생률 = 지원 사업장 재해 발생자 수/지원 사업장 근로자수

3)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며,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만 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업 부문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재해율이 높게 나타난다.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각각 1.55%, 0.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9인, 10~29인 사업장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건설업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이 0.05%인데, 50~99인 사업장에서는 재해율이 0.51%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3.07%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60배이다.

[2016년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재해율]

(단위: 명, %)

구분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5인미만	346,187	10,614	3.07	381,184	5,914	1.55	1,878,761	10,621	0.57
5~9	240,418	4,610	1.92	463,411	4,595	0.99	1,468,841	5,405	0.37
10~29	492,657	5,753	1.17	901,086	7,051	0.78	2,046,849	7,090	0.35
30~49	228,240	2,019	0.88	462,351	2,423	0.52	832,974	2,495	0.30
50~99	296,387	1,505	0.51	535,860	2,075	0.39	839,298	1,892	0.23
100~299	569,162	1,210	0.21	632,809	1,754	0.28	1,002,788	1,434	0.14
300~499	318,357	372	0.12	156,105	318	0.20	310,658	346	0.11
500~999	300,051	293	0.10	139,626	213	0.15	334,515	225	0.07
1,000인이상	361,400	194	0.05	564,221	1,799	0.32	465,695	184	0.04

자료: 국가통계포털

즉, 타 업종보다 건설업 부문의 재해율이 높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타 업종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sup>4)</sup>

따라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부문의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사업의 성과 및 사고성재해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규모 건설업에서의 재해 발생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중 건설업 부문은 근로자 수가 아닌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3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통계에 비추어 볼 때 공사 금액이 작은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가. 현황

일자리위원회 운영 사업(신규)<sup>1)</sup>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비 48억 1,700만원 중 33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일자리위원회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자리위원회 운영	0	0	0	4,817	4,817	3,348	0	1,469

자료: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민간 부위원장 1명, 당연직 15명과 위촉직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sup> 또한, 일자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일자리기획단을 두고 있는데, 일자리기획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며 정책개발부 및 운영지원부 등 현원 3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법령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7.5.16. 시행)」이 2017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7년 5월 23일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를 신청하였고 2017년 5월 24일에 예비비가 배정되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일반회계 7045-301

2) 당연직 위원은 정부부처의 장(11명)·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3명)·일자리수석비서관이며, 위촉직 위원은 근로자대표(3명)·사용자대표(3명)·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명)이다.

## 나. 분석의견

첫째,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이 일부 저조하였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시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사유로 발생한 시급한 지출을 이·전용을 통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하는 것으로,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예비비 집행률은 69.5%으로, 직무수행경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비목에서의 집행이 부진하다.

[2017회계연도 일자리위원회 운영 사업의 비목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목-세목	목 명	이·전용 등	예비비 (A)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110	인건비	0	367	367	265	102	72.2
210	운영비	△12	3,060	3,112	2,066	1,046	67.5
220	여비	0	107	107	40	67	37.4
240	업무추진비	0	177	177	129	48	72.9
250-02	직무수행경비	12	30	42	42	0	140.0
260-01	일반연구비	0	500	500	307	193	61.4
320-09	고용부담금	0	11	11	6	5	54.5
420-03	시설비	0	241	241	238	3	98.8
430-01	자산취득비	0	260	260	255	5	98.1
합 계		0	4,817	4,817	3,348	1,469	69.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구체적으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은 임기제공무원 및 상용근로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다. 직제 상 일자리위원회 임기제 공무원은 7명인데, 이들의 채용이 7월에 완료되어 3억 6,000만원의 인건비 중 1억원이 불용되었다.

운영비는 전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고, 각종 계약의 낙찰차액 등에 따라 10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분야

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sup>3)</sup> 2017년에는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만 구성되어 1차례 전문회의를 개최하였다.<sup>4)</sup>

[일자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 현황]

구분	구성일자	개최일자(횟수)
일자리위원회	'17.6.20.	'17.6.21, 8.8, 10.18, 12.12. (4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17.12.1.	'17.12.20. (1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일반연구비는 연구가능 기간이 짧아 소액 단기 용역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예비비 5억원 중 1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에 총 20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연구용역 규모는 700만원~2,000만원 규모의 소액이며 연구 기간은 평균 2.5개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예비비를 집행 가능한 기간이 6개월 정도였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수집·공유하기 위해 지역일자리 대토론회, 전국 일자리 워크숍 등 성격이 유사한 행사들을 연말에 집중 개최하였는데, 이들 행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전문·특별위원회 구성 전에는 일자리문제의 시급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중심의 간담회를 75회 개최하였으며, 2018년에 공공일자리위원회, 민간일자리위원회 등의 구성이 추가로 완료되었다.

[일자리위원회의 2017년도 행사 개최 현황]

행사명	목적	일시	장소
전국일자리 워크숍	일자리정책 인식 공유, 모범사례 공유 등	11.13.	서울
지역일자리 대토론회	지역의 일자리창출 역량 결집	10.25. 11.28. 12.21.	강원 충북 전남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	공공기관의 일자리 우수모델 발굴·공유	12.14.	서울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12.15.	-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 공공부문의 우수 일자리 사례 발굴·공유	12.19.	서울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자리위원회가 개최한 행사들은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주요 행사 개최 예산은 일자리위원회가 1억 2,500만원, 공동주최기관에서 20억 2,200만원을 집행하여 상당부분 공동주최기관의 예산을 활용하였다.

[일자리위원회 주요 행사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번	행사명	공동주최기관	집행액	
			일자리 위원회	공동 주최
1	전국 일자리 워크숍	-	41	-
2	지역일자리 대토론회	강원도	0.9	20
		충청북도	0.3	14
		전라남도	-	10
3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	기획재정부	3	8
4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한국산업 인력공단	44	6
5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	36	1,964 <sup>1)</sup>
계			125.2	2,022

주: 1) 시상금(특별교부세) 1,950백만원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일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던 기존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 중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공유하고 지방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사업 목적과 수행 방식이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sup>5)</sup>과 유사하다.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유사 사업 비교]

구분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주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목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창출, 질 개선, 인프라 개선 등 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일자리 실적 평가
비고	대상(「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경상남도) ) 등 우수사례 15건 선정	대상(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등 선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이러한 행사들의 개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 환기 차원에서 효과적일 수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새 정부출범(17.5.10) 이후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로 연말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사업실적 평가에 따른 포상 등이 연말에 개최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설치 목적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 하는데 있으므로, 행사성 사업 추진 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효과성 및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 비목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를 집행함에 있어, 다른 비목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

5)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사업(일반회계 1032-302)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 있다.6) 또한, 해당 지침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일반용역비(210-14목)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7)

그런데 일자리위원회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용역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였다. 예를 들어, 홍보영상제작 7,280만원, 제3차 일자리위원회 행사대행 비용 지급 4,600만원 등은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및 행사운영을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반용역비(210-14목)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하였다.8)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 용도로 집행한 내역]

(단위: 백만원)

원인행위 일자	건명	금액
12.28.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홍보영상제작	73
11.9.	제3차 일자리위원회 행사 대행	46
12.23.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12.19) 행사 대행	37
11.23.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행사 대행	33
11.19.	도전! K-스타트업 2017' 일자리 코너 제작	30
11.23.	일자리위원회 MI 디자인 개발	20
12.23.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행사 대행	20
12.13.	2017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 행사 대행	20
12.7.	2017 부산일자리박람회 홍보부스 제작	20
9.8.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준비 대행	19
12.15.	전국일자리위원회 워크숍 홍보 동영상 제작	6
11.8.	제3차 일자리위원회 동영상 홍보 제작	4
11.1.	일자리위원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정책간담회 행사 대행	3
9.8.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다과회 행사 대행	2
계		333

주: 집행액이 큰 순서대로 정렬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17.1., p.150.

7)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17.1., p.258.

8) 이에 대해 일자리위원회는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2019년도 정부 안에는 일반용역비를 구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비목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은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자리위원회는 지침을 준수하여 적합한 비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 현황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022년 한시) 사업<sup>1)</sup>은 고용창출장려금의 내역사업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4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4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고용창출장려금	254,024	330,148	0	330,148	312,081	0	18,067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운영비	0	4,500	0	4,500	1,425	0	3,075
	8,008	8,308	0	8,308	7,349	25	934

주: 운영비는 추경 83억 800만원 중 3억원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관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900명분의 장려금 4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90명분에 대한 장려금 14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31.7%였다.

[2017년도 장려금 집행 실적]

(단위: 명, %, 백만원)

인원			예산		
목표(A)	실적(B)	B/A	편성(C)	집행(D)	D/C
900	290	32.2	4,500	1,425	31.7

주: 예산에는 운영비를 제외한 지원금 편성·집행액만 포함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고용보험기금 1046-350의 내역사업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 시행 초기임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청년 3명을 신규로 채용할만한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기업을 선별하였기<sup>2)</sup>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8년 추경 편성으로 지원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기업 규모에 따라 1명 고용시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완화하였으며, 지원금 지급 규모를 인상하는 등 제도 개편을 실시하였다.<sup>3)</sup>

지원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당초 목표했던 청년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2) 2017년에는 기업의 참여 신청 후 심사위원회에서 업체 규모, 성장유망업종 여부 등 기업의 역량을 검토하여 참여 기업을 선정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요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2017년도 장려금 신청 및 승인 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분	공모기간	참여 신청 기업 수	승인기업 수	2017년 지급 시작 기업 수
1차	'17.08.17.~'17.09.07.	1,820	936	163
2차	'17.09.20.~'17.10.17.	676	378	56
3차	'17.11.08.~'17.11.30.	852	722	28
계		3,348	2,036	24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2018년 추경)
지원 대상	성장유망업종	전체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추가
지원요건	3명 고용 시 1명 지원	(30명 미만) 1명 고용시부터 지원 (30~99명) 2명 고용시부터 지원 (100명 이상) 3명 고용시부터 지원
지원기간	3년	최동
지원금액	1명당 연 667만원 (3명 기준 연 2,000만원)	1명당 연 900만원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1명당 연 1,400만원
한도	기업당 9명(+1명 기준 3명)	기업당 90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가. 현황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은 일반계고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3학년을 위한 별도의 훈련 과정으로,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을 위해 62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다.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사업<sup>1)</sup>과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sup>2)</sup>에서 수행하고 있다.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의 2017년도 집행액은 621억 3,300만원이다.

[2017년회계연도 실업자능력개발지원 및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실업자능력 개발지원	59,986	65,973	43	0	66,016	63,989	0	2,026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546,079	590,936	26	0	590,962	590,543	0	419

자료: 고용노동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사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좌제 훈련을 운영하며,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좌제 훈련과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이하 ‘국기훈련’<sup>3)</sup>)에 참여하는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일반회계 1131-300

2) 코드명: 고용보험기금 1146-350

3)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훈련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은 수강 기간이 6~10개월로 길며, 일반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이 자부담이 있는 반면, 동 사업은 훈련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일반실업자 과정의 교육 훈련비 지원액이 119만원인데 반해,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의 경우 훈련 기간이 길고 자부담이 없어 훈련비를 평균 710만원 지원한다.

2017년에는 상반기 과정 6,726명, 하반기 과정 509명을 운영하였다.

[2017년도 비진학 일반고특화과정 실시 현황]

(단위: 명, %)

	상반기 과정(10개월)			하반기 과정(6개월)		
	계좌제	국기	소계	계좌제	국기	소계
신청인원	4,622	5,477	10,099	669	854	1,523
실시인원(A)	3,721	3,005	6,726	358	151	509
중도포기인원 (출석률 80% 미만)	409	332	741	60	27	87
조기취업인원(a)	49	74	123	5	7	12
수료인원(B)	3,270	2,665	5,935	296	124	420
수료율[B/(A-a)]	89.1	90.9	89.9	83.9	86.1	84.5

주: 계좌제는 일반회계(실업자능력개발지원)과 고용보험기금(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의 계좌제 훈련 참여 인원을 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일부 운영 과정의 경우 취업률이 저조하다.**

2015~2016년에 공통적으로 운영한 16개 과정 중 평균 취업률이 60% 미만인 과정은 5개(정보통신·제과제빵바리스타·문화콘텐츠제작·간호·항공선박정비)이다.

동 사업은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고 정규 과정 수업을 수강하는 대신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훈련의 질적 수준 및 취업률 등의 성과가 학생들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의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연번		취업률			수료인원		
		2015	2016	평균	2015	2016	2017
1	항공선박정비	30.4	25.0	27.7	158	503	554
2	간호	34.9	41.7	38.3	126	187	90
3	문화콘텐츠제작	56.0	52.3	54.2	116	197	447
4	제과제빵바리스타	50.6	58.1	54.4	445	835	1,014
5	정보통신	58.0	60.1	59.1	155	194	200
6	생산품질	66.2	65.9	66.1	91	60	83
7	디자인	72.3	58.6	65.5	203	119	272
8	음식서비스	66.1	67.6	66.9	1,188	803	1,318
9	미용	66.0	74.7	70.3	730	545	1,044
10	전자	77.8	64.8	71.3	54	35	18
11	전기	84.4	60.7	72.6	191	116	233
12	용접	68.4	77.1	72.8	48	37	64
13	자동차	74.3	74.0	74.2	300	222	331
14	기계	72.0	76.9	74.5	295	227	-
15	금형	85.6	84.0	84.8	169	142	171
16	건축	87.1	85.8	86.5	113	97	104
평균		65.6	64.2	65.0	274	270	396

주: 1. 2015, 2016년 평균 취업률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  
 2. 취업률은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한편,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이 저조한 과정의 수료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과정의 경우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바로 취업하지 못한 인원이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취업률이 20~30% 수준인 항공선박정비 과정의 경우 수료인원이 매년 증가하여 2015년 158명 대비 2017년에는 554명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취업률이 50%대인 문화콘텐츠제작·제과제빵바리스타·정보통신 과정의 경우에도 과정 수료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비진학일반고특화과정이 일정 수준의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학교에서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 시 과정별 취업률, 임금수준 등 훈련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여 사업 대상자인 학생들이 보다 신중하게 진로·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인원의 1년 고용유지율이 10%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인원의 고용유지율을 검토한 결과, 6개월 고용유지율은 70~80% 수준이나, 1년 고용유지율은 10~20%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 사업에 참여한 훈련생들의 1년 고용유지율은 국기 과정은 11.6%, 계좌제 과정은 18.6%로 평균 14.9%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한 3,437명 중 취업 후 1년 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300명 미만으로 참여 인원의 10% 미만이다.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의 수료율,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현황]

(단위: 명, %)

과정 시작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좌제	국기	소계	계좌제	국기	소계	계좌제	국기	소계
실시인원(A)	1,803	1,634	3,437	3,367	2,606	5,973	4,079	3,156	7,235
중도포기인원	339	197	536	427	248	675	469	359	828
수료인원(B)	1,464	1,437	2,901	2,940	2,358	5,298	3,566	2,789	6,355
수료율(B/A)	81.1	87.9	84.4	87.3	90.4	88.6	87.4	88.4	87.8
취업인원(C)	901	982	1,883	1,987	1,435	3,422	-	-	-
취업률(C/B)	61.5	68.3	64.9	67.5	60.8	64.5	-	-	-
고용 유지율	6개월	73.3	80.1	76.9	73.5	82.1	77.1	-	-
	1년	18.6	11.6	14.9	-	-	-	-	-

주: 1. 중도포기인원은 수료율 80% 미만 인원을 의미  
 2. 2016년의 1년 고용유지율 자료는 집계 중에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직종 성격상 후속적인 고등훈련이 필요한 경우나, 군입대 문제 등 구직 연령의 특성에 따라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년 고용유지율이 6개월 고용유지율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질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1년 고용유지율이 6개월에 비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이 2015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율을 비롯한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질적 효과 검토를 위해 훈련 과정의 취업 관련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가. 현황

해외취업지원 사업<sup>1)</sup>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478억 2,600만원이며 이 중 47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년도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외취업지원	45,776	47,826	0	0	47,826	47,169	0	657
K-Move 스쿨	26,900	26,900	0	0	26,900	26,250	0	650
민간해외 취업알선	1,350	1,350	0	0	1,350	1,350	0	0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6,750	8,100	0	0	8,100	8,100	0	0
해외통합 정보망	1,005	1,305	0	0	1,305	1,305	0	0
국내해외 취업지원	2,787	2,787	0	0	2,787	2,787	0	0
해외취업 촉진인프라	5,130	5,530	0	0	5,530	5,530	0	0
운영비	1,854	1,854	0	0	1,854	1,847	0	7

자료: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의 내역사업은 ① K-Move 스쿨, ② 민간해외취업알선, ③ 해외취업정착지원금, ④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⑤ 국내해외취업지원, ⑥ 해외취업촉진 인프라이 지원 등이다.

조사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일반회계 1035-304

K-Move 스쿨은 대표적인 해외취업지원 사업으로, 국내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을 교육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민간해외취업알선은 공단에서 민간의 알선기관을 선정하여 해외로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이며,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취업 후 1개월·6개월·12개월마다 취업 유지 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내해외취업지원과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은 각각 국내 해외취업센터 2개소와 해외 K-Move 센터 17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일자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고용유지율 등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일자리사업은 취업 후 6개월 또는 1년의 고용유지율을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K-Move 스쿨 사업과 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 등 해외취업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율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K-Move 스쿨 사업과 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은 운영 기관에 위탁을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양 사업은 각각 운영 종료 후 6/12개월과 취업 후 6개월 시점까지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모두 위탁기관이 개별적인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며 해외 취업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 취업과 달리 해외 취업 시 고용유지율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국내 취업 시에는 고용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유지율 등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나, 해외 취업 시 이와 같은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해외취업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18년도 추경을 통해 취업 후 12개월 되는 시점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취업 후 1년까지의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원금은 34세 이하이고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

특이 8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에만 지원되므로 이를 통한 고용상황 파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지원금이 예산 사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이 종료되며, 개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고용유지율 파악은 불가능하다.<sup>2)</sup>

따라서 동 사업은 고용유지율 관리가 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일자리사업으로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취업촉진 인프라 지원’ 사업 내 한국무역협회 K-Move 센터의 경우 취업 인원이 일본과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인 수요가 있는 기타 국가로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무역협회(KITA)에 K-Move 센터<sup>3)</sup>를 설치하여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국무역협회에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K-Move 센터의 운영실적은 2016년에 비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sup>4)</sup> 일본-베트남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취업 실적이 거의 없다.

[2017년 한국무역협회 K-Move 센터 취업 실적]

(단위: 명)

구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계
취업인원	59	17	5	1	1	1	84

주: 취업실적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실적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 15일 발표한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에서 일본과 아세안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하기로 한 것과 같이,<sup>5)</sup> 한국무역협회를 통한

2) 예를 들어, 2017년에 K-Move 스쿨을 통해 취업한 인원이 1,554명이고, 2회차 지원금 수령 인원이 313명이라고 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용유지율이 약 20.1%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3) 고용노동부는 한국무역협회 K-Move 센터 이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국내 2곳의 K-Move 센터(서울·부산)를 운영하고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민간경상보조를 수행하여 해외 16개 K-Move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 2016년도 출국인원은 15명이었다.

K-Move 센터 운영도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및 동남아 기업으로의 취업에 중심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포털사이트인 월드잡플러스 구인 등록 인원 대상 통계에 따르면 일본과 베트남에 대한 취업 희망 인원이 각각 응답자의 34.6%, 11.7%이긴 하나, 미국, 싱가포르 등 기타 국가로의 수요도 있다는 점에서 취업 실적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sup>6)</sup>

더욱이 한국무역협회가 해외에 11개 지부<sup>7)</sup>를 두고 있어 다양한 국가로의 해외 취업을 지원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선호도와 국가별 취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 정부, 2018.3.15., p.2.

6) [취업 희망 국가별 월드잡플러스 구인 등록 인원 통계(2017)]

(단위: 명)

국가	일본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중국	캐나다	독일	영국	UAE
희망 인원	2,879	2,749	974	882	829	738	645	351	199	197
국가	인도 네시아	태국	말레 이시아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기타	미기재	전체
희망 인원	179	152	136	133	131	119	110	1,028	10,566	22,99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7) 중국 3개소(베이징, 상하이, 청두), 미국 2개소(뉴욕, 워싱턴), 일본 1개소(도쿄), 베트남 1개소(호치민), 인도 1개소(뉴델리), 인도네시아 1개소(자카르타), UAE 1개소, 벨기에 1개소(브뤼셀)

## 가. 현황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sup>1)</sup>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속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할 경우, 이와 비례한 금액을 정부와 기업이 적립하여 약정 기간 만료 후 적립금과 이자를 청년에 지급한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686억원이며 이 중 314억원을 집행하였다.<sup>2)</sup>

[2017회계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년내일 채움공제	47,592	70,915	0	△ 2,314	68,601	31,434	0	37,167

주: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2017년까지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 내에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함께 편성하다가 2018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분리 편성

자료: 고용노동부

2017년도에는 약정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만을 운영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청년이 30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간 총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이다.<sup>3)</sup>

한편, 정부의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약정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가 신설되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명: 일반회계 1061-350

2) 2017년까지는 정부의 기업 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므로, 2017년도 예산 및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였다.

3) 이 때, 정부는 기업에게 참여 청년 1명당 2년 간 700만원의 기업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정부의 청년 지원금(정부 적립금)은 일반회계에, 정부의 기업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어 있다.

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적립하여 3년 후 청년이 적립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로, 2021년에 종료되는 한시사업이다.<sup>4)</sup>

##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수요 예측 미흡에 따라 집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다.

동 사업의 2017년도 일반회계 집행률은 44.3%이었으며, 가입 인원 또한 목표 인원인 55,000명에 미달하는 38,129명이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가입시기	가입 인원		예산	
	목표 (추경포함)	실적	본예산+추경	집행액
2016년	10,000	5,217	-	-
2017년	55,000	38,129	70,915	31,434

주: 2016년에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참여시점과 지원금 지급 시점에 시차가 존재하며, 참여 경로에 따른 인원 예측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sup>5)</sup> 예를 들어, 참여 규모가 가장 큰 취업인턴 경로의 경우 취업인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3만 1,500명이나 이 중 정규직으로 전

#### 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단위: 만원)

구분	약정 기간	적립 금액				기업 지원금 <sup>2)</sup> (정부→기업)
		청년	정부 <sup>1)</sup>	기업	계	
2년형	2년	300	900	400	1,600	7003
3년형	3년(신설)	600	1,800	600	3,000	750

주: 1) 정부 적립금은 일반회계에 편성  
 2) 기업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성  
 3) 추경 이후 가입기업은 500만원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참여경로 구분은 제도 개선으로 2018년부터 폐지되었다.

환된 인원은 20,530명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경로별 실적]

(단위: 명)

	취업인턴	취업성공 패키지	일학습 병행	워크넷 알선	청년친화 강소기업	계
목표 인원	33,000	18,500	3,500	-	-	55,000
실적	18,783	10,940	471	434	7,501	38,12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제도 운영 방식 및 타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수요 예측을 보다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sup>6)</sup>

**둘째, 청약 가입자의 19.7%가 청약 가입을 해지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및 계약유지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 2016년 청약가입자의 35.2%와 2017년 청약가입자의 17.6%가 청약 가입을 해지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계약유지 현황]

(단위: 명, %)

참여연도	참여경로	청약 가입자수		중도해지건수		계약유지건수	
			비율		비율		비율
2016	인턴	5,217	100.0	1,836	35.2	3,381	64.8
	소계	5,217	100.0	1,836	35.2	3,381	64.8

6) 한편, 2018년의 경우 참여경로 폐지, 지원금액 증가, 홍보 확대 등에 따른 가입인원 증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2018년 5월에 신규 가입을 받지 않았다.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2년형 사업물량 4만명분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6월부터 가입을 재개할 수 있었다.

(단위: 명, %)

참여연도	참여경로	청약 가입자수		중도해지건수		계약유지건수	
			비율		비율		비율
2017	인턴	19,852	100.0	3,934	19.8	15,918	80.2
	취성패	11,546	100.0	2,407	20.8	9,139	79.2
	일학습병행	509	100.0	54	10.6	455	89.4
	워크넷알선	450	100.0	49	10.9	401	89.1
	청년친화	7,813	100.0	643	8.2	7,170	91.8
	소계	40,170	100.0	7,087	17.6	33,083	82.4
총 계		45,387	100.0	8,923	19.7	36,464	80.3

주: 1. 동 표의 2017년 청약 가입자수 40,170명은 2017년에 인턴제·취성패·일학습병행 등에 참여하고 2018년에 청약 가입을 완료한 인원을 포함한 통계로, 2017년 청약 가입 인원 38,129명과 차이가 있음

2. 2018.5.31.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동 사업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근속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자치단체 지원사업<sup>1)</sup>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혁신프로젝트<sup>2)</sup>를 지원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자치단체 지원사업의 계획현액은 1,236억원이며, 이 중 1,230억원이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자치단체 지원사업	131,347	131,347	0	131,347	129,298	0	20,217
	123,600	123,600	0	123,600	123,006	0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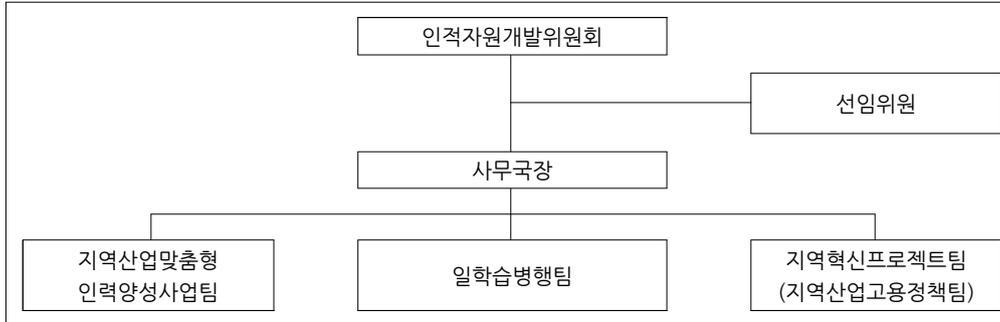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역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 10월 구성되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노동계, 산업계, 민간전문가, 인력수급관련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지원팀, 일학습병행팀, 지역혁신프로젝트팀(지역산업고용정책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 1) 코드명: 고용보험기금 1056-350의 내역사업
- 2) 지역혁신프로젝트란 광역단위 시·도가 지역의 핵심 일자리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일련의 사업간 묶음일자리 사업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직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요 업무 및 예산 편성 사업 현황]

조직	주요 업무	관련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팀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지역 컨소시엄 기관을 통한 훈련실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훈련기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훈련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운영기관(지역인자위) 인건비, 운영비
일학습병행팀	지역의 일학습병행 기업 발굴 및 운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사업	훈련기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훈련비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운영기관(지역인자위 등) 인건비, 운영비
지역혁신 프로젝트팀 (지역산업고용정책팀)	지역혁신프로젝트 운영	지역산업맞춤형일 자리창출지원	운영기관(지역인자위) 인건비,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규정과 업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자위')의 법적 근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로, 해당 규정은 지역인자위의 업무를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로 규정하고 있다.<sup>3)</sup>

그런데, 지역인자위 중 지역혁신프로젝트팀의 업무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일자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혁신프로젝트팀은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의 일자리 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관리·운영하는데, 지역혁신프로젝트에서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sup>4)</sup>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컨설팅'이나 지역의 고용 전략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고용전략포럼'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지역혁신프로젝트에서 추진한 일자리목표공시제 컨설팅 및 고용전략포럼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일자리 목표공시제 컨설팅	12개 지역	990,000	306,000	1,449,000
고용전략포럼	12개 지역	794,700	178,950	973,65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임기 내 추진할 지역의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우수 자치단체에는 포상을 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의 고용 관련 거버넌스가 있으나, 지역 내 고용경제전략산업 등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고용발전 계획과 혁신프로젝트 기획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인자위의 지역혁신프로젝트팀이 지역 고용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인자위의 업무 범위가 현행 법령을 다소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지역인자위의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고용과 관련한 기존의 회의체와의 협업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역혁신프로젝트팀 지원 예산 한도 및 자치단체 부담 비율을 법령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자위 근거 규정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서는 지역인자위 사무국에 대한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자위 사무국에 연간 6억원씩 지원이 가능하며, 운영비는 30% 이상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야 한다.

[지역인자위 사무국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한도)	지원비율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연간 지원한도액
인건비 (220백만원)	100%	전담자	200백만원(5명)	600백만원
		겸임자	20백만원(1명)	
운영비 (380백만원)	70%	선임위원 수당	18백만원	
		수요조사비	200백만원	
		일반운영비	162백만원	

자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한편, 운영규정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sup>5)</sup>, 전담조직 구성에 따른 추가 지

5)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별표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원 가능한 금액이나 지방비 매칭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자위 내에 지역혁신프로젝트팀이라는 전담조직 구성에 따라 2017년에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인자위에 연간 지원 한도액인 6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혁신프로젝트팀에 지급되는 국비 지원 규모 및 지방비 매칭 비율이 20.0~50.3% 등 지역인자위별로 상이하다.

[지역인자위 내 고용혁신추진단 2017년 지원액 및 지방비 매칭 비율]

(단위: 천원, %)

지역	국비	지방비(A)	계(B)	지방비 매칭 비율 (A/B)
서울	177,061	120,000	297,061	40.4
인천	150,000	64,280	214,280	30.0
경기	180,000	77,000	257,000	30.0
강원	150,000	39,000	189,000	20.6
대전세종	270,000	80,500	350,500	23.0
충북	150,000	50,000	200,000	25.0
충남	150,000	37,500	187,500	20.0
대구	150,000	130,000	280,000	46.4
경북	150,000	80,000	230,000	34.8
부산	150,000	58,260	208,260	28.0
울산	128,500	55,100	183,600	30.0
경남	150,000	107,439	257,439	41.7
광주	150,000	37,500	187,500	20.0
전북	136,000	34,000	170,000	20.0
전남	150,000	152,000	302,000	50.3
제주	120,000	32,000	152,000	21.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혁신프로젝트팀은 2017년에 신설된 조직이기는 하나, 향후 지역인자위의 상시 업무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에 지역별 지원 한도와 지방비 부담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또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 6) 고용혁신추진단은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에 구성된 ‘지역혁신프로젝트팀’이 2016년 하반기부터 지역인자위로 통합되며 신설된 조직이다.

셋째,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기관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를 규정에 부합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역인자위 운영 및 사업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는 외부위원이 위원회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사무국 전담 인력의 확보 및 사업관리,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의 적절성 등의 평가지표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S~D의 5등급으로 지역인자위를 구분한다.

평가가 종료되면, 지역인자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규정인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13조에 따라 2년마다 사무국 설치기관의 유지 여부를 심의·의결 해야 한다.<sup>7)</sup>

그런데 동 운영규칙이 제정된 2015년 이후 지역인자위 사무국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3차례뿐이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 사무국 운영 유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 현황]

연번	관할구역	사무국 설치 기관	사무국 지정 연도	비고
1	서울	서울 상공회의소	2015	미심의
2	부산	부산 상공회의소	2013	"
3	대구	대구 상공회의소	2013	"
4	인천	인천 상공회의소	2013	"
5	광주	광주 상공회의소	2013	"
6	대전	대전 상공회의소	2013	"
7	울산	울산 상공회의소	2014	"
8	경기	경기 경영자총협회	2013	"
9	강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2013	"
10	충북	청주 상공회의소	2013	심의 후 유지 의결
11	충남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2015	심의 후 변경 의결
12	전북	전주 상공회의소	2013	미심의
13	전남	목포 상공회의소	2013	"

7)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13조(사무국 교체 및 지원중단 등) ① 지역인자위는 공단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2년마다 사무국 설치기관 유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연번	관할구역	사무국 설치 기관	사무국 지정 연도	비고
14	경북	경북 경영자총협회	2013	"
15	경남	경남 경영자총협회	2013	심의 후 유지 의결
16	제주	제주 상공회의소	2014	미심의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해당 규정은 ‘지역인자위’가 사무국의 설치기관의 유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사무국 설치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인자위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인자위에서 수행하는 지역공동훈련센터의 양성훈련의 경우 지역인자위 별로 취업률에 편차가 있으므로 미흡한 지역의 경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공동훈련센터란 지역 단위에서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역공동훈련센터는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채용예정자과정(양성과정)’과 재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재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에 따라 지역인자위는 지역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고, 훈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양성과정의 취업률이 지역별로 최대 73.2%에서 최저 44.6%로 약 30%p의 편차가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취업률의 목표대비 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목표 취업률과 실적의 편차가 20%p 이상 나는 곳도 5개 지역<sup>8)</sup>에 달하였다.

[2017년 지역인자위별 양성과정 취업률 현황]

(단위: %)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대구	경북
목표	70	70	50	60	80	83.5	80	80	80
실적	64.3	72.5	61.0	47.7	54.4	66.0	67.6	53.9	55.8

8) 대전, 대구, 경북, 울산, 전남

(단위: %)

지역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평균
목표	70	70	70	80	80	80	70	73.3
실적	67.4	47.4	69.3	61.9	44.6	62.5	73.2	62.2

주: 지역인자위의 취업률 목표는 지역인자위 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인자위는 전년도에 실시한 지역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취업률이 낮은 지역 인자위의 경우 인력 수요-훈련 실시-취업 연계 등 사업 추진 전반의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연례적 불용 과다 및 신규 지원법인 확대 필요

### 가. 현황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sup>1)</sup>은 대기업(도급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를 돕거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경우 재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작연도인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동 사업은 2017년에 계획현액 50억원 중 57.8%인 28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1,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세목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5,000	5,000	0	0	5,000	2,888	0	2,112

자료: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sup>2)</sup>에 근거하여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2016년에 시작된 공동근로복지기금사업으로 구분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대기업(도급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직접 지출하거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였을 경우 지출액(출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22

2)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연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까지 기금법인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기금법인 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사내 근로복지 기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노동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체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직접 지원)</li> <li>- 대기업이나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li> </ul>	기금법인 당 매년 2억원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공동 근로복지 기금지원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각각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 당 2억원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단, 공동기금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지원액 2억원 한도까지만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은 2017년에 총 30개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20개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평균적으로 1억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33개소에 평균적으로 5,948만원씩 총 19억 6,300만원, 공동근로복지기금 11개소에 평균적으로 8,409만원씩 9억 2,500만원 등 총 28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42.2%인 21억 1,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 결산 비교]

(단위: 개소, 백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합계	
	기금수	지원금액	기금수	지원금액	기금수	지원금액
계획	30	3,000	20	2,000	50	5,000
실적	33	1,963	11	925	44	2,888
비율	110.0	65.4	55.0	46.3	88.0	57.8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수혜기금법인을 확대하지 못한 결과 기존의 일부 기금법인만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복지제도로, 동 제도가 1983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2016년 말까지 1,586개에 이른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는 총 40개에 불과하다<sup>3)</sup>.

2017년의 경우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33개 기금법인 중 63.6%인 21개가 기존법인이다. 이렇게 지원을 받은 기금법인 중 기존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동 사업의 수혜기금법인은 차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신규 기금법인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지원받은 법인 중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은 기금법인은 총 12개로 2015년에 지원받은 16개 수혜 기금법인의 75%에 해당한다.

3) 2017년까지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은 75개 기금법인 중 연도별로 중복된 35개 기금법인을 제외하였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기금법인 수]

(단위: 개소, %)

		2015		2016		2017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기 준	전년도 지원기금	-	-	14	53.8	9	27.2
	전전년도 지원기금	-	-	0	0	12	36.4
	소계	-	-	14	53.8	21	63.6
신규		<b>16</b>	<b>100.0</b>	<b>12</b>	<b>46.2</b>	<b>12</b>	<b>36.4</b>
합계		16	100.0	26	100.0	33	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15년의 16개 수혜기금법인 중 2016~2017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은 12개 기금법인에 대한 지원액은 총 8억 2,500만원이며, 2016년의 26개 수혜기금법인 중 2017년에 지원받은 9개 법인에 대한 지원액은 5억 1,000만원으로, 기존 기금법인이 지원받은 총금액은 13억 3,500만원이다. 동 금액은 2016~2017년 동안 정부 지원금 32억 8,500만원의 41%에 해당한다. 기금 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전체 기금 중 기존부터 지원받은 기금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2016~2017년 동안 연도별로 지원받은 59개 기금 중 2015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기금이 55.9%인 33개이다. 2017년 기준으로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 말 현재 총 1,586개에 이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일부만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혜택을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액 중 2015~2017년 지속 수혜기업 지원액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2016		2017		합계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2015 지원기금(a)	12	318	12	507	12	825
2016 지원기금(b)	-	-	9	510	9	510
기존기금 지원소계(a+b)	12	318	21	1,017	33	1,335
연도별 지원 현황	26	1,322	33	1,963	59	3,285

자료: 고용노동부

이렇게 2017년에 지원한 기금 33개 중 21개가 기존기금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동 사업으로 지원할 기금법인을 30개소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받았던 21개 법인이 2018년에도 지원을 받을 경우 신규지원 기금 수는 9개에 불과하게 된다. 그 결과 동 사업은 기존 기금법인의 지원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정부는 신규지원 기금 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기금 수]

(단위: 개소)

	결산			예산
	2015	2016	2017	2018
지원 기금 수	16	26	33	30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신규 기금법인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협력 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비용 지출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기금법인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나, 수혜 근로자 증가 추세를 보면 기존 대기업 근로자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확산되고 있으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실적]

(단위: 개소, 명)

	결산		
	2015	2016	2017
지원 기금 수	16	26	33
수혜 중소기업 수	147	205	408
수혜 근로자 수	4,807	12,695	32,448

자료: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사업시작연도인 2015년에 80억원, 2016년 35억원, 2017년 3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집행률의 향상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017년에 65.4%에 그치고 있다. 2017년에는 당초 목표로 한 30개의 기금법인보다 많은 33개를 지원하였지만, 집행률이 65.1%였던 것은 지원 기금법인에 대한 평균 지원단가가 당초 계획한 1억원보다 41% 적은 5,900만원이어서 2017년에 10억 3,7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원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계획			집행			비율		
	지원 기금 수	평균 지원 단가	지원 금액	지원 기금 수	평균 지원 단가	지원 금액	지원 기금 수	평균 지원 단가	지원 금액
2015	50	100	8,000	16	13	210	32.0	13.0	2.6
2016	35	100	3,500	26	51	1,322	74.3	51.0	37.8
2017	30	100	3,000	33	59	1,963	110.0	59.0	65.4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동 사업예산의 평균지원단가를 9,000만원으로 낮추었지만 여전히 2017년의 평균지원단가 5,900만원보다 52.5% 높다.

2017년까지 지원한 33개 기금법인 중 21개가 기존연도에 지원을 받던 기금법인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2018년에 30개 기금법인을 지원할 것을 가정하였다는 것은 신규 기금법인의 확대보다는 기존 기금법인에 대한 지원으로만 동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협업체의 근로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이 2015년부터 지원받던 일부 기금법인 뿐만 아니라 신규 기금법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평균지원단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평균 지원 단가]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기금 당 지원단가 예산	100	100	100	90
기금 당 지원단가 실제치	13	51	59	-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연례적 불용이 과다하므로, 신규지원 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에 바탕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동 사업이 시작된 2016년에는 예산 30억원 중 8억 7,000만원만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예산 20억원 중 9억 2,500만원만 집행하는데 그쳤다.

실적저조의 주된 원인은 예산 편성 시에 지원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를 과다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지원 기금법인 수를 30개로 계획하였지만 8개 기금법인만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계획한 20개 중 11개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연도별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계획			집행			비율	
	지원 기금법인 수	평균 지원단가	금액	지원 기금법인 수	평균 지원단가	금액	지원 기금법인수	평균 지원단가
2016	30	100	3,000	8	108	870	26.7	108.0
2017	20	100	2,000	11	84	925	55.0	84.0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시행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동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의 사유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지만, 2017년 말까지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30개소에 불과하고 제도시행 초기로 인한 인지도 미흡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 사업에서 이러한 낮은 수요문제를 인식하고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합리적인 수요예측에 기반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업의 사전계획 수립 강화 필요

### 가.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sup>1)</sup>은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7년에는 계획현액 492억 6,500만원 중 82.3%인 405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7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직장어린이집 지원	121,769	121,769	0	0	121,769	112,873	0	8,896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49,265	49,265	0	0	49,265	40,539	0	8,72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영유아보육법」<sup>2)</sup> 및 동법 시행령<sup>3)</sup>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과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1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집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동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시설을 직장어린이집 용도에 맞도록 전환하는데 사용한 비용 중 60~90%를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 억원(공동 6~8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추어 어린이집이 우수한 교재·교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5,00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재 교구비 사용액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개요]

구분	지원한도	비고
시설전환비	대규모기업군 : 3억원(공동 6억원)	소요금액의 6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4억원(공동 8억원)	소요금액의 90%,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 : 20억원	
교재 교구비	5천만원(우선지원기업 7천만원)	교체시기 : 3년

자료: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강제된 의무설치사업장 외의 임의 사업장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설치사업장과 임의설치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시설전환비, 교재교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60~9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0개소의 의무사업장과 53개소의 임의 사업장에 총 405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다. 최근 3개년 동안 지원한 의무사업장은 266개, 임의사업장은 145개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합계
의무	개소	67	99	100	266
	금액	15,204	19,481	18,879	53,564
임의	개소	47	45	53	145
	금액	13,505	17,423	21,659	52,587
합계	개소	114	144	153	411
	금액	28,709	36,904	40,538	106,151

자료: 고용노동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못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게 이행명령, 1년에 2회, 매회 1억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의무 미이행시 제재 관련 법률]

		관련 조항
설치 의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의무 미이행시 제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영유아보육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기업군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의무설치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으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리스트를 공표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말 현재 미이행사업장 수가 167개로 전체 의무이행사업장 1,253개의 13.3%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연도	이행사업장				미이행사업장(b)		설치의무 사업장 합계(a+b)
	직장어린이집 설치	보육수당 지급	보육시설 위탁	소계(a)	개소(b)	비중	
2013	534	242	101	877	197	18.3	1,074
2014	635	175	93	903	301	25.0	1,204
2015	578	-	27	605	538	47.1	1,143
2016	729	-	211	940	213	18.5	1,153
2017	839	-	247	1,086	167	13.3	1,253

주: 2014년까지는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여 위탁보육 및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만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인정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한 사업장 중 의무사업장은 최근 3년 동안 총 266개소임에 반해, 임의사업장은 145개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된 임의사업장은 전체 지원사업장의 35.3% 수준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의 시행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군 중 체계적인 임의사업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하거나 신규 산업단지 등의 자료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에 근거한 수요군을 먼저 확보한 후 임의사업주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합계
의무사업장	67	99	100	266
임의사업장(a)	47	45	53	145
합계(b)	114	144	153	411
비중(a/b)	41.2	31.3	34.6	35.3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은 현행과 같은 수동적이고 비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 131개소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할 계획이었으며, 의무사업장 100개소와 임의사업장 53개소 등 153개소를 설치지원하였다. 2017년 예산액 492억 6,500만원 중 17.7%인 87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 예산, 결산 비교]

(단위: 백만원)

	예산액	세부내역
예산	49,265	시설전환비 131개소(43,432백만원), 교재교구비 176개소(5,833백만원)
결산	40,539	의무사업장 100개소(18,879백만원), 임의사업장 53개소(21,659백만원) 등 총 153개소 지원
차이	△8,72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이 2017년 계획 현액 492억 6,500만원 중 87억 2,600만원을 불용한 사유를 대기업의 추가설치 증가 부진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여력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잠재적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전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의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지원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지원결정을 통보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지원금을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은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공고 절차 등이 선행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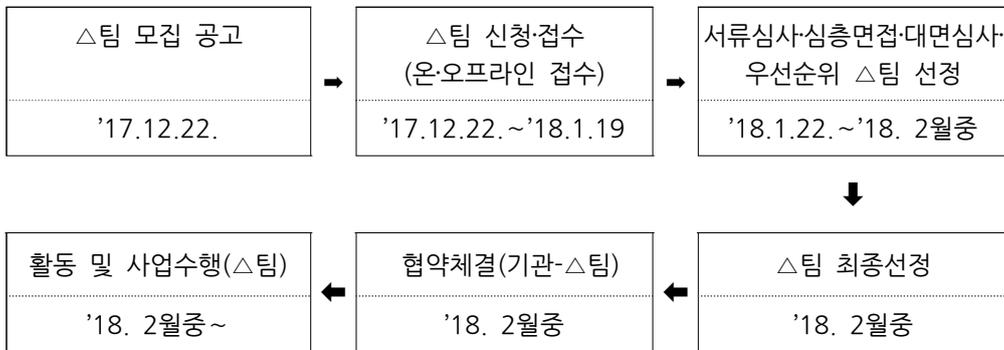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절차]

(사업주)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지원결정 통보  
 → (사업주) 지원금 지급 요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 → (고용노동부) 공단에 지원금 배정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타 사업에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기연도 전에 1개월 가량의 모집공고를 통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이후 심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중소기업 CEO연수 및 HRD 담당자 연수사업에서도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홍보-신청·접수-연수 실시-성과분석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계획수립단계와 공고 및 사업홍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 사업 추진절차]



사전에 면밀한 수요예측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장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수동적이고 비체계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사업<sup>1)</sup>은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또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용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계획현액 35억원 중 16%인 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용자)	35,968	35,968	0	0	35,968	27,868	0	8,100
여성고용환경 개선용자지원	3,500	3,500	0	0	3,500	560		2,940

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사업은 직장어린이집 또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7억원을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용자하는 사업이며, 용자이율은 연 2%(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1%)이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7-351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직장어린이집 또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용 도	직장어린이집 또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여성고용친화시설: 모유 착유(수유)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출산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
한 도	한 사업주당 7억원 이내(실제 소용되는 비용 범위내)
조 건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방 식	용자방식
이 율	연 2%(우선지원대상기업 연1%)

자료: 고용노동부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사업예산을 수요에 기반하지 않고 과도하게 편성하여 불용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사업은 최근 5년 중 2013년과 2017년은 용자방식으로 2014~2016년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사업의 연도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집행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불용이 확대되고 있다. 불용률이 2015년에는 28.3%로 비교적 낮았지만,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7년에는 84.0%에 이르고 있다. 2017년의 이차보전예산은 불용액이 적은데, 2014년~2016년 동안 지원된 개소에 대한 2017년 이차보전지원 해당분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사업 연도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지원방식	계획		계획현액(a)	집행액	불용액(b)	불용률(b/a)
		당초	수정				
2013	용자	2,630	4,522	4,522	3,598	924	20.4
2014	이차보전	78	78	78	23	55	70.5
2015	이차보전	113	113	113	81	32	28.3
2016	이차보전	217	217	217	122	95	43.8
2017	이차보전	165	165	126*	125	1	0.8
	용자	3,500	3,500	3,500	560	2,940	84.0

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사업의 대상은 ①직장어린이집, ②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이다. 연도별 지원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13년에는 총 14개소에 35억 9,800만원을 지원한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1개소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직장어린이집설치용자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높았던 2013년에는 총 11개소에 32억 5,300만원을 용자지원하였지만,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4~2016년에는 4~5개소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한 이차보전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용자는 한건도 없었다.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용자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13~2016년까지 2~4개소에 지원하였지만, 2017년의 경우에는 1개소 지원에 그쳤다.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지원 세부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 개소 수	직장어린이집 설치용자	11	4	5	5	0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용자	3	2	4	2	1
	개소 수 합계	14	6	9	7	1
지원 금액	직장어린이집 설치용자	3,253	1,308	1,096	1,681	0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용자	345	560	1,097	334	560
	지원금액 합계	3,598	1,868	2,193	2,015	560

주: 2014~2016년 용자방식→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 2017년 이차보전방식→용자방식 전환  
자료: 근로복지공단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고용노동부는 ①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비(인테리어비용 등)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sup>2)</sup>사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 ②시설 건립, 매입 등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이후 자연적인 인원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용도상실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용자사업의 수요가 적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고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시설전환비	3~4억원 (공동 6~8억원)	소요금액의 60~90% 지원 (우선지원기업 90%, 영아, 장애시설 80%)
	교재 교구비	5~7천만원	교체시기 : 3년
용자	시설건립, 매입, 시설임차, 시설 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2%(우선지원대상기업 1%)

자료: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 단독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3억원,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에게는 6억원을 한도로 설치비를 지원함.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용자사업의 수요가 감소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설치비 무상지원, 용자사업 지원 개소수 현황]

(단위: 개소)

	2013	2014	2015	2016	2017
용자사업	11	4	5	5	0
무상지원	103	93	114	144	153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지원현황과 건립, 매입 등을 통한 설치용자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예산집행률이 16.0%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면밀한 수요조사 및 동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타 사업의 물량 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한정된 예산자원 내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직접지원 및 용자) 사업<sup>1)</sup>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택·원격근무 등을 도입·확대하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직접 혹은 용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내내역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직접지원) 사업의 2017년 계획현액은 14억 원이며, 1,6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8,400만 원을 불용하였다.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용자) 사업의 2017년 계획현액 28억 원은 전액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고용안정장려금	106,560	106,560	0	0	106,560	98,839	21	7,700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지원	1,400	1,400	0	0	1,400	16	0	1,38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35,968	35,968			35,968	27,868	0	8,100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지원 (용자)	2,800	2,800	0	0	2,800	0	0	2,800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는 2016년부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년부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0, 1047-35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은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을 직접지원하는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 사업과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을 융자하는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융자)사업으로 구성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지원방식	종류	지원금 용도 및 지원한도	예산액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지원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	-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 총 투자금액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1,400 (70개소 × 2천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지원 (융자)	설비·장비 구축비	-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총 투자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 연 이율 1%,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2,800 (70개소 × 4천만원)

자료: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나. 분석의견

정부는 동 사업과 같이 신규사업에서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수요조사 등 사전계획을 면밀히 세워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무상으로 직접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비 등은 70개소에 평균적으로 2천만원이 소요됨을 가정하여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설비·장비 구축비 등은 70개소에서 각 개소당 4천만원이 소요됨을 가정하여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2017년 결산 결과, 직접지원사업에서는 14억원의 예산 중 1.1%인 1,600만원만 집행되었고, 융자사업에서는 1건의 융자도 발생하지 않아 계획현액 전액이 불용되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지원방식	계획		집행실적	
	예산액	산출근거	집행액	실적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지원(직접지원)	1,400	70개소 × 2천만원	16	2개소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지원(용자)	2,800	70개소 × 4천만원	0	0

자료: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용자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된 것에 대하여 신규사업임에 따라 사업주의 사업참여유인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노무관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집행부진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규사업의 경우 수요예측 등을 포함한 면밀한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신규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되는 것은 면밀한 사전계획과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동 사업과 같이 신규사업에서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면밀히 세워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창업점포지원사업<sup>1)</sup>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이 곤란한 산재근로자에게 창업점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며, 2017년에는 계획현액 20억 4,000만원 중 36.3%인 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창업점포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8,541	18,541	0	0	18,541	17,238	0	1,303
창업점포지원	2,040	2,040	0	0	2,040	740	0	1,300

자료: 고용노동부

창업점포지원사업은 최대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주와 임대차 계약(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을 체결한 후 창업지원자에게 점포사용권을 제공하고, 창업지원자는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동 사업의 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60-350

리를 강화하여 동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창업점포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까지 총 913억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563명의 산재근로자의 창업을 지원하였다.

[창업점포지원 사업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명)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집행액	67,805	7,143	4,838	3,226	2,365	1,960	2,206	1,040	740	91,323
지원인원	1,212	108	60	57	39	29	30	13	15	1,563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시작연도인 2000년부터 지원한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의 운영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5월에 2010년부터 지원한 창업점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168개 점포 중 2018년 5월까지 운영 중인 곳은 40개소(23.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0년 지원업체 108개 중 2018년 5월까지 운영 중인 곳은 21.3%인 23개소이며, 2011년 지원업체 60개 중 2018년 5월까지 운영 중인 곳은 28.3%인 17개소이다. 2010년과 2011년 조사결과를 통하여, 동 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한 목적의 달성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0, 2011년 지원창업점포 중 2018년 5월 현재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중도 포기	직권 취소	지원완료				합계 (b)
			운영 중(a)	폐업	소계	운영 중(a/b)	
2010	41	10	23	34	57	21.3	108
2011	25	11	17	7	24	28.3	60
합계	66	21	40	41	81	23.8	168

주: 중도포기는 계약기간 만료 전 점포운영 포기, 직권취소는 이자미납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점포운영계약 취소, 지원완료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을 정리하거나 자립함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동 사업은 2011년 이후 저조한 집행실적 등으로 인하여 매년 축소되고 있다. 동 사업의 지원인원은 2003년에 최대 154명까지 확대되었지만, 2011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7년에는 최대치의 10%인 15명에 불과하다. 또한 2009년에 최대 91억 5,500만원에 이르던 지원액이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7억 4,000만원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사업시작연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집행률은 75.4%로 2011년 이후의 평균집행률 59.2%보다 높다. 집행률이 사업초기인 2000년과 2002년에서 40%에 미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0년까지 75.8~99.4%로 높은 편이지만, 2011년 이후에는 2015년에 일시적으로 91.9%의 높은 것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낮다.

[연도별 창업점포지원 사업의 지원인원, 지원액, 집행률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계 (a)
지원인원	33	68	156	154	142	151	149	125	105	129	108	1,320
지원액	1,194	3,064	7,434	8,151	7,576	8,564	8,502	7,249	6,916	9,155	7,143	74,948
집행률	39.8	76.6	37.2	81.5	75.8	85.6	85	80.5	98.8	99.2	99.4	75.4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b)	합계 (a+b)			
지원인원	60	57	39	29	30	13	15	243	1,563			
지원액	4,838	3,226	2,365	1,960	2,206	1,040	740	16,375	91,323			
집행률	67.3	47.3	54.8	71.1	91.9	48.6	36.3	59.2	71.9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르면, 산재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공단은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확보하고 임대인이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는 경우 창업컨설팅을 실시하여 일정점수를 만족하면 공단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보전을 위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절차	주체	주요내용
①신청서 제출	산재노동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②적격심사	소속기관	지원자격 확인
③채권보전여부 조회	소속기관	신청일부더 30일 이내 채권보전여부 조회(감정평가) 후 통지
④창업컨설팅 의뢰	소속기관	채권보전이 가능한 신청인에게 창업컨설팅 제공
⑤임대차 계약체결	소속기관	창업컨설팅 결과 70점 이상이면 임대차계약 체결(법무사 조력)
⑤-1선정위원회 심의	지역본부	창업컨설팅 결과 70점 미만이면 선정위원회 심의 후 계약체결
⑥운영지원	소속기관	분기별 사후관리, 경영컨설팅 제공, 연장계약, 이전계약 등
⑦계약종료	소속기관	명도확인, 이자완납, 임차보증금 회수

자료: 근로복지공단

그런데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점포지원 사업에서 2010~2017년 동안 지원한 351명 중 5.9%인 21명에 대해서만 경영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동 사업의 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산재노동자가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동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창업점포지원 사업 연도별 경영컨설팅 제공 현황]

(단위: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경영컨설팅	7	1	0	0	10	1	1	1	21

자료: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일부 재위탁으로 인한 사업비 예산 과다 발생

### 가. 현 황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sup>1)</sup>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격검정사업, 외국인고용관리, HRD 확산 및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예산현액 1,050억 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세목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산업 인력공단 운영지원	105,006	105,101	0	0	105,101	105,101	0	0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격검정사업, 외국인고용관리 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을 차감한 잔액을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사업으로 출연받는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사업의 2017년 총지출액은 2,146억 2,9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금 1,095억 2,800만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자금 1,051억 1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일반회계 1134-307

[연도별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사업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	정부 출연금	공단 운영지원	55,940	52,199	89,528	85,487	105,101
	자체 수입금	국가자격검정수입	72,167	74,306	79,440	83,775	85,427
		외국인고용관리수입	14,973	16,833	13,832	14,882	17,040
		사업외수입	45,781	47,968	6,879	22,788	7,061
		소계	132,921	139,107	100,151	121,445	109,528
합계		188,861	191,306	189,679	206,799	214,629	
지출	일반 회계	공단운영지원	188,861	191,306	189,679	206,799	214,629

주: 결산기준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체수입금 중 국가자격검정수입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462~479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발생시킨 수익이며, 전체 자체수입금의 78.6%에 해당됨에 따라 국가자격검정사업은 주요 수익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격검정사업에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국가자격검정사업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자격검정수수료수익(a)	73,603	75,284	78,727	84,138	86,217
자격검정사업비(b)	76,559	77,540	85,848	97,840	103,545
손익(a-b)	△2,956	△2,256	△7,121	△13,702	△17,328

주: 자격검정수수료는 검정수수료수익과 자격증교부수입의 합계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 나. 분석의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부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하게 한 후 불과 5년 만에 다시 직접 수행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설립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검정사업 중 미용사 일반 등 12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집행업무(문제출제 등을 제외한 원서접수, 필기시험관리 등 단순집행업무)의 경우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매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단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sup>2)</sup> 제29조제5항이다.

공단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12개 종목은 보건복지부 소관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미용사 일반, 미용사 피부 등 8개, 국토교통부 소관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의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의 2개 종목 등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일부를 재위탁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011년 초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공단이 2012년 말까지 1,158명의 정원을 1,098명으로 60명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계획(2011.07.07.)」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던 사업주 훈련(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근로자 훈련(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공단이 이관받게 되었다. 이에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에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12개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재위탁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분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비 중에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한 12개 국가기술자격검정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산업인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29조제5항 제29조제5항(권한의 위임·위탁)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검정 합격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비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위탁금수익이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2개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을 재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2012~2017년 동안 총 852억 400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총 544억 6,300만원이며, 경상경비가 305억 5,600만원이다. 경상경비는 각종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여도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경상경비 중 2011년 당시 공단담당인력(55명)보다 많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정규직 인원수(2017년 기준 85명)에 대한 인건비는 절감이 가능하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연도별 수익 및 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자격검정위탁수입금	12,703	14,935	14,371	14,196	14,604	14,395	85,204	
자격검정 사업비	검정시행비	8,337	9,392	8,675	8,501	8,709	8,813	52,427
	검정관리비	366	400	335	335	385	215	2,036
경상경비	인건비	3,983	4,915	5,029	5,100	5,269	5,158	29,454
	기관운영비	17	190	237	255	239	164	1,102
사업비용 합계	12,703	14,897	14,276	14,191	14,602	14,350	85,019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2개 종목 국가기술자격검정과 관련하여 한국기술자격검정원과의 재위탁계약을 2018년 7월부터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수행하던 12개 국가기술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위탁사업 관련 주요 추진경과]

일정	추진 경과
2017. 08.10.	감사원 감사(‘16.11.16~12.2) 결과 조치사항 中 - 법적 수탁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공단의 인력운용 및 예산집행 기준보다 방만하게 재위탁 사업비를 지원하였다는 지적제기와 이에 따른 효율화 방안 요구
2017. 10.26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中 - “상시검정 공단 직접수행 요청 등” 한국기술자격검정원과 관련한 개선 촉구
2017. 12.22.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업무 재위탁사업 운영방침’ -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재위탁 기간을 ’18.6월까지 한시적 연장”
2018. 01.09.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업무 재위탁사업 개선방안 관련 후속 조치’ -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업무 재위탁사업 개선방안(인력공단 통합 시행) 관련하여 동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서는 수시정원 확보가 필요한 바, 기획재정부 협의를 조속히 추진 등”

자료: 고용노동부

이렇게 2012년에 재위탁한 사업을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2012~2017년 동안 발생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비용 중 2011년 당시 공단당 인력보다 많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정규직 인원수에 대한 인건비가 총 66억 8,884만원 만큼 비용<sup>3)</sup>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정부가 기관 설립에 좀더 신중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고정비가 발생한 셈이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경상경비 중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만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수지차방식에 따라 출연을 하는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는 동액만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24개에 이르는 본부, 지사, 출장소 및 상설시험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역본부, 지사 등에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다. 또한 2012~2016년 동안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이사장·감사·임원(사무총장, 경영관리본부장, 검정사업본부장) 등 간부직의 상당수가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퇴직자가 재취업되었다.

3) 연도별로 2011년 공단 담당인력에 비해 많은 검정원 정규직 인원 수 × 알리오에 공시된 검정원 직원 평균보수로 인건비를 산정해 보면 2012년 44,335만원, 2013년 25,780만원, 2014년 161,071만원, 2015년 133,338만원, 2016년 156,872만원, 2017년 147,486만원 등 총 668,884만원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무상임차 현황]

(단위: 천㎡)

구분	건물 소유자	연면적	무상면적
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14,415	324
서울 지사	서울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14,415
	서울동부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지사	2,957
	서울남부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3,521
	경기북부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안대동)	988
부산 지사	부산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25,342
	부산남부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	3,620
	울산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3,545
	경남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3,647
경인 지사	경인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6,522
	경기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3,314
	성남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안대동)	851
대구 지사	대구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3,094
	경북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1,828
	포항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2,189
광주 지사	광주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3,737
	전북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3,473
	전남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2,102
대전 지사	대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4,000
	충북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1,851
	충남상설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1,667
강원 출장 소	강원출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2,667
	강릉출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	1,501
	제주출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2,085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부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하게 한 후 불과 5년 만에 다시 직접 수행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였고, 동 기관이 산업인력공단 임직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기관설립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훈련 실시 촉진 및 근로자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계획현액 5,815억 6,300만원 중 99.9%인 5,809억 3,2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3,100만원은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사업주직업 훈련지원금	494,563	87,000	0	0	581,563	580,932	0	631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사업주)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사업주)이다. 대규모기업은 직무능력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훈련을 2일 16시간 이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sup>1)</sup>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 1) 「고용보험법」

#####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음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조건]

사업장규모	지원대상(조건)
대규모기업	- 직무능력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훈련을 2일 16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직무능력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훈련을 1일 8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는 사업주직업훈련 실시에 소요되는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훈련비 전액인 100%를, 대규모기업은 훈련비의 50~60%를 지원받으며, 숙식비는 일 3,300~14,000원씩 지원받는다.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정부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사업주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조건]

지원내용				
훈련비	집체·현장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종별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대규모	1,000인 미만	직종별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60%
			1,000인 이상	직종별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원격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종별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20%	
		대규모	1,000인 미만	직종별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80%
			1,000인 이상	직종별 지원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숙식비			(일평균 5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식사만 제공한 경우 : 일 3,300원 이내 숙박과 식사를 제공한 경우 : 일 14,000원 이내	
훈련수당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 이내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직업훈련사업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 중에는 공통법정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공통법정교육은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같이 각각의 법령에 따른 법정교육과정 등이다.

[주요 공통법정교육]

구분	주요내용	교육대상	실시주기	관련법령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기준 -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연1회	「남녀고용평 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	개인정보처리자	미규정 (통산 연1 ~ 2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2항
산업안전 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등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일부 업종 예외)	사무직 분기 3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제31조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 나. 분석의견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사업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통법정교육훈련비 지원금 확대를 지양하고 일반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지원 사업의 사업비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비는 2013년 3,336억 5,200만원에서 2017년 5,809억 3,200만원으로 74.1% 증가하였으며, 2016년 이후 사업비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훈련인원은 2013년 372만 5,871명에서 2017년에는 435만 283명으로 16.8% 증가하였고, 특히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집행실적]

(단위: 명, 백만원, %)

	2013(a)	2014	2015	2016	2017(b)	증감(b-a)	
						금액	비율
훈련인원	3,725,871	3,395,508	2,735,498	2,798,633	4,350,283	624,412	16.8
사업비	333,652	370,247	390,794	515,721	580,932	247,280	74.1

자료: 고용노동부

훈련인원이 크게 증가한 2017년의 사업비를 공통법정교육훈련비 지원금과 일반직업훈련비 지원금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하였다. 공통법정교육훈련비 지원금은 2017년에 511억 9,800만원으로 2016년 59억 9,000만원 대비 452억 800만원 증가하였는데,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비 증가분 652억 1,100만원의 69.3%에 해당한다. 2017년 집행액 증가분 중 많은 금액이 공통법정교육훈련비 지원금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a)	2017(b)	차액(b-a)
공통법정교육훈련비 지원금(c)	5,990	51,198	45,208
일반직업훈련비 지원금	509,731	529,734	20,003
전체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d)	515,721	580,932	65,211
비중(c/d)	1.2	8.8	69.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도별 사업주직업훈련사업의 참여인원은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201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55.4%까지 확대되었다. 참여인원을 일반직업훈련과 공통법정교육으로 구분한 결과, 일반직업훈련 참여인원은 2013년 대비 2017년에 감소하였고, 공통법정교육 참여인원은 2013년 2만 110명 이후 소폭 증가하다 2015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141만 328명까지 확대되었다.

공통법정교육 참여인원은 2015년 이전에는 전체 사업주직업훈련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2.1%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에는 6.1%, 2017년에 32.4%까지 증가하였다. 공통법정교육 훈련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까지는 0.3%였지만, 2016년에 1.2%, 2017년에는 8.8%까지 급증하였다.

공통법정교육훈련을 제외한 사업주직업훈련 참여인원은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감소하였고, 2017년에 전년 대비 11.9% 증가하였다. 2016년 대비 2017년 사업주직업훈련 증가율은 공통법정교육훈련을 포함하면 55.4%로 크게 향상되었지만, 공통법정교육훈련을 제외하면 11.9%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주직업훈련 참여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2013(e)	2014	2015	2016	2017(f)	증감(f-e)
참여 인원	공통 법정 교육 (a)	인원	20,110	22,734	57,148	170,999	1,410,328	1,390,218
		증감률	-	13.0	151.4	199.2	724.8	-
	일반 직업 훈련	인원	3,705,761	3,372,774	2,678,350	2,627,634	2,939,955	△765,806
		증감률	-	△9.0	△20.6	△1.9	11.9	-
	합계 (b)	인원	3,725,871	3,395,508	2,735,498	2,798,633	4,350,283	624,412
		증감률	-	△8.9	△19.4	2.3	55.4	-
비중(a/b)			0.5	0.7	2.1	6.1	32.4	-
사 업 비	공통법정교육(c)		953	1,084	1,010	5,990	51,198	50,245
	일반직업훈련		332,699	369,163	389,784	509,731	529,734	197,035
	합계(d)		333,652	370,247	390,794	515,721	580,932	247,280
	비중(c/d)			0.3	0.3	0.3	1.2	8.8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편, 2016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공통법정교육은 주로 위탁기관을 통한 인터넷 교육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주직업훈련 중 공통법정교육 참여 현황]

(단위: 명)

	훈련주체			훈련방법				합계
	위탁	자체	자체+위탁	집체	인터넷	우편	스마트	
2013	15,117	2,917	2,076	11,988	3,274	4,848	0	20,110
2014	15,896	4,261	2,577	11,974	8,507	2,241	0	22,734
2015	39,297	5,060	12,791	7,951	41,984	7,109	0	57,148
2016	131,978	6,098	32,923	7,977	146,768	16,238	0	170,999
2017	1,163,916	7,132	239,280	9,117	1,358,452	42,759	0	1,410,328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통법정교육 훈련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통법정교육은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같이 각각의 법령에 따른 법정교육과정으로 사업주직업훈련과정에서 목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보기 곤란한 측면이 강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에서 원격 공통법정훈련지원율을 큰 폭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큰 폭의 지원을 조정 사유에 대하여 2017년에 급증한 원격 법정훈련은 ①법에 의해 반복적·일률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개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내용과 관련이 적고, ②훈련비예산제약 하에서 법정교육훈련의 증가는 직무훈련여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주요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안)
집체훈련 지원금 지원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li> <li>▲ 1,000인 미만 60%</li> <li>▲ 1,000인 이상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li> <li>▲ 1,000인 미만 60%</li> <li>▲ 1,000인 이상 40%</li> </ul>
원격훈련 지원금 지원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li> <li>▲ 1,000인 미만 80%</li> <li>▲ 1,000인 이상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li> <li>▲ 1,000인 미만 80%</li> <li>▲ 1,000인 이상 40%</li> </ul>
원격 공통법정훈련 지원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li> <li>▲ 1,000인 미만 80%</li> <li>▲ 1,000인 이상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 대상기업 60%</li> <li>▲ 1,000인 미만 40%</li> <li>▲ 1,000인 이상 20%</li> </ul>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따라서 공통법정교육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으로 사업주직업훈련을 통한 직업능력향상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훈련이므로,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공통 법정교육훈련을 사업주직업훈련에서 축소시키고, 정부는 동 사업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일학습병행 운영지원사업 중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수당 불용 발생 문제 개선 필요

### 가. 현황

일학습병행 운영·지원사업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학습병행 운영·지원사업은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 일학습병행제 운영, 현장훈련지원 선도모델 확산, 일학습병행제 평가제도 운영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현장훈련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2017년에 계획현액 910억 2,100만원 중 87.9%인 800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09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	91,671	91,021	0	0	91,021	80,059	0	10,962
일학습병행제 운영	32,375	32,375	0	0	32,375	32,375	0	0
현장훈련지원 선도모델 확산	500	500	0	0	500	500	0	0
일학습병행제 평가제도 운영	4,985	5,635	0	0	5,635	5,635	0	0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사업 합계	129,531	129,531	0	0	129,531	118,569	0	10,962

자료: 고용노동부

현장훈련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전담인력 양성 교육 등 4개의 세부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이 중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은 일학습병행 훈련을 실시한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기업현장교사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기술, 지식 및 능력을 전수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하고, HRD 담당자란 학습기업에서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전담인력 수당의 지원기준은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 대비 월별 훈련시간 (OJT+OFF-JT)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간 한도액으로 분배하여 산출하는데 기업현장교사 수당 계산식 및 연간 지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전담인력 수당 계산식]

$$\text{연간 한도액} \times \frac{\sum \text{과정별 해당 월 학습근로자의 실제 훈련시간}}{\sum \text{과정별 연간 총 훈련시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담인력 연간 한도액]

(단위: 명, 만원)

학습 근로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상
기업현장교사 수당한도액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HRD 담당자수당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별 기업의 훈련실시 비율, 연간 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하고 있다.

[전담인력 수당 산출률 조정 현황]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1년차기업 훈련실시율	60	50	50	50
2년차기업 훈련실시율	100	100	100	80
3년차이상 훈련실시율	-	60	60	60
훈련기간	100 (12개월)	100 (12개월)	80 (9.6개월)	80 (9.6개월)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분석의견

일학습병행 운영·지원사업 중 현장훈련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서 기업의 훈련기간이 실적치가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차기 이후에는 기업체 훈련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통하여 예산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은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전담인력 양성 교육 등 4개의 세부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에서 87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년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사업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금액	집행금액	불용액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23,674	23,674	0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53,056	44,289	8,767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7,891	7,891	0
전담인력 양성 교육	6,400	4,205	2,195
현장훈련 인프라구축지원사업 합계	91,021	80,059	10,962

자료: 고용노동부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금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15	27,500	22,632	4,868	82.2
2016	43,336	31,245	12,091	72.0
2017	53,056	44,289	8,767	83.4

자료: 고용노동부

이렇게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에서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원인은 전담인력 중 기업현장교사 수당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훈련기간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도 기업현장교사 수당<sup>1)</sup>예산은 연간 평균적으로 80%(12개월 중 9.6개월)를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되었다. 즉, 기업현장훈련이 1년 중 평균적으로 9.6개월 동안 실시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1) 기업현장교사수당은 훈련시작일로부터 매월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연도별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계획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연도	대상기업(A)	지급수당(B)	지급률(C)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A×B×C)
2014	[1,300기업(14년 선정)×100%]	3 (HRD담당자)	100%	3,900
2015	[1,300기업(14년 선정)×100%] + [2,000기업(15년 선정)×60%]	11 (기업현장교사 8, HRD담당자 3)	100%	27,500
2016	[1,300기업(14년 선정)×60%] + [3,400기업(15년 선정)×100%] + [1,600기업(16년 선정)×50%]	11 (기업현장교사 8, HRD담당자 3)	100%	55,478
2017	[4,700기업(15년 이전 선정)×60%] + [1,600기업(16년 선정)×100%] + [3,200기업(17년 선정)×50%] + [608기업(재학단)×50%]	11 (기업현장교사 8, HRD담당자 3)	80%	53,706
2018	5,800기업(2014~2016년 목표) × 60% + 3,200기업(2017년 목표) × 80% + 3,000기업(2018년 목표) × 50%	11 (기업현장교사 8, HRD담당자 3)	80%	66,352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매년 신규훈련을 기준으로 2014~2017년 동안 기업체별 훈련기간을 파악한 결과, 2014년 평균 2개월, 2015년 5개월, 2016년 7.3개월, 2017년 7.1개월 등에 걸쳐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업체 훈련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기간 산출 등을 통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sup>1)</sup>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sup>2)</sup>에 근거하여 1997년 12월 9일에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설립등기를 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반회계, 부금회계, 외부수탁사업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결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일반회계와 부금회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은 부금회계로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은 일반회계로 구분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2014년 1월 1일부터 피공제자를 확인할 수 없는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의 운영수익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부금회계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관련자산을 이관받아 운영 중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수탁받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훈련지원사업,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외부수탁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 1)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구분회계별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017년 말 총자산	주요 내용
부금회계	3,614,87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회계
일반회계	28,80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회계
외부수탁회계	75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회계 - 건설기능인력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2013년~)과 취업촉진을 위한 무료취업지원 사업(2015년~) 실시 중
특별회계	219,133	2014년 1월 1일부터 피공제자를 확인할 수 없는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의 운영수익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부금회계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부금회계 관련자산을 이관받음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나. 분석의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반회계 내 유보하고 있는 이익금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복지혜택기회를 건설근로 일용·임시근로자에게 제공할 할 필요가 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일용·임시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1인 1일 4,200원)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부금 수령액(4,200원) 중 공제회 운영비 총당액(200원)을 일반회계에서 부가금수익으로 인식한다.

[공제부금 납부액의 회계별 구분 현황]

(단위: 원)

부금회계	일반회계	공제부금 합계
4,000	200	4,200

주: 공제부금은 1인 1일 기준으로 4,200원임.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일반회계의 부가금수익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188억 5,400만원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84억 2,600만원에 이른다. 부가금수익의 확대에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2014~2017년 동안 34억 1,500만원~58억 16,000원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내 유보되어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은 2014년에 66억원 이후 부가금수익 증가에 따른 경영실적 호조에 힘입어 2017년 말에는 199억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연도별 일반회계 손익 및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부가금수익	18,854	20,575	23,754	28,426
사업비용	13,367	17,434	19,528	23,279
사업이익	5,487	3,141	4,226	5,147
사업외손익	329	274	176	346
당기순이익	5,816	3,415	4,402	5,493
이익잉여금	6,600	10,016	14,418	19,910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렇게 부가금수익이 증가한 요인은 부가금수익의 원천이 되는 건설공사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 물량과 연동하는 건설수주 총액, 일용·임시근로자, 공제부금 수납액, 근로일수가 모두 2014년 대비 2017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수주 총액, 공제부금 수납액, 근로일수 신고 현황]

	2014	2015	2016	2017
건설수주 총액(조원)	90.6	134.5	145.4	140.8
공제부금 수납(백만원)	444,220	453,658	511,370	604,268
근로일수 신고(천일)	106,920	108,178	122,507	144,067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부가금수익 확대에 따른 이익증가분을 이익잉여금 중 재산조성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자본 중에서 재산조성적립금만 증가하였고, 자본금과 기본재산은 변화가 없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도 2014년 대비 2017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 자본 현황]

(단위: 백만원)

		2014(c)	2015	2016	2017(d)	증감액(d-c)
자본금(a)		5,925	5,925	5,925	5,925	0
이익 잉여금	기본재산	554	554	554	554	0
	재산조성적립금	230	6,047	9,462	13,863	13,633
	미처분이익잉여금	5,816	3,415	4,402	5,493	△323
	소계(b)	6,600	10,016	14,418	19,910	13,310
자본 총계(a+b)		12,525	15,941	20,343	25,835	13,310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재산조성적립금으로 적립함에 따라 2017년 말 현재 재산조성적립금은 총자본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 일반회계 자본 현황]

(단위: 백만원, %)

	자본금 (a)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a+b)
		기본재산	재산조성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소계(b)	
금액	5,925	554	13,863	5,493	19,910	25,835
비중	22.9	2.1	53.7	21.3	77.1	100.0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사업주가 부담하는 공제부금은 ①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 납부(부금회계 납부금, 4000원), ②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일반회계 납부금, 200원)에 사용된다. ②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일반회계의 수익으로 인식된 후 퇴직공제부금의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임시근로자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퇴직공제부금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가 161억 8,1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 227억 6,400만원의 71.1%를 차지하고, 사업비(회원복지사업, 퇴직공제사업 등)는 28.9%이다.

[2017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일반회계 지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인건비	경상 운영비	사업비					지출 결산 합계
			퇴직 공제	회원 복지	고용 지원	자산 운용	합계	
금액	10,026	6,155	3,679	2,535	183	185	6,582	22,764
비중	44.0	27.0	16.2	11.1	0.8	0.8	28.9	100.0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일반회계를 통하여 수행한 사업 중에는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가입, 결혼·출산지원금, 장학지원금,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등의 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단체상해보험	총 6,000명을 한도로 ①신청자격 충족자 중 신청자(800명), ②전자카드사업장 종사자(200명), ③2015.12월~2016.11월(1년간) 적립일수가 많은 순(3,000명), ④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2,000명)
종합건강검진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2018년 1,200명 한도)
결혼, 출산지원금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504일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퇴직공제 적립자 중 신청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결혼 또는 출산(첫째 이상)한 자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장학지원금)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4년(1,008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4년제 대학생 자녀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0/(4.5), 2.8/(4.3) 이상 또는 백분위 80점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 및 협성장학금, 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 제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대출이자 지원
기타	인터넷수강지원,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 정부포상 추천 등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의 수혜인원과 금액은 최근 8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복지사업 대상인원에 비하여 복지사업의 수혜인원이 크게 적으며, 복지사업비도 가장 높은 해인 2017년이 13억 500만원이다. 2017년의 경우 복지사업 대상인원은 36만 5,104 명이지만 수혜인원은 2.3%인 8,238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내 유보하고 있는 이익금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복지혜택기회를 일용·임시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사업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결혼출산 보조금	인원	28	42	34	850	414	616	624	887
	금액	8	13	10	255	124	180	180	197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지원	인원	-	-	-	-	30	60	160	220
	금액	-	-	-	-	60	120	160	220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원	-	-	-	-	-	-	-	173
	금액	-	-	-	-	-	-	-	13
단체상해 보험지급	인원	-	3,000	5,000	6,000	1,000	5,000	6,000	6,000
	금액	-	360	549	600	110	697	839	730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무료 지원	인원	-	-	-	-	-	-	-	958
	금액	-	-	-	-	-	-	-	146
복지사업 합계	인원	28	3,042	5,034	6,850	1,444	5,676	6,784	8,238
	금액	8	373	559	855	294	997	1,179	1,305
복지사업 대상인원	인원								365,104

주: 1. 단체상해보험 지급인원은 피보험자 기준임.

주: 2. 복지사업 대상인원은 퇴직공제부금 가입인원 중 적립일수가 1년 이상이고, 직전년도 100일 이상 적립된 인원임.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 가. 현황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일용·임시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퇴직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동일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대부분의 건설일용임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퇴직공제제도를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현장)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이다. 공제부금은 1일 4,000원이며, 사업주가 부담한다.

#### [퇴직공제제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현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용됨</li> <li>- 공공공사 3억원,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의 현장 등에 적용됨</li> <li>- 공제부금은 1일 4,000원(2018년부터 5,000원)이고 사업주가 부담함</li> <li>- 납부기간은 252일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음</li> <li>-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음</li> </ul>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근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 3월 말 현재 퇴직공제부금 가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퇴직공제부금은 3조 1,156억원이며, 이 중 납입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서 퇴직공제금 수급권이 발생한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부금은 2조 2,315억원으로 71.6%를 차지한다. 납입일수가 252일 미만이어서 퇴직공제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공제부금은 8,840억원으로 비중이 낮다.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c@assembly.go.kr, 788-4682)

금액적 비중에서는 전체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 수급권이 발생한 피공제자 해당 공제부금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퇴직공제부금에 가입된 피공제자 527만 명 중 납입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서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가진 자는 84만 7,000명으로 16.1%임에 반해,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는 442만 2,000명으로 83.9%를 차지한다.

[2017년 퇴직공제부금 가입현황]

(단위: 천명, 천일, 백만원)

		1년(252일) 미만			1년(252일) 이상			전체 합계		
		인원	적립 일수	원금	인원	적립 일수	원금	인원	적립 일수	원금
내 국 인	생존	3,809	219,112	760,424	745	574,427	2,022,089	4,554	793,539	2,782,514
	사망	180	10,286	28,734	16	7,749	21,662	196	18,035	50,396
	소계	3,990	229,399	789,159	760	582,176	2,043,751	4,750	811,574	2,832,910
외 국 인	생존	433	25,502	94,866	87	49,315	187,803	519	74,818	282,668
	사망	0	0	0	0	2	7	0	2	7
	소계	433	25,502	94,866	87	49,317	187,809	519	74,820	282,675
합계		4,422	254,901	884,024	847	631,493	2,231,560	5,270	886,394	3,115,585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나. 분석의견

퇴직공제제도가 퇴직금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대부분의 건설일용임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 당초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퇴직공제금 지급제도 하에서는 공제회가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21일을 1월로 간주하여 252일을 12개월로 계산함)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2018년 3월 말 기준의 퇴직공제부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

526만 9,504명 중 1년 미만자가 442만 2,413명으로 83.9%를 차지하고, 1년 이상자가 84만 7,091명으로 16.1%를 차지한다.

[2018년 3월 말 기준 퇴직공제부금 가입인원 현황]

(단위: 명, %)

	1년(252일) 미만	1년(252일) 이상	전체 합계
인원	4,422,413	847,091	5,269,504
비중	83.9	16.1	100.0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수급권이 없는 피공제자(건설일용·임시근로자) 중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최종 근로일로부터 경과연수가 3년 이상인 자는 225만 8,000명이며 252일 미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자의 53.9%를 차지하여 건설일용·임시근로자 중 3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말 현재 252일 미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자 세부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

	최근 근로년월 이후 경과기간				합계
	3년 미만	3년 이상			
		3~5년	5년 이상	소계	
인원	1,930	605	1,653	2,258	4,188
적립원금	493,799	122,430	221,813	344,243	838,042
인원비중	46.1	14.5	39.5	53.9	100.0

주: 2017년 말 기준임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또한 공제부금 납입일이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 중 사망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8만명이며, 이들을 위하여 납입한 공제부금은 287억 3,400만원이다. 사망신고일로부터 2017년 말까지 기간이 3년 이상인 자가 67.0%인 12만 1,000명이며, 이들에 대한 공제부금 납부금은 171억 1,400만원이다.

[2017년 말 252일 미만 공제부금 납부자 중 사망자 세부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3년 미만	3년 이상		소계	합계
		3~5년	5년 이상		
인원	60	34	86	120	180
적립원금	11,619	6,265	10,849	17,114	28,734
비중	33.0	19.1	47.9	67.0	100.0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의 평균 적립일수를 검토한 결과,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으로 분류된 인원의 평균 납입일수는 57.6일(2.7개월)이다. 이에 반해 납입일수가 252일 이상으로 분류된 인원의 평균 납입일수는 745.5일(35.5개월)이다.

전체 가입자의 83.9%를 차지하는 납입일수 252일 미만 피공제자의 평균 납입월수가 2.7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16.1%를 차지하는 납입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의 평균 납입월수는 35.5개월로 안정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결과,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장간 이동이 잦은 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공식적인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공제부금 가입자 526만 9,504명 중 공제부금 납입일이 252일 미만인 가입자 442만 2,413명(83.9% 해당)의 평균 납입월수는 3개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현행 제도 하에서는 83.9%를 차지하는 건설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3월 말 기준 공제부금 평균 납부일수 현황]

(단위: 천명, 천일, 월)

		252일 미만				252일 이상			
		인원	납입 일수	평균 납입일수	월환산	인원	납입 일수	평균 납입일수	월환산
내국인	생존자	3,809	219,112	57.5	2.7	745	574,427	771.0	36.7
	사망자	180	10,286	57.1	2.7	16	7,749	484.3	23.1

(단위: 천명, 천일, 월)

		252일 미만				252일 이상			
		인원	납입 일수	평균 납입일수	월환산	인원	납입 일수	평균 납입일수	월환산
	소계	3,990	229,399	57.5	2.7	760	582,176	766.0	36.5
외 국 인	생존자	433	25,502	58.9	2.8	87	49,315	566.8	27.0
	소계	433	25,502	58.9	2.8	87	49,317	566.9	27.0
	합계	4,422	254,901	57.6	2.7	847	631,493	745.5	35.5

주: 21일을 1월로 간주하여 252일을 12개월로 계산함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따라서 퇴직공제제도가 퇴직금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대부분의 건설일용·임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 당초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방안<sup>1)</sup>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공제부금의 납입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종전에는 퇴직공제금을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가. 현황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회계는 피공제자를 확인할 수 없는 퇴직공제증지 판매 대금의 운영수익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자를 분리기일로 하여 공제회 부금회계로부터 분리·신설되었으며, 신설 당시 특별회계의 자본금(공제부금)은 1,755억원이었다. 특별회계는 부금회계로부터 이관받은 자본금을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금, 단기금융상품 등의 유동자산, 매도가능증권, 대출채권 등의 비유동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특별회계의 비유동자산 중에는 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액 489억 2,400만원(2017년 말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연도별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회계 자산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예금,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a)	203,637	76,786	51,224	37,975
매도가능증권, 대출채권 등 비유동자산(b)	0	131,346	160,799	181,158
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49,473	48,924
총자산(a+b)	203,637	208,133	212,023	219,133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회계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의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20일에 설립되었다.

## 나. 분석의견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회계는 100%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빌딩자산의 저조한 투자수익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특별회계는 2016년에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196만주 전체를 489억 4,900만원에 취득하였다.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인데,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회계는 1주당 24,974원에 취득하여 주당 19,974원씩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는 주당 액면가액가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주식의 액면가액 초과분(1주당 19,974원)은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sup>1)</sup>(자본잉여금)으로 391억 4,963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현황]

(단위: 원, 주, 배)

투자액(a)	취득 주식수(b)	1주당 취득가액(a/b)	1주당 액면가액(c)	1주당주식 발생초과금 (d=b-c)	초과발행 배수(d/a)
48,949,630,000	1,960,000	24,974	5,000	19,974	4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2016년 설립 이후 손익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출액이 2017년 6월 30일에는 21억원, 2017년 12월 31일에는 소폭 감소한 18억 5,600만원 등 총 39억 5,6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총 9억 2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489억원의 투자 수익률은 2.4%에 그치고 있다.

1)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미래의 수익에 대한 전망이 좋아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높거나,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어 투자자가 액면가액 이외에 추가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a)	취득가액 (b)	투자수익률 (a/b)
2017.6.30	89,983	40,549	49,434	2,100	484	48,950	1.0
2017.12.31	90,208	41,054	49,154	3,956	902	48,950	1.8

주: 2017.12.31. 자료 중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17.1~2017.12월 누계액임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서울시 중구 다동 소재의 ○○ 빌딩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데, 동 빌딩의 총 임대가능면적 3,727평 중 3,598평을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율은 96.5%이다. 이 중 34.7%인 1,291.7평을 유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임대 중이다.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면적 현황]

(단위: 평)

타법인 임대면적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용면적(유상)	공실면적	임대가능면적
1,932.3	1,291.7	503.0	3,727
57.9	34.7	7.4	100.0

주: 총장부가액 중 공단사용분은 유형자산, 임대활용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편,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7년 말 현재 장기차입금으로 계상 중인 370억원을 4년 후인 2021년에 일시에 상환할 예정이다. 동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차입금 상환재원을 빌딩 임대료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하는데, 2017년의 임대료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9억원)으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 참고로, ○○빌딩의 공실률이 7.4%이다. 더욱이,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16년 말에 34억 3,000만원이었지만 2017년 말에는 13억 5,6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당좌자산, 당기순이익, 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6.12.31	2017.6.30	2017.12.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3,430	2,301	1,356
당기순이익	484	418	348
주주 현금배당 지급액	0	680	607

주: 총장부가액 중 공단사용분은 유형자산, 임대활용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차입금의 차환이 가능하므로, 2021년에 채무불이행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당기순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재원의 마련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향후 장기적으로 동 빌딩을 매입하여 건설일용·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복지타운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동 빌딩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28억 3,500만원도 되돌려주어야 함에 따라 총지급액은 차입금 370억원 외에 28억 3,500만원이 추가된 398억 3,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특별회계는 피공제자를 확인할 수 없는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을 보유 중이다. 따라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동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차입금 상환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 빌딩의 저조한 투자수익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부동산 수익률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



### 가. 세입·세출 결산

기상청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세입총계와 세출총계는 각각 총수입,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7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8억 8,700만원이며, 237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9.7%인 94억 4,200만원을 수납하고 143억 1,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다. 미수납액은 기상항공기 지체상금 중 일부 미수납(143억원)에 따른 것이다.

[2017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887	6,887	6,887	23,759	9,442	14,318	0	39.7

자료: 기상청

2017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948억 4,000만원이며, 이 중 95.7%인 3,777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81억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억 6,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85,276	385,276	394,840	377,723	8,157	8,960	95.7

자료: 기상청

나.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기상청의 자산은 7,687억 600만원, 부채는 531억 4,400만원으로 순자산은 7,155억 6,1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46억 400만원(0.6%)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152억 6,000만원, 일반유형자산 6,982억 8,300만원, 무형자산 483억 4,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68억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지체상금 등 미수채 채금수익, 선급금 등 유동자산 99억 900만원 증가, 장기입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등으로 인한 기타비유동자산 39억 2,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85억 5,000만원(13.9%) 감소한 것으로 유동부채 247억 9,600만원, 장기차입부채 278억 200만원, 장기충당부채 5억 4,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차세대 통합 기상 IT 인프라(COMIS-4) 2차년도 구축사업 등 금융리스 부채 87억 3,200만원 감소,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 7,0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산	768,706	764,102	4,604	0.6
I. 유동자산	15,260	5,351	9,909	185.2
II. 투자자산	0	0	0	0
III. 일반유형자산	698,283	701,688	△3,405	△0.5
IV. 사회기반시설	0	0	0	0
V. 무형자산	48,343	54,172	△5,829	△10.8
VI. 기타비유동자산	6,820	2,891	3,929	135.9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부 채	53,144	61,694	△8,550	△13.9
Ⅰ. 유동부채	24,796	23,219	1,577	6.8
Ⅱ. 장기차입부채	27,802	38,098	△10,296	△27.0
Ⅲ. 장기충당부채	547	377	170	45.1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715,561	702,408	13,153	1.9
Ⅰ. 기본순자산	475,795	475,795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39,082	124,419	△14,663	△11.8
Ⅲ. 순자산 조정	100,684	102,194	1,510	1.5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897억 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2,692억 4,100만원, 관리운영비 1,301억 4,700만원, 비배분비용 20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배분수익 117억 4,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49억 4,500만원(6.0%) 감소한 3,897억 900만원이며, 이는 자산재평가손실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242억 9,5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기상연구프로그램(1,135억 4,900만원)과 기상관측프로그램(745억 2,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39억 4,100만원과 경비 462억 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억 4,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269,241	288,942	△19,701	△6.8
II. 관리운영비	130,147	123,765	6,382	5.2
III. 비배분비용	2,064	26,359	△24,295	△92.2
IV. 비배분수익	11,743	24,412	△12,669	△51.9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389,709	414,654	△24,945	△6.0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89,709	414,654	△24,945	△6.0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7,024억 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7,155억 6,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31억 5,300만원(1.9%)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49억 4,5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이 각각 기초대비 129억 9,300만원, 309억 8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154억 8,3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11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15억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기상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702,408	670,299	32,109	4.8
II. 재정운영결과	389,709	414,654	△24,945	6.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04,373	417,366	△12,993	△3.1
IV. 조정항목	△1,510	29,398	△30,908	△105.1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715,561	702,408	13,153	1.9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② 국제기구 및 양국간 기상협력(ODA), ③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④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정보화), ⑤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 ⑥ 기상위성자료 현업지원 기술개발(R&D) 등 6개 사업이다.

6개 사업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업무추진비 1,700만원이 공통 감액되었다<sup>1)</sup>.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②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R&D) 등 2개 사업이다.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81억원 증), 긴급 재난문자 발송(8억원 신규), 지진정보 전파(11억원 신규), 지진관련 교육 및 홍보(8억원 증)를 이유로 총 108억원이 증액(94억원→202억원)되었고,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R&D)는 융합기상서비스 기술 개발을 위해 5억원이 증액(225억원→230억원)되었다<sup>2)</sup>.

1)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0.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2)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6.10.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

기상청은 ① 국가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업무 지원 ② 일자리 창출 및 기상산업 진흥 ③ 성장동력 확충 사업 등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및 영향에 보 기반 마련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을 위해 계약한 도입 대행업체의 계약내용 미이행 등으로 기상항공기 도입이 지연되었고, 운영 위탁업체를 변경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 및 예산상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기상청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선정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상관련 교육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해당 사업에 기상청 직원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를 최소화하고, 강사양성이나 표준화된 매뉴얼 제공을 통해 외부전문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만족도 조사, 홍보, 행사, 교육 사업 등에 대한 원가계산서 작성을 위한 용역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연례적인 사업까지 원가계산서 작성을 외부용역으로 실시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II

## 개별 사업 분석

### 1

###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 가. 현황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sup>1)</sup>은 기상관측, 기후변화 감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장비를 탑재한 기상항공기 1대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액은 23억 7,100만원으로 전년이월액 55억 6,4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79억 3,500만원 중 84.5%인 67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다.

#### [2017회계연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2,371	2,371	5,564	0	7,935	6,704	0	1,231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0	0	3,653	0	3,653	3,405	0	248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	2,311	2,311	1,911	△11	4,211	3,244	0	967
부대비용	60	60	0	11	71	55	0	16

자료: 기상청

기상항공기 도입은 201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5년 11월 도입을 완료하고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도입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도입이 지연되면서 2017년 11월 8일 도입이 완료되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대행업체인 (주)대주ENT에서 기상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상항공기를 국내에 반입(2015.10.29.)하였으나 승인요건 미흡으로 국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명 : 일반회계 1231-303

토교통부의 등록이 각하(2015.10.30.)되었고2), 일부 장치 미장착 및 비공인 자재 사용 등으로 재개조가 필요함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반송(2015.12.11.)되었다. 그리고 미연방항공청의 승인 과정에서 행정소요기간이 증가하면서 국내반입이 지연되었다.

한편, 도입될 항공기의 운영을 위하여 2015년 7월 운영 위탁업체와 3년 장기계약(2015.7.16.~2017.12.31.)을 체결하였으나 업체의 귀책사유(채권압류·가압류)로 인해 2017년 2월에 계약해지하였으며, 2017년 5월에 새로운 업체와 신규로 계약(2017.5.8.~ 12.31.)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동일 업체와 3년 장기계약(2018.1.1. ~ 2020.12.31.)을 체결하였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경과 및 운영 위탁업체 계약체결 현황]

연도	경과	비고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상항공기 도입 계약 체결((주)대주ENT, 2013.5.21.~2015.11.6.)</li> <li>계약액 162억원(연차별 대금(억원) : 25.9('13) → 79.3('14) → 56.6('15))</li> </ul>	도입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상항공기 운영위탁 계약 체결((주)케이바스, 2015.7.16.~2017.12.31.)</li> <li>총 44.7억원(2015년: 9.3억원, 2016년: 19.1억원, 2017년: 16.3억원)</li> </ul>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대주ENT 항공기 국내 반입(2015.10.29.), 국토교통부에 등록 신청하였으나 요건 미흡 등으로 각하</li> <li>미국으로 반송(2015.12.11.)</li> </ul>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상항공기 운영위탁 용역 2차년도 계약체결((주)케이바스, 2015.12.31.)</li> </ul>	운영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완된 사업이행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상항공기 재개조 추진(2016.1.27.)</li> <li>미연방항공청에 비행인증시험 신청(2016.7.14.), 허가(2016.12.10.), 비행인증시험 완료(2017.2.2.~21)</li> </ul>	도입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케이바스의 채권압류·가압류로 계약해지(2017.2.3.)</li> <li>기상항공기 운영위탁 계약 체결(㈜스펙코어, 2017.5.8.~ 12.31.)</li> </ul>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연방항공청 부가형식증명 승인(2017.8.3.), 항공기 국내 이송(2017.9.3.)</li> <li>국토교통부의 감항검사(2017.9.15.) 및 항공기 등록 완료(2017.10.10.)</li> <li>기상항공기 인수검사 완료(2017.11.8.)</li> </ul>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상항공기 운영위탁 용역 계약 체결(㈜스펙코어, 2017.12.27.)</li> <li>총 49.5억원(2018.1.1.~2020.12.31.(3년))</li> </ul>	운영

자료: 기상청

2) 미국에서 항공기를 개조할 경우, 미연방항공청(FAA)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성에 대한 부가형식증명(STC: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승인을 받아야하고, 해당 항공기를 국내로 반입하여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감항검사를 받고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심사과정에서 기상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미연방항공청의 부가형식증명(STC)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 수출국(미국)의 등록도 말소되지 않아 등록이 각하되었다.

## 나. 분석의견

첫째,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기상항공기 도입을 당초 2015년 11월에 도입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도입 대행업체(주대주ENT)의 계약내용 미이행 등으로 기상항공기 도입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 177억원을 부과하였으며, 34억원은 대금지급 시 상계처리 하였고 잔액 143억원에 대해서는 미수납된 상태이다.<sup>3)</sup>

또한 기상항공기 운영 위탁업체의 경우 2015년에 (주케이바스를 선정<sup>4)</sup>하였으나, 채권압류(국세 및 4대 보험료 체납)와 채권가압류 등 업체 귀책사유로 2017년 2월에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상청은 기상항공기 운항 실적은 없었지만 운영 위탁업체에 사업비 13억 3,800만원을 지급<sup>5)</sup>하였다.

[운영 위탁업체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기간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주케이바스)	2015	2015.7.16.- 2015.12.31.	932	474	246	- 246백만원 차년도로 이월
	2016	2016.1.1.- 2016.12.31.	1,911	0	1,911	- 위탁운영업체 채권압류·가압류로 인한 전액 이월
	2017	계약해지 (2017.2.3.)	1,626	864	0	- 계약 해지로 인한 3차년도 계약미체결 - 전년이월액 중 864백만원 법원공탁
(주스펙코어)	2017	2017.5.8.- 2017.12.31.	1,789	1,789	0	- 전년이월액 중 824백만원과 2017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계약 실시 - 2018~2020년 계약체결 (총 4,950백만원(1,650×3년))

자료: 기상청

- 3) 기상청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업체에 독촉고지를 8차례(일자: '17.12.22, '18.1.12, '18.2.1, '18.2.23, '18.3.14, '18.4.5, '18.4.26, '18.5.18)하였고, 향후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제3호에 따라 소송에 의한 이행청구를 할 예정(18.6.)이라고 한다.
- 4) 기상항공기가 도입 완료되기 전에 운영 위탁업체를 선정할 이유에 대해 기상청은 기상항공기 운용 전담조직 마련 등 사전에 운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 5) 기상청은 항공기 운항 정비 매뉴얼 개발, 기상관측장비 운영 매뉴얼 개발, 각종 규정 수립 등 기상항공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5년에 현지 제작사에서 실시한 정비와 운항, 기상장비 운영 등 3차례의 교육에 운영 위탁업체 소속 조종사와 정비사, 관측장비운영자 총 9명이 참여하였는데, 계약이 해지되면서 관측장비운영자 3명만 두 번째 계약업체((주)스펙코어)로 이직하여 교육 받은 인력을 일부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sup>6)</sup>

[현지 제작사 교육 참여 실적]

일자(기간)	교육내용	교육참여자 소속	역할
2015.8.15.- 8.30.(16일)	제작사 기종 교육(정비)	(주)케이바스 2인	기상항공기 정비
2015.9.3.- 9.17.(15일)	제작사 기종 교육(운항)	(주)케이바스 2인	기상항공기 조종
2015.9.14.- 10.2.(19일)	기상장비 관측원리, 운영방법, 유지보수 방법, 관측자료 분석	국립기상과학원 5인	기상항공기 활용연구
		(주)케이바스 5인	기상장비 운영
2017.4.12.- 4.17.(6일)	기상장비 관측원리, 운영방법, 유지보수 방법, 관측자료 분석	국립기상과학원 7인	기상항공기 활용연구
2017.4.12.- 4.18.(7일)	기상장비 관측원리, 운영방법, 유지보수 방법, 관측자료 분석	국립기상과학원 3인	기상항공기 활용연구

주: 1. 2015년 교육비는 제작사에서 부담하고 2017년 교육비는 장비도입업체((주)대주ENI)에서 부담  
 2. 기상항공기 활용연구는 위험기상 선행관측, 환경기상 감시, 구름물리관측, 기상조절실험, 온실가스 감시 등을 말함  
 자료: 기상청

이와같이 기상항공기 도입 지연으로 당초 목적인 기상관측 활용 등 사업목적을 적기에 달성하지 못하였고, 운영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 및 예산상 비효율성이 발생한 바, 기상청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 선정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6) 기상청은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으로 인력승계 및 업무 인수인계를 규정하였으나, 일부 인력들이 퇴사하거나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상항공기 운영 인력은 본부장(1), 조종사(2), 정비사(2), 관측장비운영자(5) 등 총10명이었으며, 이 중 관측장비운영자 3명이 (주)스펙코어로 이직하였다.

둘째, 계획에 없던 기상항공기 취항식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집행하였다.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2017년 12월에 도입 완료되었는데, 기상청은 운항 시작에 앞서 취항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취항식 행사는 당초 계획에 없었고 따라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상청은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 용역비 낙찰차액 중 일부(3,300만원)를 활용하여 취항식 행사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취항식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면 사전에 행사비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는 사전에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상항공기 취항식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예산액	발주 금액	낙찰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기상항공기 취항식 행사 위탁 용역	0	22	22	(주)더타이탄	2017.12.~12.	수의
기상항공기 경과보고 동영상 제작	0	10	10	(주)렛츠스카이	2017.12.~12.	수의
기상항공기 취항식 보안구역 인솔 용역	0	1	1	ABIS.KOREA	2017.12.~12.	수의

자료: 기상청

## 가. 현황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사업은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sup>1)</sup>의 내역사업으로,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 단축을 목표로 지진관측지점의 추가 설치와 기 설치된 지진관측지점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지진관측장비 설치를 위한 시추공사와 관측장비의 도입·설치로 구성된다.

기상청은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 123억 7,600만원 중 95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5,800만원을 이월, 12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월액은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설치 사업의 계약 지연에 따른 것이고, 불용액은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다.

[2017회계연도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20,266	20,266	0	±7	20,266	17,210	1,558	1,498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12,376	12,376	0	0	12,376	9,597	1,558	1,221
- 시추공사비	5,936	5,936	0	△316	5,620	4,645	0	975
- 감리비	84	84	0	316	400	341	0	59
- 관측장비 설치	6,356	6,356	0	0	6,356	4,611	1,558	187

주: 1. 이전용 등 ±7백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1인) 퇴직으로 상용임금에서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2. 시추공사 집행액 4,645백만원은 지진관측장비 신규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집행액 4,613백만원과 포항 지진지역 시추공사 및 시추조사 22백만원, 조달수수료 10백만원 포함

자료: 기상청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명: 일반회계 1238-301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시추공사 예산의 불용률이 매년 20%이상이고, 관측장비의 도입 및 설치 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연내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시추공사비의 최근 3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보다 발주금액이 낮고 낙찰차액도 발생하여, 그 결과 불용률(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약 20%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예산액 대비 24.8%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39.4%, 2017년에는 22.3%가 불용되었다.

[2015~2017년 시추공사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발주금액(B)	낙찰금액(C)	낙찰차액(B-C)	불용액(A-C)	불용률(A-C)/A
2015	1,925	1,712	1,448	264	477	24.8
2016	1,945	1,386	1,179	207	766	39.4
2017	5,936	5,423	4,613	810	1,323 <sup>1)</sup>	22.3

주: 1) 2017년 시추공사비 불용액 1,323백만원 중 316백만원을 감리비로 조정하고, 포항 지진지역 시추공사 및 시추조사 22백만원, 조달수수료 10백만원 등으로 최종 불용액은 975백만원임  
자료: 기상청

또한 관측장비 도입 및 설치하는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액 63억 5,600만원 중 15억 5,8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기상청은 2017년 3월에 조달청에 발주 요청(3.26.) 하였으나, 단일응찰에 유찰,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 가격협상 지연으로 계약체결(8.25.)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동 사업은 과거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재정사업 평가(2016회계연도)에서 “미흡”을 받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연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sup>3)</sup>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

2) 관측장비 설치는 2018년 3월에 모두 완료되었다.

3)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발생횟수를 보면 2015년까지는 44~93회였

진관측망 확충을 적기에 완료하여 보다 정확한 지진관측과 지진경보 전달시간 단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52회, 223회로 증가하였다.

### 가. 현황

기상청은 기상지식 보급 및 사회 확산 사업<sup>1)</sup>, 지역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사업<sup>2)</sup> 등을 통해 대국민 대상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 기상지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sup>3)</sup>을 통해 개도국 기상청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과 향후 개도국을 지원할 국제기상전문인력을 선발·양성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지식 보급 및 사회 확산 사업에서 10억 7,400만원, 지역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사업에서 4억 4,000만원,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상청 실시 교육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상지식 보급 및 사회 확산	1,095	1,095	0	0	1,095	1,074	0	21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2,218	2,218	0	0	2,218	2,194	0	24
지역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440	440	0	0	440	440	0	0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2,964	2,964	0	1	2,965	2,923	0	42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48	448	0	0	448	440	0	8

자료: 기상청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 1) 코드명 : 일반회계 6134-302
- 2) 코드명 : 일반회계 1331-303의 내역사업
- 3) 코드명 : 일반회계 6132-302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민간에 위탁한 교육 사업에 기상청 직원도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를 최소화하고,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기상지식 보급 및 사회 확산 사업,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사업, 지역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사업 등을 통해 기상업무 종사자 또는 국민, 개도국 기상청 공무원 대상 기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사업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에 위탁하였다.

교육사업을 위탁하면서 다수의 강의에 기상청 직원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기상업무종사자 및 대국민 기상교육’에서 기상청 직원이 강사로 참여한 횟수는 189회(77명)이고,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한 개도국 교육훈련 지원’에서 64회(46명), ‘국제기상전문인력 양성’에서 15회(15명), ‘지역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에서 5회(4명)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sup>

[기상청 직원의 강사 참여 현황]

세부사업명	교육프로그램명	기상청 직원 강사 참여		사업수행기관
		인원	횟수	
기상지식 보급 및 사회 확산 사업	기상업무종사자 및 대국민 기상교육	77명	189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개도국 기상·기후 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한 개도국 교육훈련 지원	46명	64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제기상전문인력 양성	15명	15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지역기후변화과학이해확산	4명	5회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주: 1. 일반강의 강의료: 5급이상 시간당 6만원(초과 4만원), 6급이하 시간당 5만원(초과 3만원)  
 2. 외국인 대상 국제기상교육(ex.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한 개도국 교육 훈련지원) 강의료: 과장급 이상 시간당 23만원(초과 12만원), 5급이하 시간당 12만원(초과 10만원)  
 자료: 기상청

4) 이 외에도 기상청 내부직원 교육을 위한 “선진기상전문인력 양성 사업”에서도 270회(93명) 참여하였다.

기상청은 기상전문가 인력풀이 적고, 방재유관기관 기상업무 종사자 대상의 교육은 특성상 기상청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기상청 직원이 교육사업에 강사로 다수 참여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대국민 기상 교육 등 일반적인 지식 전달과 관련된 교육은 표준화된 매뉴얼 제공이나 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외부강사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사업(한국 기상산업기술원 위탁)’의 경우 2016년까지는 기상청 직원이 일부 강사로 참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대국민 일반 교육뿐 아니라 방재담당자 교육까지 모두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기상청은 민간위탁 교육 사업 추진 시 기상청 직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강사양성이나 표준화된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5)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기상업무 종사자가 기상청이 운영하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하고 있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기상청 내부 전문가가 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 사업<sup>1)</sup>은 기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상청 직원 대상 장단기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진기상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상청은 2017년도 예산액 8억 6,700만원 중 98.3%인 8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	867	867	0	0	867	852	0	15

자료: 기상청

### 나. 분석의견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조직구성원의 소통강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기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라는 동 사업의 목적과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기상청은 조직구성원의 소통강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용역비(210-14)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용역은 기관·직원 간 소통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직급별 간담회, 실무자 워크숍, 소통강화 이벤트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명: 일반회계 6134-303

[조직구성원의 소통강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분		목적	대상	집행액
소통 및 역량강화	직급별 간담회 6.15~6.16(1박2일)	상/하 직원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요인 공유/분석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구현	8,9급 직원 120명	4,800 만원
	실무자 워크숍 7.31~8.1(1박2일)	조직 내/외적 갈등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원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요인 공유/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직장협의회 임직원 50명	
	열린혁신 워크숍 10.26~10.27(1박2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열린혁신 연결고리 확보 및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열린혁신 추진	열린혁신요 원 30명	
소통강화 이벤트	런치-매치 10.20.	조직구성원이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어울림의 장 마련	본청, 수치 모델연구부, 기상레이터 센터 직원	

자료: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 결과보고서(기상청)

기상청은 동 사업이 기상전문성 및 소통·혁신 역량 등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기상전문인력 양성을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소통강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기상청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고 2017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더라도 예보전문 및 예보지원분야 교육운영과 방재·재난 대비 교육훈련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통·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 예보전문 및 예보지원분야 교육 운영경비(697)
- 예보책임관과정(1주,20명,1회)(27)
- 예보전문과정(16주,20명,1회)(112)
- 예보지원분야과정(2주,50명,2회)(86)
- 예보심화과정(2주,20명,2회)(339)
- 예보기초과정(12주,50명,1회)(133)
○ 방재·재난 대비 교육훈련과정(170)
- 방재·재난 대비 교육훈련(1주,50명,4회)(170)

자료: 기상청

또한 소통·혁신 역량 등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의 함양 제고를 위한 과정은 직원들의 변화관리 능력 개발을 통해 행정효율성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6134-3042)’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상청은 향후 사업목적 및 의의를 고려하여 이에 부합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sup>3)</sup>

---

2) 2017년도에 창의·변화관리 역량강화 예산 1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3) 참고로,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 시 이·전용 등 적법한 예산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목적이 유사한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가. 현황

기상정책연구사업(R&D)<sup>1)</sup>은 새로운 정책 발굴, 기상기술 예측, 수요분석, 국내외 기술개발 추진 동향 분석 등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예산액은 4억 7,300만원으로 4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상정책연구사업(R&D)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상정책연구사업(R&D)	473	473	0	0	473	471	0	2

자료: 기상청

### 나. 분석의견

새로운 정책발굴, 국내외 기술개발 추진 동향 분석 등 기상정책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기상정책연구사업(R&D)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문화 개선이나 인력양성 등 기상청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을 동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왔다.

2015년에는 “성과관리 수준진단 및 전문가 양성 기획연구”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기상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2017년에는 “기상청 청렴정책 개선 방안 연구”, “장기예보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및 기능 효율화 방안 연구”, “기상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표준교육과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코드명: 일반회계 6134-305

정 개발 기획 연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획 연구”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9건의 연구용역 과제 중 4건이 조직문화개선, 인력양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같은 연구과제들은 기상정책연구사업(R&D)의 목적인 새로운 정책 발굴, 기상기술 예측, 수요분석, 국내외 기술개발 추진 동향 분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이나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상정책연구에 대한 과제가 축소될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 기상청은 동 사업 추진 시 사업목적인 기상정책연구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5~2017년 기상정책연구사업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과제명	집행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2015	기상정보 수수료체계 개선 및 제공기준 연구	36	3.12.~7.9.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기상업무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기획 연구	89	4.2.~11.30.	(주)인터젠컨설팅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 발전계획 연구	66	5.8.~10.5.	실전전략연구소
	기상관측망 최적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79	7.16.~12.13.	(주)웨더피아
	성과관리 수준진단 및 전문가양성 기획 연구	10	9.23.~12.1.	(주)굿러닝 가치향상센터
2016	해양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방안 연구	60	4.19.~10.15.	(주)한국해양기상기술
	기상관측장비별 정확도 신뢰성 제고방안 연구	69	4.26.~11.22.	(재)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기상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문 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66	5.16.~11.16.	(주)입소
	영향예보 도입방안에 관한 기획 연구	72	5.19.~12.15.	한국기상학회
	미래 기상업무에 대한 정책현장 의견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38	5.23.~10.20.	(주)인터젠컨설팅
	기상재해 영향예보를 위한 통합적 자료 구축 방안에 관한 기획연구	59	5.26.~11.22.	(주)글로컬 엠앤에스
	전산자원 도입 및 운영 통합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56	6.28.~11.25.	(주)넥스젠퍼앤티
	수문기상·가뭄업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58	7.6.~11.30.	(주)인사이터스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교육훈련시설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 및 건립방안 연구	19	8.3.~10.1.	(주)인사이터스

(단위: 백만원)

연도	과제명	집행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2017	기상청 청렴정책 개선 방안 연구	46	4.12.~10.12	사회책임윤리 경영연구소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한 기획 연구	50	5.1.~9.15.	(주)케이엠플러스 컨설팅
	기상분야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표준교육 과정 개발 기획 연구	74	5.10.~12.6.	(사)한국기상 전문인협회
	미래 기상업무 변화 대응 인공지능기술 활용 전략 기획	48	5.16.~10.30.	(주)에스제이전략 연구소
	장기예보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및 기능 효율화 방안 연구	64	5.19.~11.15.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성과관리 전략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45	5.19.~10.17.	(주)한국정책평가 연구원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 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87	5.25.~11.15.	(사)보험개발원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사업 종료평가	19	9.19.~12.17.	(주)이암허브
	시간당 강우강도를 고려한 호우특보 발표 기준 개선방안 연구	38	10.12.~12.15.	(주)환경예측 연구소

자료: 기상청

### 가. 현황

기상청은 물품의 구매, 공사, 용역 등을 위하여 연간 90건 내외의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95건의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총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다. 건별 용역비는 2017년도 기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900만원 수준이다.

[ 기상청 원가계산 용역 실시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3
원가계산 실시 현황	89	95	36
용역별 가격	30~1,900만원	30~1,900만원	30~480만원
집행액	138	135	50

자료: 기상청

### 나. 분석의견

연례적인 만족도 조사, 홍보, 행사, 교육 사업 등에 대한 원가계산서 작성을 위한 용역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물품의 구매나 공사, 용역 등에 대해 국제입찰에 따른 정보조달계약이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실시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동법 시행령<sup>1)</sup>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sup>2)</sup>을 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인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원가를 산정하여 작성된다.

기상청은 연간 90건 내외의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래실례가격을 특정하기 힘든 용역의 특성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sup>3)</sup>에 따라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조달받주하고 있으며, 매년 변동되는 물가 및 인건비 단가 등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원가계산을 위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sup>4)</sup>에 따르면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할 경우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 용역”, “기상기후사진 공모 및 전시 용역” 등 만족도조사, 홍보, 행사, 교육 사업까지

---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또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 연차별로 예산이나 사업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가 포함<sup>5)</sup>되므로, ISP 실시 이후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 원가계산 용역 실시 사례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명	연도	사업비	원가계산 용역비	용역업체
기관운영 기본경비	언론인 대상 기상과학 이해 제고	2016	155	0.9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155	0.9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35	0.9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상기후사진 공모 및 전시	2016	88	0.5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
		2017	88	0.7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
		2018	88	0.7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과제 개발 및 운영	2016	170	1.5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170	1.7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70	1.7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
기상서비스 진흥국 기본경비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	2016	100	0.9	(사)한국기업연구원
		2017	100	0.6	(사)한국기업연구원
		2018	84	0.7	(사)한국기업연구원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예보선진화 및 선진예보 시스템 확산 워크숍 운영	2016	100	0.5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100	0.5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00	0.5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016	178	1.5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258	1.8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275	1.9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5) ISP 산출물은 목표시스템 구축,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산고도화 등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대안(2개 이상 검토), 타 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명	연도	사업비	원가계산 용역비	용역업체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2016	80	0.8	(사)한국기업연구원
		2017	80	0.8	(사)한국기업연구원
		2018	80	0.8	(사)한국기업연구원
장기예보 선진서비스 체계 구축	장기예보 서비스 활용 만족도 조사 분석	2016	30	0.4	(사)한국기업연구원
		2017	30	0.4	(사)한국기업연구원
		2018	30	0.4	3분기 추진 예정

자료: 기상청

따라서 기상청은 조달발주에 필요한 원가계산서 작성에 있어 ISP를 실시한 정보화사업, 연례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만족도조사, 홍보, 행사, 교육 사업 등 기상청이 직접 원가계산을 산정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직접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재)APEC기후센터는 2005년 제13차 APEC<sup>1)</sup> 정상회의 진행 중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APEC 회원국의 승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sup>2)</sup> 사업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이상기후를 감시하고 예측정보를 생산하여 회원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APEC기후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은 2017년 예산액 84억 2,8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2억 4,300만원을 더해 예산현액은 87억 500만원이다. 집행액은 81억 6,400만원이며 5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다.

#### [2017회계연도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8,428	8,428	243	0	8,705	8,164	541	0

자료: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는 동 사업의 출연금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 운영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아태지역 기후예측시스템 운영 및 기술개발, 아태지역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아태지역 기후정보서비스,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 있다.

이병철 예산분석관(bclee@assembly.go.kr, 788-3745)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2) 코드명 : 일반회계 1334-301

[2017회계연도 (재)APEC기후센터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집행액	주요 내용
수입	정부출연금	8,428	·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기타	277	· 전년도이월액 243, 당해연도이자 34
	합계	8,428	
지출	인건비	5,023	
	경상운영비	1,018	
	사업비	2,123	· 아태지역 실시간 고품질 기후 예측시스템 운영 및 기술개발 : 683 · 지역특성화 기반 아태지역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 640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아태지역 기후정보서비스 : 320 ·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 492
	합계	8,164	

자료: (재)APEC기후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재)APEC기후센터는 매년 다수의 국외출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외출장보고서 작성과 공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재)APEC기후센터는 아태지역 기후감사·예측 기술개발과 개도국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특성으로 인해 국제학술대회, 국제워크숍, 국제기구회의 등 다수의 국외 출장을 수행하였다.

국외출장으로 지출된 예산은 2015년 총 42건에 2억 6,185만원, 2016년 3억 4,291만원, 2017년 2억 8,129만원을 집행하였다.

[(재)APEC기후센터 국외출장비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국외출장 건수	42	46	50
국외출장비	261,854	342,912	281,285

자료: (재)APEC기후센터

그러나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외출장보고서는 2017년부터 수행한 국외출장 건만 등록되어 있으며 그 이전 국외출장 건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외출장보고서 대부분이 출장자, 출장개요, 출장일정 소개 등의 내용으로 2~3페이지 정도의 내용에 불과했다.

[2017년 (재)APEC기후센터 주요 국외출장 보고서 사례]

(단위: 원, 쪽)

출장 일자	출장지	출장건명	출장비	보고서 분량
'17.3.27 ~4.3	멕시코/ 과달라하라	제 45차 IPCC 총회 정부대표단 참가	3,935,962	2
'17.6.4 ~9	미국/ 샌프란시스코	Spark Summit2017(Data Science and Engineering at Scale) 참석	3,402,585	2
'17.6.18 ~25	캐나다/ 몬트리올	5th WGNE workshop on system errors in weather and climate models 참석 및 발표	8,739,880	2
'17.8.16 ~22	베트남/칸토	2017년 APEC 기후심포지엄 개최 및 APCC 과학자문위원회, 회원국실무단 회의 개최	19,525,648	3
'17.10.7 ~15	멕시코/ 멕시코시티	23rd ICID Congress and 68th IEC Meeting 참석	4,544,810	2
'17.12.10 ~17	미국/ 뉴올리언스	2017 AGU Fall Meeting 참석 및 발표	8,604,816	2
'17.12.16 ~21	미국/뉴욕	IRI와 기후정보서비스 협력 방안 논의	2,679,490	2

주: APEC기후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페이지 기준임  
 자료: APEC기후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공공기관은 국외출장의 타당성 사전 심사 절차와 기준,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sup>3)</sup>하고 있으나, (재)APEC기후센터는 관련 규정이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8조(공무국외여행) ①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을 참조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규정 제13조의3제2항 등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여행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sup>4)</sup>

(재)APEC기후센터는 내실 있는 국외출장보고서가 작성되도록 보고서 작성과 공개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보완하여, 국외출장의 주요내용과 수집 자료 등이 내·외부에서 활용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 
1. 심사 및 허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2. 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공개의 방법(결과보고서에는 항공권 및 여권 사본 등 검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항공운임, 여비수준 등에 관한 여비규정(원칙적으로 준비금 제도는 금지한다)
- 4) (재)APEC기후센터는 내부 「여비규정」 제6조에서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과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 집 필

**총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조가영 예산분석관  
김태은 예산분석관  
이동엽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이병철 예산분석관

**지원** | 이가현 행정실무원  
박미현 행정실무원

### 결산분석시리즈 II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18년 8월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일칼라콤(주)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8-89-6073-093-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